

생|활|임|금|도|입|을|위|한|
연|구|용|역|보|고|서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1부

울산지역 노동자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 I. 문제 제기

- II. 이론적 접근
 - 1. 노동 빈곤
 - 1) 빈곤 개념과 측정
 - 2) 노동 빈곤
 - 2. 생활임금
 - 1) 기존의 논의
 - 2) 생활임금 개념
 - 3) 생활임금의 효과
 - 4) 생활임금과 노동조합운동
 - 5) 유사 개념

- III. 울산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 1. 산업구조
 - 1) 전산업
 - 2) 2차 산업
 - 3) 3차 산업
 - 2. 노동시장
 - 1) 고용 일반
 - 2) 공공부문 고용과 임금

- IV. 생활임금의 구상과 기준
 - 1. 복구청 노동자의 임금분포
 - 2. 생활임금의 기준
 - 3. 함의와 시사점

연구 기간 : 2013년 6월 ~ 11월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 허민영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공동연구자 : 이영도 (울산시민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연구 간사 : 박기옥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1. 문제 제기

근래 들어 우리 사회에서 근로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음. 노동을 하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이 3백만명을 넘고 있음.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90여 만 명 수준으로, OECD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저임금 고용의 규모는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임.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의 경우 그 동안 꾸준히 상승하였음에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임. 최근 5년간 실질 최저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울산지역의 경우 2012년 1인당 생산 및 소득액 전국 1위 임에도, 대기업 및 노동조합 가입 사업장을 제외한 대다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임금기준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음.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일반적인 반면 저임금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실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임.

이에 본 연구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절한 임금수준을 강구하고자 울산지역의 정부기관에 고용된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생활임금의 도입에 필요한 합리적인 임금 산정의 기초 및 제도적 접근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이번 연구의 주요 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고용된 직,간접 노동자들로서, 구체적으로는 울산 북구청에 직접 고용되어 있거나 이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 위탁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임.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3명으로, 연구책임자 허민영(경성대 경제학과교수), 공동연구원 이영도(시민연대 노동사회위원장), 연구간사 박기옥(북구 비정규센터)으로 구성됨.

연구책임자 허민영이 집필을 담당한 부분은 1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2장에서는 노동빈곤 및 생활임금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소개함. 3장에서는 울산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개괄하는 한편 울산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분석. 4장에서는 표본을 통해 조사한 북구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분포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의 기준 및 비용을 추정한 뒤 함의를 제시함.

공동연구원 이영도가 집필을 맡은 부분은 2부임. 여기에서는 울산 북구에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실태조사에 관한 것으로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탁직 노동자의 임금실태 분석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요약하고 의미를 제시함.

II. 이론적 접근

1. 노동 빈곤

-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일자리 없는 성장 및 고용불안정성의 증대 현상이 계속되면서 취약계층은 늘어나고, 전반적인 소득분배 구조는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정부 등은 노동을 중심으로 한 소득 향상 프로그램에 나서왔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임.¹⁾

1) 빈곤 개념과 측정

(1) 개념

- 빈곤의 넓은 의미는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회, 수단 또는 자원의 결핍 상태" (이정우, 1997)라고 표현할 수 있음. 그런데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경우 기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 그 사회의 생활수준과 관습,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의가 쉽지 않음.
- 이런 점들로 인해 빈곤은 첫째, 객관적으로 정의된 절대적 최소치보다 적게 가질 것, 둘째,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을 것, 셋째, 스스로 생활을 꾸려 나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 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잠정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이런 범주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의 형태로 개념화되고 또 측정되어 왔음(여유진·김미곤외 11명, 2007: 114-117).

(2) 측정 방법

-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절대적 빈곤 방식과 상대적 빈곤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먼저 절대적 빈곤은 빈곤선을 통해 빈곤층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때 빈곤선은 그 사회의 필수재화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정하여 설정함. 빈곤선 설정은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이 있음(김교성·노혜진: 68-75).²⁾

1) 과거 서구 국가들은 현금 위주의 소극적 소득보전 제도가 많았으나 근래 들어 일자리 창출 및 지원전략 위주로 바뀌어오고 있음.

2) 그 외 주관적 빈곤을 측정할 경우 라이덴 방식, 텔릭 방식과 꺾림방식이 있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김교성·노혜진(2011: 69-85) 참조.

- 절대적 빈곤에서 첫째, 전물량 방식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해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 후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법임. 둘째, 반물량 방식은 전물량 방식에 비해 간소하게 빈곤선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식료품 지출을 세 배 곱한 화폐액으로 빈곤선을 구하는 방법임.
- 상대적 빈곤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빈곤선을 설정함. 먼저 평균소득으로 계측할 경우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계층 때문에 평균소득이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빈곤선 상승 가능성이 있음. 다음으로 중위소득을 활용할 경우 그 기준을 크게 보아 40%, 50%, 60%를 기준으로 함. 가구원수의 차이에 관해서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보완해 왔음.
- 빈곤선의 측정은 대개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소득에 따른 빈곤의 측정은 자료 획득, 손쉬운 측정 때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됨. 그럼에도 소득의 파악이 어려운 대상이라든가 현물소득의 제외 등의 난점이 있음. 이런 요인으로 일부에서는 지출액 등 소비 기준에 따른 빈곤 계측, 의료비와 같은 사회보험료를 고려한 빈곤 계측 등을 제시하기도 함.

2) 노동 빈곤

(1) 배경

- 최근 들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 등 이른바 ‘노동 빈곤층working poor’ 이 형성되기 시작했음. 노동 빈곤층의 형성 원인을 보면, 첫째,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의해 나타난 점, 둘째, 노동시장에서 임금부문의 비정규 일자리의 증가와 영세자영 부문의 비정규 일자리의 증가, 청년실업자와 중장년 실직자의 증가에 따른 소득 양극화에 의해 나타난 점, 셋째, 취약한 자산 형성, 취업자 수의 감소, 소비지출의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정책의 부재에 의해 나타난 점 등으로 볼 수 있음.
- 노동 빈곤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용불안과 실업, 높은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임. 이 때문에 노동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켜 노동 빈곤층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자 했음.

- 근로연계복지 정책은 이와 관련한 하나의 정책으로 복지 의존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하여 스스로의 소득을 통해 자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취업이나 직업훈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임. 우리나라에서도 IMF사태 이후 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근로연계복지를 받아들인 바 있음.
- 우리나라에서 노동 빈곤층 지원정책으로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 근로장려세제, 마이크로 크레딧 등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그 역사가 짧은 만큼 상당수의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으며 시행착오도 적잖게 나타나고 있음. 이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거나 취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는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 통합성의 위협 정도 또한 증대되고 있음. 이처럼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의 제도적 장치는 매우 취약한 상태임. 이 때문에 기존의 노동 빈곤층 지원정책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고 있기도 함(노대명, 홍경준, 최승아, 진지현, 박은영, 2009: 55-57).

(2) 개념

- 최근 들어 노동 빈곤층 문제가 상당한 관심과 논의가 있어 왔음에도 이들에 대한 개념상의 합의에 관한 한 다소 복잡함. 노동 빈곤층 개념만 해도 신빈곤층, 근로빈곤층, 취업빈곤층, 경제활동빈곤층 등 매우 다양함. 이는 통념과 달리 연구는 물론 정책적 차원에서도 노동 빈곤층에 대한 규모나 특성 자체가 복잡하고 조작적 정의를 위한 신뢰할만한 통계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임.
- 노동 빈곤층은 개인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일견 분명한 듯 보이나 가구소득이 빈곤선이라는 점에서 각 개인의 특성과 가구 특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해를 야기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노동 빈곤층은 저임금 노동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임금노동자라 하더라도 非빈곤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저임금노동자라 해도 빈곤층은 아님. 때로 노동 빈곤층은 근로능력빈곤층으로 여기기도 함.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규정과 연관이 있는데, 노동 빈곤층이 근로능력빈곤층은 아님.
- 여기서는 노동 빈곤층을 ‘현재 일하고 있거나 명시적으로 일할 의지를 가진 집단 중 빈곤층’이라 정의함. 이것은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볼 때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취업빈곤층도 포함된다는 것임. 다시 말해 노동 빈곤층은 먼저 경제활동인구 중에는 임금빈곤층(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중) 및 비임금빈곤층(고용

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중) 등이며,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미취업빈곤층(실망 실업자, 비경제활동인 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구분 외에도 고용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노동 빈곤층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임. 완전 취업빈곤층(12개월 취업), 불완전취업빈곤층(7개월-11개월 취업), 취업애로 빈곤층(1-6개월 취업), 완전실직빈곤층(0개월 취업) 등이 그것임. 이러한 구분은 노동 빈곤층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으며, 취업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임.
- 문제는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들 노동 빈곤층의 규모 추정이나 실태를 진단할 통계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임.

규모와 특성³⁾

- 최근 우리사회에서 '복지'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시사할 만한 것임. 이는 우리 사회가 소득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빈곤율 증가라는 새삼스런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함. 지니계수나 5분위 분배율과 같은 빈곤 지표의 증가세에서 확인되듯이, IMF사태 이후 최근까지 소득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산된 것임. 상대빈곤율의 경우 IMF사태 이후 매우 높은 수준에서 나타나다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부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부표 4 참조). 실질임금증가율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8.2%(2002년), 5.5%(2003년)를 기록했으나, 점차 하락하여 2008년 이후부터는 무려 3년을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약화됨.
- 이런 조건 하에서 노동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빈곤율의 경우(2005년 기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위소득 50%에서는 15.2%가 빈곤선에 해당하며, 중위소득 60%에서는 21.7%가 빈곤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위소득 50%에서는 17.3%가 빈곤선에 해당하며, 중위소득 60%에서는 23.5%가 빈곤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⁴⁾
- 다음으로 빈곤층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대체로 상용직 노동자 비중이 낮고, 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 비중이 전체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⁵⁾
- 이렇게 추계된 빈곤층을 바탕으로 노동빈곤층의 규모를 보면, 전체 인구(=경제활동인구)의

3) 노대명, 황덕순 외 참조

4)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자료(2005년말 기준), 노대명 황덕순 외 86쪽 표 4-1참조

5) 노대명 황덕순 86쪽 표 4-2 참조

8.34%(가치분소득 기준)~9.06%(시장소득 기준)로 추정되며, 인원수로는 363-395만명에 해당하는 규모임.

〈표 2-1〉 전체 인구 대비 노동 빈곤층 규모

(단위: %, 명)

| | | 가치분소득 빈곤 | 시장소득 빈곤 |
|------------------|--------|----------|---------|
| 모집단 (=경제활동인구) | 규모(%) | 8.34% | 9.06% |
| | 규모(만명) | 363 | 395 |

- 이제 노동빈곤층의 특성을 정태적 특성과 동태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정태적 특성. 노동빈곤층의 개인별 특성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율이 높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층 비율이 증가함. 학력이 낮아질수록 빈곤층 발생 비율이 높고, 근로개월 및 주당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빈곤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노대명 황덕순, 2007: 91-93)
- 임금노동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임금 탓이 큰데, 이 때문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순으로 빈곤 정도가 높게 나타남. 하지만 저임금노동자라 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님.
- 그것은 한 가구 내에서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거나 소득원이 발생할 경우 빈곤위험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임. 2005년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가구 중에서 저임금요인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36.6%, 가구요인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63.4%로 분석하고 있음(노대명 황덕순, 2007:100-101). 이는 노동빈곤 문제가 가구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둘째, 동태적 특성. 노동빈곤층의 고용유지 정도를 보면, 대체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고용유지기간이 짧게 나타남. 특히 상용직이면서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남.⁶⁾ 이는 빈곤층에 속하는 노동자일수록 고용단절이 심하며, 이것이 개인 근로

6) 상용직이면서 비빈곤층은 94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대신 상용직이면서 빈곤층은 36.9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노대명 황덕순 2007: 108-109)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

- 노동빈곤층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로 요약되는데, 이 중에서 취업가구원이 한 명 증가하면 가구소득은 증가하며, 노동이동 횟수가 증가하면 가구소득은 감소하고 있음. 우리 사회의 빈곤층 중에서 근로빈곤층은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며 규모 또한 큰 것으로 보임. 빈곤선을 중위소득 50%로 잡을 경우 빈곤무경험 비율이 64.9%이고 나머지는 빈곤을 경험하는데, 이 중에서 일시빈곤 비율이 14.9%, 반복빈곤 비율이 16.1%, 계속빈곤 비율이 4.1%로 나타남(노대명 외, 2006)
- 이처럼 빈곤 지위의 잦은 경험은 고용상태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것임. 즉 실직 고용불안은 근로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가구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함(노대명 황덕순, 2007: 111-114).

2. 생활임금

1) 기존의 논의

- 생활임금운동에 관한 논의는 IMF 사태 이후 점차 가시화된 최저임금 투쟁이 계기가 되었음. 2001년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가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공동투쟁을 시작했으며, 이듬해인 2002년경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확대되었음. 2004년 들어서에는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공동투쟁단을 조직하였으며, 2005년에는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약간의 제도적 개선이 있었음. 2007년경에는 빈곤사회연대의 제안으로 민주노총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이 출범 약 2년간 활동하였음.
- 당시 생활임금운동기획단은 장시간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현실화에 관한 것과 최저임금 교섭을 넘어 어떻게 하면 저임금철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인지 등 최저임금투쟁의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에 집중함. 이 때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임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이러한 생활을 담보할 임금소득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며, 이미 지급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현실 수준을 얼마나 올려야 하며, 빈곤선의 기준을 어느 정도 상향조정해야 하는지를 재론할 필요가 제기됨.

- 2006년 9월 기획단의 초기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첫째, 지역별 생활임금 제공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가능한가. 둘째, 생활임금운동 및 생활임금의 개념 문제였음. 빈곤사회 연대의 초기 제안서에는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정도로 추상적으로 규정됨. 그 외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경우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차원에서 저임금과 빈곤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이를 생활권 쟁취투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의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음(부천시, 2012).
- 2007년에는 최저임금투쟁과 맞물려 다양한 저임금 실태를 고발하는 기획이 추진되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냄. 2008년에는 투쟁의 주제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임금 확보운동을 일부 확산시켰으며, 대체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투쟁의 형태로 나타남. 다만 이러한 최저임금투쟁도 대중적 파급력을 갖지는 못하였음(반빈곤운동 활동가수련회 자료집, 2008).
- 그 뒤 2011년의 선거와 2012년 선거과정에서 생활임금 구상이 좀 더 본격화되기 시작함. 먼저 한국노총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시장후보에게, 2012년에는 전국적인 총선 때 민주당의 복지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생활임금이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였음. 참여연대는 2012년 생활임금을 핵심의제로 삼는 가운데, 그 해 연말 서울시 성북구 및 노원구에서 서둘러 시범 실시됨.
- 2013년에는 서울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한국노총의 생활임금 모델이 제시된 곳은 부천시이며, 부천시는 2012년에 제시된 생활임금안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의 검토 및 조례 개정작업을 시도하였음.

2)생활임금 개념

개념

- 생활임금이란 간단히 말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living wage)을 말함. 통상적으로는 연중 일하는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벌어야 하는 시간당 임금에 해당함(부천시 보고서: 7).
- 이처럼 소득에 맞는 생활임금의 측정은 가족구성(예: 4인 가족)이나 지역에 따라 기본생계로서의 비용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식료, 의료, 주거, 교통, 보육, 세금 등의 항목을 총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가족당 기본경비(Economic Policy Institute, Luce, 1012).

- 대체로 생활임금은 적용되는 노동자가 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빈곤수준 이상의 임금을 별도로 고안된 것이어서, 빈곤수준 미만의 근로소득을 제공하는 최저임금에 비해 높게 형성됨.

생활임금의 산정

- 생활임금은 취지상 임금을 통해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을 부양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적정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임금이라는 의미가 적지 않음. 이는 백여 년 전 가족 전체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온 가족 임금과 같은 오랜 관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⁷⁾
- 노동진영과 학계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포함한 생계비 임금으로서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점차 쇠퇴 과정을 겪어온 것이라 할 수 있음. 즉 노동력의 제공과 그 댓가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한정된다는 것임.
-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매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표준 생계비를 계산하고 또 이에 기반하여 임금요구안을 설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연맹이나 단위 노조 수준에서는 표준생계비에 의한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가 이미 십여 년 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등 사문화된 지 오래되었음.

산정 방식

- 생활임금의 산정은 먼저 생활임금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의 문제인 바, 앞에서 본 빈곤선의 측정과 유사하게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두 방식도 세부적으로는 각각 가족 규모나 지역 환경에 따라 좀 더 세분화 할 수 있어 실제로는 보다 복잡해 질 수 있음.
- 첫째, 절대적 방식은 시장 바스켓을 사용하는 것으로, 적정한 생활수준에 필요한 품목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 또는 가족 규모에 따라 추계하는 것임. 이 방식은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세부 품목 즉 식료품, 주거, 의료, 보육, 교통, 잡비 등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상품과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제시함. 여기에 가족 규모나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에 따른 비용 정도를 추산하여 제공하는 것임.

7) 우리가 임금을 정의할 때, 개별 노동자의 노동력의 댓가로 보거나, 노동자가 노동력의 댓가는 물론이고 그와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기도 함.

- 절대적 방식은 기존의 최저생계비 수준과 연동하여 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임. 이 경우 시장바스켓에 들어가는 항목의 결정과 재조정이 쉽지 않은 점, 세부 품목의 비용계산이 복잡한 점 등이 난점이 될 수 있음.
- 둘째, 상대적 방식은 상대적 임금기준을 사용하는 것임. 상대적 임금기준은 일정한 소득 수준에서 일정 비율에 기초함. 이때 소득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을 활용하며 가구 기준(2인가구~4인가구)에 따라 다르게 구분할 수 있음. 각각의 상대적 빈곤선 기준이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OECD의 상대적 빈곤선 기준은 중위소득(가구)의 40~60%를 잡고 있으며, EU의 상대적 빈곤선 기준은 평균소득(가구)의 40~60%임.⁸⁾
- 상대적 방식은 공식적인 통계상의 소득 척도에 기초하므로 측정이 쉽고, 소득 수준이 변화하면 그때그때 재조정하여 반영하기 쉽다는 장점을 지님.⁹⁾

참여연대와 부천시의 생활임금안

- 참여연대의 생활임금안은 우선 생활임금 산정 방식의 경우 서울시를 기준으로 가구 생계비를 산출한 후 이를 1인 기준으로 혹은 3-4인 기준으로 이를 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1인 근로자 가구를 산정 기준으로 하고, 교육비 및 주거비를 적정하게 현실화하는 제 1 방안, 도시근로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맞벌이를 전제로 산정하는 제 2 방안, 가구 생계비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1인 생계비를 산정한 제 3 방안 등으로 구분함.
- 부천시의 생활임금안은 해마다 발표되는 최저임금액에 구간별로 일정 정도의 추가 임금액을 적용하는 방식. 최저임금 이하(4860원, 2013년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대 320원까지 추가 지급하여 생활임금 시급 5180원을 적용케 함. 시급 4860원 이상인 경우 추가임금액은 1원~261원 등으로 조정구간을 나누어 차등 인상함. 그 외 부천시의 생활임금안에는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의 재정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안을 적용하고자 함. 생활임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구간별 적용임금액의 근거 또한 분명치 않다는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8) OECD의 경우 저임금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로 정하는 등 나라마다 저임금의 기준을 달리 하고 있음.
 9) 생활임금 논의가 이미 이십여 년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우 대체로 절대적 방식에 입각한 생계비를 도출 활용하는 곳이 많으며, 또 일부에서는 상대적 방식을 활용하여 생활임금 수준을 제시하기도 한다(황선자, 이철, 2008: 5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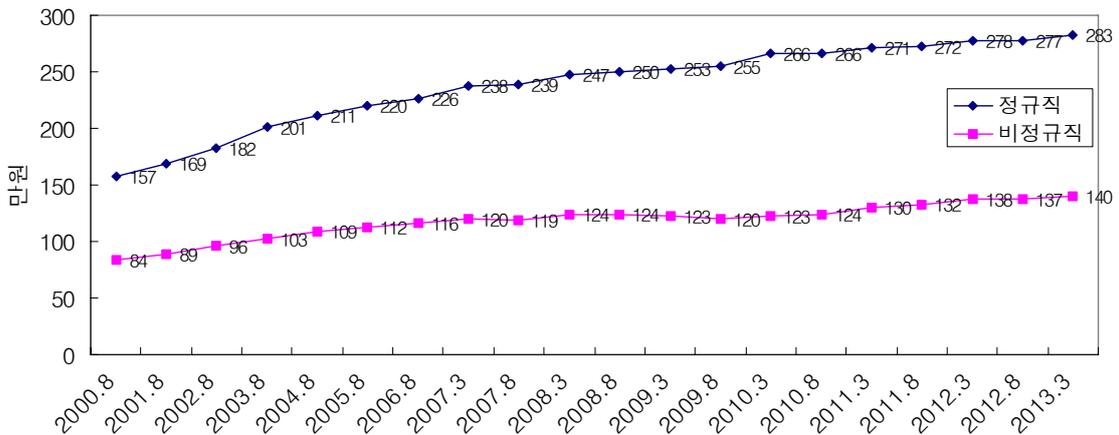
3) 생활임금의 의미와 효과

필요성

○ 임금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 확대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고용형태별 임금수준은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2012년 8월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277만원이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7만원으로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140만원임. 그런데 2000년 8월 기준으로 정규직 평균임금은 157만원이며,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84만원으로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73만원이었음.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도 지난 2000년 8월에는 53.5%로 절반을 조금 상회하였으나, 2012년 8월에는 49.4%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평균임금의 상대적 비율도 격차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음.

〈표2-2〉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수준 추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3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분석결과, 보도자료(6월4일자)

○ 현실적이지 못한 최저임금

파트타임을 제외한 임금노동자 중에서 월평균 임금수준이 최저임금(2013년 기준, 4860원)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14.0%에 이르고 있음. 다른 표에서도 확인되듯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두자리 수에 이른 것은 지난 2007년부터이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런 점은 현재의 최저임금제의 본래 기능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은 물론이고, 생활임금으로서의 현실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 때문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분배 구조의 악화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음. 먼저 1990-2008년까지의 분배 관련 지표를 보면, 먼저 도시근로자의 상대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상대빈곤 정도가 계속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다음으로 지니계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경제위기와 그 여파가 나타난 99-03년 기간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03-08년 기간에 정제된 수준을 보이고 있음(강신욱 외, 2009:60-61).

〈표 2-3〉 주요 지표의 기간 평균치

| | 90-96 | 96-99 | 99-03 | 03-08 |
|-------------|-------|-------|-------|-------|
| 도시근로자 상대빈곤율 | 8.1 | 9.9 | 10.1 | 11.2 |
| 지니계수 | 0.281 | 0.290 | 0.297 | 0.298 |

생활임금운동이 비교적 활성화된 미국의 생활임금이 지닌 사회경제적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긍정적 측면

- 첫째, 노동자한테 미치는 영향으로는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을 들 수 있음. 지난 십여년간 신 자유주의의 확산이 일반화되면서 노동시장의 분할과 실질 임금소득이 하락해 왔음. 여기에서 정부차원의 비정규직의 확대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분단 현상도 가시화되었음. 이는 그 동안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하향 압력이 지속되어 왔음을 의미함. 이에 생활임금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소득 증가는 이들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을 기할 수 있음.
- 둘째,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기업이 생활임금의 적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의 증가와 이직률, 결근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그 외에도 한계기업의 저비용 덤핑경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소득 증가는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음. 물론 이러한 임금상승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그 외에도 지방자치체의 위탁업체 고용주의 임금 비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생활임금이 지닌 제약도 적지 않은데, 먼저, 생활임금의 적용은 다수 노동자를 포괄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임. 공공부문에 직접 노동을 제공하거나, 공공부문에 위탁된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특히 저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 다음으로 생활임금 기준의 제한.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결정 등에서 보듯, 생활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측정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당 임금의 결정은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 그 외, 생활임금 집행의 어려움. 생활임금의 적용을 위한 각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생활임금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거나 감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음. 이는 해당 기업의 고용주가 지자체 공무원에게 압력이나 로비를 행사하거나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집행할 예산의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것임(마틴하트-랜즈버그, 2009: 229-235).

4) 생활임금과 노동조합운동

- 생활임금운동은 영미권 국가 특히 미국의 공공 및 서비스노동조합과 지역사회 조직간 연합에 의해 전개된 것임. 이는 생활임금운동이 노동조합운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적 노동지형과 연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생활임금운동의 활성화 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조합들이 수많은 도시 및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 것은 취약계층의 임금 개선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지난 1990년대 중반 미국노총이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증대하면서 나타난 것이기도 함(황선자이철, 2008: 22-23).
- 생활임금운동이 노동조합운동과 연계되면서 나타난 또 다른 의미는 지역사회가 바라는 사회적 가치를 대표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로 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임.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행동에 관심을 두으로써 활동가들에게 경제적 결과의 정치적 본질,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서 정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한 것임((마틴하트-랜즈버그, 2009: 236).
- 한편 국내의 생활임금운동은 미국처럼 노조 중심의 운동이라기보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제기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노조운동의 초점은 최저임금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생활임금이 실질적

인 교섭의제로 되기에는 어려움을 안고 있음. 또한 그 외 부천시, 성북구, 노원구 등 몇몇 지자체에서 실시되었는데, 노조나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다기보다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임. 이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과의 폭넓은 연대가 부재하고 지역사회 단체와의 결합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3. 유사 개념

1) 근로장려세제(EITC)와 마이너스 소득세

근로장려세제(EITC)

- 근로장려세제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공공보조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와 연계한 소득지원제도임.
-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과정을 보면, 2005년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결정되어 2006년 세법 개정을 거쳐 2008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2009년은 2008년의 가구 근로소득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 해임.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전에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존재하였으나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이후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2차 안전망을 갖추게 됨.
-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임. 첫째, 근로장려세제는 제도 자체에 근로유인 기능이 있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둘째,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셋째,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송헌재 전영준, 2011: 45).
- 근로장려세제의 대상과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음.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첫째, 총소득면에서 부부의 연근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며, 둘째,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며, 셋째, 주택의 경우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며, 넷째,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임(이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급여)이거나 외국인 혹은 다른 신

청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장려세제의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는 가구 단위로 설계됨. 이러한 자녀부양 요건은 미혼의 개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부부합산 단위로 총급여액을 정하고 있어 가구 단위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 따라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유인효과는 가구 단위로 설정되어야 함.
- 근로장려금의 산정.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됨.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0 ~ 8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도 상승하며, 800만원 ~ 1200만원까지는 일정한 수준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1200만원 ~ 1,7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은 점차 감소하게 됨.

〈표 2-4〉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 | 근로장려금 |
|---------------|----------------------|
| 0~800만원 | 총급여액 x 15% |
| 800만원~1200만원 | 120만원 정액 지급 |
| 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총급여액) x 24% |

* 송헌재 전영준(2011: 49)

-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국세통계연보(국세청)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2009년 기준), 신청 대상자의 90.9%에 해당하는 72만 3937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 심사 결과 신청 가구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59만 720가구(81.5%)에 총 4537억원이 지급되었음.
- 근로장려세제(EITC)와 생활임금. 근로장려세제는 이것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신청하는 방법을 정확히 모를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 약 9%가 이에 해당함. 반면 생활임금을 통한 임금 개선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음(황선자 이철: 46).
- 생활임금과 비교해 볼 때, 근로장려세제는 가족 및 해당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기는 하나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어떠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은 없음. 그와 달리 생활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용자로 하여금 기술 및 직업훈련 그 외 혁신활동에 투자하게 하고

노동자의 일에 대한 몰입도 및 충성심을 높여 생산성 향상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마이너스 소득세

- 마이너스 소득세는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조세 제도. 마이너스 소득세 정책은 모든 가구는 정부에 소득을 신고해야 함. 고소득 가구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고 저소득 가구는 오히려 보조를 받는다. 즉 가난한 가구는 마이너스 세금을 내는 것임.
- 예를 들어 한 거의 소득세가 다음처럼 결정된다고 할 경우, 소득세 = (소득의 1/3) - 1만 달러 이 경우 소득이 6만 달러인 가구는 세금 1만 달러를 내야 하고, 소득이 9만 달러인 가구는 2만 달러를 내야 함. 소득이 3만 달러인 가구의 세금은 0이 된다. 소득이 1만 5천달러인 가구는 -5천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즉 정부가 이 가구에게 5천 달러를 지급.
-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하에서 가난한 가구는 공필함을 입증하지 않아도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음.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낮은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함. 한편 마이너스 소득세는 빈곤층 소득보조를 비판하는 이들의 걱정인 사생이와 가정파탄을 줄일 수 있음. 다른 한편 마이너스 소득세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단지 게으른 이들이나 정부 직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도 도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소득세와 비슷한 제도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임. 이것은 저소득 근로자가구가 소득세로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나중에 소득세 환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빈곤해소 프로그램처럼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음. 그러나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직업 능력을 상실한 빈곤층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음.
- 재원은 고소득에 대한 조세를 통해 마련되며, 수혜대상자는 노동을 하고 있거나 노동할 의사가 있는 성인 가장으로 국한. 이는 1940년대 줄리엣 리스-윌리엄스가 제기했고, 1960년대에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수용했으며, 1967년 미국 공화당의 닉슨 정부도 도입을 검토했던 방안임. 독일의 자유민주당은 이와 내용상 동일한 '자유 시민급여' 모델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제를 폐기하고, 저임금 노동을 적극 유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왜냐하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얼핏 보기에 이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성인노동자로 수혜대상이 국한되어 있으며 소득심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정반대의 모델이라 할 수 있음.

2) 최저임금¹⁰⁾

- 최저임금 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1894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1896년 호주, 1909년 영국, 1912년 미국에 도입되었음.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의 90% 이상이 이 제도를 비준하는 등 지난 100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주요한 소득정책의 하나로 운영되어 왔음.
- 최저임금제는 국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임.
- 전 세계적으로 중국,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조직되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지난 1980년대 이래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노동 빈곤층과 이들에 의한 노동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새롭게 강화되고 있음.

한국의 최저임금제

- 한국은 1988년 이후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됨. 원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 관련 법규정이 있었으나 법 시행을 계속 미뤘음. 2000년 이후부터 최저임금제는 모든 임금 노동자에게 적용.
- 최저임금의 임금 항목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장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이나 생활보조수당 등은 산입하지 않음. 요컨대 대체로 정액급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상임금에 근접함.¹¹⁾

10) 최저임금(정진호 외, 2011:4-14)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1) 그 외 2004년 법정 기준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산업별, 규모별 법정근로시간이 상이하여 월별 지불근로시간도 상이함.

- 일반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비율은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고용 등 경제적 효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됨.
- 최저임금과 정액급여의 인상률을 보면, 지난 1989-2009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은 10.8%, 연평균 시간당 정액급여 인상률은 10.7%임. 따라서 최저임금과 정액급여의 상대적 수준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
- 정액급여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1988년 28.7%, 1997년 25.3%, 2009년 29.2%임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¹²⁾, 다시 말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대체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줌. 이는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의 범위가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2000년 이후 최저임금제의 적용이 모든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되면서부터임.

〈표 2-5〉 저임금 노동자 비율

|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 저임금 노동자비율 | 4.3 | 4.9 | 4.9 | 5.8 | 8.1 | 9.4 | 11.9 | 10.8 | 12.8 | 11.6 |

* 저임금노동자란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

(=월평균 임금/주당 평소근로시간*30.4/7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 호 및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 최저임금은 한 명의 노동자가 노동의 댓가로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고, 생활임금은 대체로 한 명의 전일제 노동자를 가진 가족이 빈곤선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임금 액수임. 생활임금은 그 자체로 최저임금을 포괄하는 것인 만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적용 범위 및 적용 노동자의 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 생활임금의 적용은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을 규정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나 지방자치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크게 제한적임. 또한 적용되는 노동자의 수도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음.

12)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비율을 추정하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음. 사업체조사와 달리 가구조사에서는 임금 및 근로시간이 세분되지 않으며, 임금대장 등 문서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대리응답이 현저해 한계를 안고 있음.

- 울산 복구의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할 노동자의 수는 약 2백명 내외, 5개 구(군)청과 시청을 포함할 경우 대략 1천명 내외임. 울산지역의 총취업자 수 55만명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원은 1%도 못되는 것이어서 극소수의 임금 향상을 꾀하는 것임. 이는 생활임금 향상에 따른 효과 또한 미미할 수 있음을 의미함.

3)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개념임.
- 우리가 말하는 빈곤은 경제력이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의미함. 먼저 절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최저라고 생각되는 어떤 수준을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함. 대체로 절대적 빈곤율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를 말함.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를 대표하는 값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하는데, 상대적 빈곤 수준은 대개 OECD기준으로 중위소득 40-60% 기준으로 함.
- 최저생계비의 계측에서 나타난 몇몇 특징을 보면, 먼저 최저생계비는 매 3년마다 계측조사(5년→3년으로 계측주기 단축, 2004년) 실시하며,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추정함. 계측연도(2008년, 2011년)에는 물가수준 뿐 아니라 필수품목·사용량의 변화 등 생활 실태가 반영됨에 따라 비계측연도에 비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높게 나타남.
- 먼저 절대적 빈곤 기준에 따라, 최근 5년간 최저생계비 인상 추이(4인 기준)는 2008년 5.0% → 2009년 4.8% → 2010년 2.75% → 2011년 5.6% → 2012년 3.9% → 2013년 3.4% 등임. 2013년 최저생계비는 1인 572천원, 2인 974천원, 3인 1,260천원, 4인 1,546천원으로, 4인가구의 경우 2012년보다 3.4% 인상된 금액임.
-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 기준에 따라,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추이로는 2005년 12.4%→2006년 12.1%→2007년 12.6%→2008년 12.6%→2009년 12.2%→2010년 12.1%→2011년 12.3% 등임. 2011년 10.9%인 공공사회지출을 2020년에는 15%수준을 계획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있음.

- 최저생계비의 의미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이 되며,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됨. 그래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매달 지급되는 생계,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만큼을 지급하게 됨. 또한 활용도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의 규모 및 구조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복지정책의 대상과 복지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

최저생계비 기준과 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애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로 수급률은 총 인구대비 비율을 의미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세대)단위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생계곤란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을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2000년 제도도입 이후 가정해체, 빈곤, 실직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 추세였으나, '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임 ('01년 : 142만명 → '02년 : 135만명 →'03년 137만명 →'04년 142만명 →'05년 151만명 →'06년 153만명 →'07년 155만명 →'08년 153만명 →'09년 157만명→'10년 155만명→'11년 147만명→'12년 139만명)

〈표 2-6〉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급자 수 | 1,374 | 1,424 | 1,513 | 1,535 | 1,550 | 1,530 | 1,569 | 1,550 | 1,469 | 1,394 |
| 수급률 | 2.9 | 3 | 3.1 | 3.2 | 3.2 | 3.2 | 3.2 | 3.1 | 2.9 | 2.7 |

* 출처: 보건복지부(내부행정자료)

* 전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비율

- 정부전체 예산 중 사회지출이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나 OECD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 공공 사회지출은 낮은 수준임.

최저생계비와 생활임금

- 지금까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최저생계비 결정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이처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빈곤 및 소득불평등 해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보완적 전략으로서의 생활임금운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

- 생활임금운동은 최저생계비 제도와 달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운동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저임금 및 빈곤 해소투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님. 나아가 생활임금운동은 미국의 생활임금운동 사례에서 보이듯이, 지역내에서 저임금 및 빈곤 해소를 위한 적정 임금의 확보 과정에서 입찰업자간 저임금 경쟁을 막는 것에서부터 복리후생, 노조활동권, 고용안정 보장 등 노동기본권의 확보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확충 등 사회적 목표를 연계시킴으로써 사회정책수단의 확장이 가능해지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4) 기본 소득¹³⁾

- 기본소득 논의의 배경을 보면,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 그 리하여 크게 보아 보수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주창되는 흐름과 급진적인 정치세 력들에 의해 주창되는 흐름의 2가지 상반된 모델이 있음.
- 보수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의 모델은 최저임금제 폐지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유연화 등 을 포함하고 있으며(독일의 거대 자본가 베르너의 모델 등), 후자인 급진주의자들의 모델은 최저임금제 강화와 비정규직 축소 내지 폐지 및 지구적 기본소득으로의 확대 등을 포함하고 탈자본주의적 대안경제체로의 이행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음(독일 녹색당 내 개혁파 및 독일 좌파당 내 '연방노동공동체 기본소득' 그룹 등).
- 현재 '기본소득' 의 담론과 정책 및 운동은 유럽과 독일을 넘어서서 남미와 아프리카로까지 급속히 확장되고 있음. 브라질의 룰라 정부는 현재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을 2010년까지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결정.¹⁴⁾ 또한 2006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

13) 생활임금은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자유방임주의와 공산주의를 격퇴하려는 목적으로 주창하였고, 1990년 대 중반 볼티모어에서 실현된 이래 미국에서 좌파 노동운동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공동체 등이 시 정부 등에 요구하여 지금까지 140개 시정부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과 달리, 교통·건강·레크레이션까지 가능하게 하는 임금으로 당연히 최저임금을 상회함. 미국의 생활임금운동은 지역공 동체가 생활임금수준을 정하는 권리를 획득하여 시정부 등과 생활임금협약을 맺고, 시정부 등이 특히 정부지 원을 받는 기업체에게 이를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 확산되어 왔음. 하지만 이는 노동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노동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과는 달리, 여전히 노동중심주의의 소 득모델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강남훈, 광노완(2009) 참조

14) 브라질의 룰라 정부는 현재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Bolsa Família program)'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부(-)의

운에서 BIEN(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Basic Income Earth Network) 총회가 개최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됨.

- 나이가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은 2006년 1월부터 기본소득제도를 도입. 이 지역의 60세 미만 거주자들은 2008년부터 모두가 매달 100나미비아달러(원화로 약 19,100원)를 '기본소득'으로 받고 있음. 하지만 브라질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원확보가 어려워, 이미 실현되었거나 향후 도입예정인 '기본소득'이 기아를 면할 수준으로 제한.
- 기본소득은 노동자·실업자·빈민·생태운동·여성·인권운동·청소년·노령층·어린이·이주자 등 사회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소득임. 이는 사회성원 모두에게 최저생계비를 넘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함.
- 또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연금 및 실업급여·사회부조금·대학생 생활보조금·집세보조금·자녀양육보조금 등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심사절차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지국가들에서 엄청나게 낭비되는 사회복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¹⁵⁾
-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 이 추가적인 재원은 자본주의적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제를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조달할 수도 있음. 좀 더 급진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폐기하여 기존 자본주의적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 전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도 있을 것임.¹⁶⁾
- 자본주의적인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에 대한 세율인상과 세제신설로 상당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이 특징임. 이는 기존의 현금지급형 사회보장비만을 재원으로 하거나 노동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재원으로 하는 대부분의 서유럽 논자들의 기본소득모델과 차이가 나며 또한 진보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임.

소득세' 정책을 통해, 월 120브라질달러(원화로 약 5만 5천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1,120만 가구(약 4,500만 명)에 월 50브라질달러(원화로 약 2만 4천 원), 그리고 자녀 1인당 15브라질달러(원화 약 7천 2백 원)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불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고소득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과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개인별로 월 40브라질달러(원화로 약 19,000원)가 지급되는 '시민 기본소득' 제도로 변경될 예정임.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은 월 160브라질달러(원화로 약 7만 6천 원)를 받게 됨. 광노완(2008) 참조.

- 15) 독일의 경우 연간 연금, 실업급여 등 현금지급형 사회복지비 관리비용만 인건비를 포함하여 1,000억 유로, 원화로 한국의 국가예산의 85% 이상인 180조원에 달함.
- 16) 강남훈, 광노완 등은 후자의 방안을 택할 경우, 한국에서는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매월 5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미국식 시장중심주의의 자본주의제도를 택하고 있는 한국 등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창할 여지가 거의 없음. 왜냐하면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본가계급의 불로소득 내지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 및 소득세의 누진적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
- 기본소득의 의의로는 먼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이 대다수 국민에게 이전되는 등 소득불평등 완화의 측면 및 사람들이 보다 원하는 노동을 선택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다음으로 복지전략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세금을 2-4배 더 내고(국민부담율 25%에서 50%로 100% 인상), 여기서 생긴 재원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나머지 소득을 전체 국민들이 균등하게 나누어가지는 제도라는 점임. 마지막으로 조세개혁적 측면에서 지대, 이자, 배당, 금융양도소득 등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보호하는 현재의 불평등한 조세 체계에 대한 급진적 변화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음.

Ⅲ. 울산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1. 산업구조

1) 전산업¹⁷⁾

(1) 생산

- 생산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2011년 울산지역 산업 전체의 총부가가치는 55.6조원이며, 지난 2000년의 총부가가치액 21.3조원에 비해 34.3조원이 증가하여 부가가치 수준에서도 생산액에 버금 가는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표 3-1〉 산업별 부가가치액과 비중

(단위: 조원, %)

| | 2000 | | 2004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
| | 부가 가치 | 비중 |
| 농림어업 | 0.2 | 0.7 | 0.2 | 0.4 | 0.1 | 0.3 | 0.1 | 0.3 | 0.1 | 0.3 | 0.1 | 0.2 |
| 광업 | 0.0 | 0.1 | 0.0 | 0.4 | 0.1 | 0.2 | 0.2 | 0.4 | 0.2 | 0.4 | 0.2 | 0.3 |
| 제조업 | 14.3 | 67.0 | 21.5 | 68.8 | 27.6 | 68.0 | 28.0 | 69.1 | 32.4 | 71.0 | 41.7 | 75.1 |
| 서비스업 | 5.3 | 24.8 | 7.7 | 24.5 | 10.0 | 24.7 | 9.7 | 24.0 | 10.5 | 22.9 | 11.0 | 19.9 |
| 건설업 | 0.8 | 3.6 | 1.2 | 3.8 | 2.2 | 5.5 | 1.9 | 4.8 | 1.9 | 4.1 | 1.8 | 3.2 |
| 전기·가스·수도 | 0.8 | 3.8 | 0.7 | 2.3 | 0.5 | 1.2 | 0.5 | 1.3 | 0.6 | 1.3 | 0.7 | 1.2 |
| 총부가가치 | 21.3 | 100.0 | 31.3 | 100.0 | 40.5 | 100.0 | 40.4 | 100.0 | 45.6 | 100.0 | 55.6 | 100.0 |

- 지난 십년간 산업별 부가가치의 추이를 보면,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크게 늘어난 반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였음.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67.0%(2000년 기준)에서 75.1%(2011년 기준)으로 변화하였으며,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4.8%(2000년 기준)에서 19.9%(2011년 기준)으로 줄었음.
- 이렇게 볼 때 지난 십여 년간 울산지역에서 제조업 부문은 좀 더 심화하였으며, 반면 서비스업의 부문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17) 이하에서는 박주하(2013)의 산업 통계치에 주로 의존함

(2) 고용

- 울산지역 산업 전체의 종사자 수는 2011년 기준으로 45만 2천여명임. 지난 십여 년간 울산의 산업 종사자 수는 11만 8천명 정도 늘어났음(2000년의 33만 4천명→ 2011년 45만 2천명).
-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 중에서 제조업 종사자 수 15만 8천명(35.0%), 서비스업 종사자 수 26만 4천명(58.4%), 건설업 종사자 수 2만 9천명(6.1%)의 순으로 구성됨.
- 지난 십여 년간(2000-2011년) 산업별 종사자수 비중 변화를 보면 2000년과 2011년의 제조업 종사자수 비중은 각각 41.9%와 35.0%으로 나타남. 이 기간 동안 서비스 종사자수의 비중은 각각 53.8%와 58.4%로 나타남. 그 외 건설업 종사자수의 비중은 각각 3.5%와 6.1%로 나타남.
- 이렇게 볼 때, 제조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감소, 반면 서비스업 부문과 건설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3-2〉 전산업 종사자수 및 비중

(단위: 명, %)

| | 2000 | 2004 | 2008 | 2009 | 2010 | 2011 |
|--------|--------------------|--------------------|--------------------|--------------------|--------------------|--------------------|
| 전산업 | 334,565 (100.0) | 378,055 (100.0) | 404,866 (100.0) | 413,831 (100.0) | 434,280 (100.0) | 451,987 (100.0) |
| 농림어업 | 659 (0.2) | 92 (0.1) | 161 (0.1) | 184 (0.1) | 193 (0.1) | 219 (0.1) |
| 광업 | 142 - | 256 (0.1) | 291 (0.1) | 304 (0.1) | 283 (0.1) | 269 (0.1) |
| 제조업 | 140,337 (41.9) | 141,522 (37.4) | 150,664 (37.2) | 149,423 (36.1) | 148,160 (34.1) | 158,295 (35.0) |
| 서비스업 | 179,901 (53.8) | 213,764 (56.5) | 233,628 (57.7) | 241,821 (58.4) | 254,887 (58.7) | 264,161 (58.4) |
| 건설업 | 11,757 (3.5) | 20,789 (5.5) | 18,537 (4.6) | 20,597 (5.0) | 29,240 (6.7) | 29,495 (6.1) |
| 전기가스수도 | 1,769 (0.5) | 1,632 (0.4) | 1,585 (0.4) | 1,502 (0.4) | 1,517 (0.3) | 1,547 (0.3) |

2) 2차 산업(제조업)

(1) 생산

- 2011년 현재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은 41.7조원. 주요 업종으로는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1차금속 등임.
- 지난 십여 년간 제조업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의 변화를 보면, 지난 2000년에는 자동차(29.4%), 석유화학(17.7%), 석유정제(17.1%), 조선(16.3%), 전자통신장비(8.3%) 등이었으며, 2011년에는 석유화학(28.2%), 조선(20.4%), 자동차(19.4%), 석유정제(16.8%), 1차금속(6.3%) 등이 차지하는 총부가가치 비중은 91.1%.
- 주요 특징을 보면 자동차업종의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업종 비중도 지난 2008년부터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 석유화학 업종은 최근 비중이 높아졌으나 석유정제와 함께 대체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1차금속 업종은 2000년에 4.9%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현재 6.3%에 이룸. 한편 전자통신장비는 4대업종을 제외한 업종 중에서 전자통신장비는 비중이 비교적 높아 2000년에 8.3%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 현재 0.9%정도임.

〈표 3-3〉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단위: %)

| | 2000 | 2004 | 2008 | 2009 | 2010 | 2011 |
|--------|------|------|------|------|------|------|
| 식료품 | 0.8 | 0.5 | 0.3 | 0.5 | 0.5 | 0.4 |
| 섬유 | 0.5 | 0.8 | 0.8 | 1.3 | 0.9 | 0.9 |
| 의복모피 | 0.0 | 0.0 | 0.0 | 0.0 | 0.0 | 0.0 |
| 목재나무제품 | 0.1 | 0.2 | 0.1 | 0.2 | 0.1 | 0.1 |
| 펄프종이 | 0.9 | 0.7 | 0.6 | 0.7 | 0.7 | 0.6 |
| 석유정제 | 17.1 | 17.1 | 21.9 | 17.8 | 15.6 | 16.8 |
| 석유화학 | 17.7 | 13.4 | 10.6 | 13.8 | 15.4 | 28.2 |
| 고무플라스틱 | 1.0 | 1.0 | 0.6 | 0.9 | 1.2 | 1.0 |
| 비금속광물 | 0.5 | 0.6 | 0.5 | 0.4 | 0.3 | 0.3 |
| 1차금속 | 4.9 | 6.5 | 6.6 | 5.3 | 5.7 | 6.3 |
| 금속가공 | 1.3 | 1.4 | 1.9 | 2.2 | 2.0 | 1.6 |
| 전자통신장비 | 8.3 | 8.4 | 2.2 | 1.4 | 1.1 | 0.9 |
| 의료정밀기기 | 0.0 | 0.0 | 0.0 | 0.1 | 0.1 | 0.1 |
| 전기장비 | 0.3 | 0.3 | 0.5 | 0.6 | 0.8 | 0.7 |
| 기계장비 | 0.8 | 1.8 | 2.3 | 1.6 | 2.2 | 1.9 |
| 자동차 | 29.4 | 32.0 | 27.1 | 26.8 | 27.4 | 19.4 |
| 조선 | 16.3 | 15.2 | 23.6 | 25.9 | 25.5 | 20.4 |
| 가구 | 0.0 | 0.1 | 0.3 | 0.5 | 0.5 | 0.5 |

(2) 고용

- 2011년 현재 제조업 종사자수는 15만 8천명. 제조업에 종사하는 주요 업종을 보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장비, 1차금속 등임. 생산측면에서 울산의 5대 제조업종으로는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석유정제, 1차금속 등. 한편 이들에 의한 부가가치 비중이 모두 91.1%인 반면 이들 5대 업종에서 일하는 종사자 비중은 총 74.8%로 종사자 비중에 비해 부가가치 총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5대 업종 중에서 자동차 및 조선업종이 각각 28.3%, 28.2%로 절반을 넘으며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및 조선 두 개 업종에 편중된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 외에는 석유화학이 8.9%일 정도로 두 자리 수를 넘는 업종이 전무한 상태이며, 금속가공 6.8%, 기계장비 5.2%, 1차금속 4.1% 등임.
- 지난 십여 년간(2000-2011년) 추이를 볼 때, 대체로 여러 업종에서 고용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자통신장비(5.2%→ 1.2%), 석유화학(10.8%→ 8.9%), 비금속광물(1.0%→ 0.8%) 등은 고용 비중이 감소한 업종.

〈표 3-4〉 제조업 종사자수 비중

(단위: %)

| | 2000 | 2004 | 2008 | 2009 | 2010 | 2011 |
|--------|------|------|------|------|------|------|
| 식료품 | 2.1 | 2.1 | 1.8 | 2.0 | 2.0 | 1.9 |
| 섬유 | 2.3 | 2.4 | 1.9 | 2.0 | 1.9 | 2.0 |
| 의복모피 | 0.3 | 0.3 | 0.3 | 0.3 | 0.3 | 0.2 |
| 목재나무제품 | 0.3 | 0.5 | 0.5 | 0.5 | 0.5 | 0.6 |
| 펄프종이 | 0.8 | 0.8 | 0.7 | 0.7 | 0.9 | 0.9 |
| 석유정제 | 3.4 | 3.4 | 3.4 | 3.5 | 3.5 | 3.3 |
| 석유화학 | 10.8 | 9.7 | 8.2 | 8.2 | 8.5 | 8.9 |
| 고무플라스틱 | 1.0 | 2.5 | 2.0 | 2.2 | 2.2 | 2.1 |
| 비금속광물 | 1.0 | 1.0 | 0.8 | 0.8 | 0.8 | 0.8 |
| 1차금속 | 4.3 | 4.0 | 4.2 | 4.3 | 4.5 | 4.1 |
| 금속가공 | 6.4 | 5.3 | 6.7 | 6.5 | 7.0 | 6.8 |
| 전자통신장비 | 5.2 | 5.5 | 1.5 | 1.9 | 1.3 | 1.2 |
| 의료정밀기기 | 0.2 | 0.2 | 0.3 | 0.5 | 0.5 | 0.5 |
| 전기장비 | 1.4 | 1.8 | 2.5 | 2.4 | 2.6 | 3.0 |
| 기계장비 | 4.6 | 4.3 | 6.0 | 5.1 | 5.6 | 5.2 |
| 자동차 | 28.7 | 27.9 | 28.8 | 28.4 | 29.8 | 28.3 |
| 조선 | 24.8 | 25.8 | 28.3 | 28.8 | 26.0 | 28.2 |
| 가구 | 0.9 | 1.0 | 0.9 | 1.1 | 1.2 | 1.2 |

3) 3차 산업(서비스업)

(1) 생산

- 2011년 기준으로 서비스업 부가가치 총액은 11.0조원이며, 그 외 건설업 부가가치 총액은 1.8조원, 전기가스수도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0.7조원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은 도소매, 교육, 운수, 부동산임대, 금융보험,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임.
- 지난 십여 년간 3차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을 살펴보면, 지난 십여 년간 3차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을 보면, 먼저 2000년에는 먼저, 운수(21.2%), 부동산임대(15.5%), 도소매(14.3%), 교육(9.7%), 금융보험(8.9%), 공공행정(6.7%) 등이었으나, 한편 2011년에는 도소매(14.6%), 교육(13.6%), 운수(12.7%), 부동산임대(12.6%), 금융보험(9.8%), 공공행정(8.4%), 보건복지(8.1%) 등으로 나타남.
- 이렇게 볼 때, 도소매업종의 비중은 별달리 변화가 없으며, 금융보험,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업종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한편 부동산임대업종은 부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운수 업종 등은 격감하였음.

〈표 3-5〉 3차산업 업종별 부가가치

(단위: %)

| | 2000 | 2004 | 2008 | 2009 | 2010 | 2011 |
|-------|------|------|------|------|------|------|
| 도소매 | 14.3 | 14 | 14.4 | 13.8 | 14.2 | 14.6 |
| 운수 | 21.2 | 17.3 | 17 | 12.4 | 12.5 | 12.7 |
| 숙박음식 | 4.6 | 4.6 | 4.2 | 4.1 | 3.9 | 3.8 |
| 정보통신 | 4.3 | 4.5 | 3.4 | 3.8 | 3.7 | 3.4 |
| 금융보험 | 8.9 | 8.8 | 8.9 | 9.2 | 10 | 9.8 |
| 부동산임대 | 15.5 | 13.1 | 12.6 | 13.4 | 12.8 | 12.6 |
| 사업서비스 | 4.7 | 5.5 | 5.7 | 6 | 6.4 | 6.2 |
| 공공행정 | 6.7 | 7.4 | 7.7 | 8.6 | 8.4 | 8.4 |
| 교육 | 9.7 | 12.5 | 12.9 | 13.9 | 13.4 | 13.6 |
| 보건복지 | 3.9 | 5.7 | 6.6 | 7.7 | 7.9 | 8.1 |
| 예술스포츠 | 1.5 | 1.6 | 1.8 | 1.9 | 1.9 | 1.9 |
| 기타서비스 | 4.7 | 5.1 | 5 | 5.3 | 5.1 | 5.1 |

(2) 고용

- 2011년 기준으로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26만 4천명. 이들 서비스업의 고용을 주도하는 업종으로는 도소매업 18.6%, 음식숙박업 15.9%, 사업서비스업 12.2%, 교육업 12.1% 등임.
- 지난 십여 년간(2000-2011년) 추이를 볼 때, 고용이 증가한 업종으로는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업, 보건복지업 등임. 이들은 각각 운수업(7.8%→ 8.7%), 사업서비스업(7.1%→12.2%), 교육업(11.3%→ 12.1%), 보건복지업(5.1%→ 8.7%)로 나타나며, 이 중에서 사업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에서 고용증가가 뚜렷이 확대됨.
- 반면 지난 십여 년간(2000-2011년)의 고용 추이를 볼 때, 고용이 감소한 업종으로는 도소매업(24.4%→ 18.6%)에서 가장 뚜렷하며, 그 외에 음식숙박업(17.9%→ 15.9%), 금융보험업(5.3%→ 4.8%), 공공행정업(5.2%→ 4.8%) 등에서도 고용이 감소하였음.

〈표 3-6〉 3차산업 종사자수 비중

(단위: %)

| | 2000 | 2004 | 2008 | 2009 | 2010 | 2011 |
|-------|------|------|------|------|------|------|
| 도소매 | 24.4 | 21.3 | 19.8 | 19.6 | 18.6 | 18.6 |
| 운수 | 7.8 | 8.1 | 8.3 | 8.5 | 8.3 | 8.7 |
| 숙박음식 | 17.9 | 17.7 | 16.6 | 16.4 | 15.7 | 15.9 |
| 정보통신 | 1.9 | 1.4 | 1.4 | 1.4 | 1.3 | 1.3 |
| 금융보험 | 5.3 | 5 | 5.5 | 5 | 4.9 | 4.8 |
| 부동산임대 | 2.3 | 3.2 | 2.8 | 2.9 | 3.2 | 3.3 |
| 사업서비스 | 7.1 | 10.4 | 10.5 | 10.3 | 11.8 | 12.2 |
| 공공행정 | 5.2 | 4.5 | 4.4 | 4.7 | 5.2 | 4.8 |
| 교육 | 11.3 | 12.1 | 13.1 | 12.7 | 12.9 | 12.1 |
| 보건복지 | 5.1 | 5.7 | 7.6 | 8.3 | 8.6 | 8.7 |
| 예술스포츠 | 3.2 | 3 | 2.7 | 2.7 | 2.5 | 2.5 |
| 기타서비스 | 8.3 | 7.6 | 7.3 | 7.4 | 7.1 | 7.1 |

요약

- 제조업의 편중이 심화. 울산지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편중이 심한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부문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음. 고용면에서도 자동차, 조선 등에 집중된 경향이 매우 강한 반면, 석유화학 부문의 고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함.
-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의 생산성은 저하. 울산지역의 3차산업의 종사자수는 도소매,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교육 등의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 하지만 3차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함. 이 때문에 2차산업인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여기에는 금융보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적 서비스의 비중은 낮은 반면 도소매 및 숙박음식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비중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탓도 적지 않게 작용함.

2. 노동시장

1) 고용 일반¹⁸⁾

(1) 경제활동인구

〈표 3-7〉 경제활동인구총괄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비)

| | 15세이상인구 | | 경제활동인구 | | 경제 활동 참가율 | | | | | |
|------|---------|-----|--------|------|-----------|-------|------|-------|------|-------|
| | | 증감률 | | 증감률 | 전 체 | 증감(p) | 남 자 | 증감(p) | 여 자 | 증감(p) |
| 2003 | 808 | 2.0 | 492 | 1.4 | 60.8 | -0.4 | 79.5 | 1.0 | 42.1 | -2.1 |
| 2004 | 823 | 1.8 | 507 | 3.0 | 61.5 | 0.7 | 78.6 | -0.7 | 44.1 | 2.2 |
| 2005 | 842 | 2.2 | 511 | 0.8 | 60.7 | -0.8 | 77.8 | -0.8 | 43.5 | -0.6 |
| 2006 | 858 | 1.9 | 509 | -0.4 | 59.3 | -1.4 | 76.5 | -1.3 | 41.9 | -1.6 |
| 2007 | 874 | 1.9 | 528 | 3.8 | 60.5 | 1.2 | 77.1 | 0.6 | 43.6 | 1.7 |
| 2008 | 884 | 1.2 | 545 | 3.2 | 61.7 | 1.2 | 76.4 | -0.7 | 46.7 | 3.1 |
| 2009 | 900 | 1.7 | 544 | -0.2 | 60.5 | -1.2 | 75.4 | -1.0 | 45.2 | -1.5 |
| 2010 | 914 | 1.6 | 553 | 1.7 | 60.5 | 0.0 | 75.0 | -0.4 | 45.7 | 0.5 |
| 2011 | 922 | 0.8 | 559 | 1.0 | 60.7 | 0.2 | 75.2 | 0.2 | 45.8 | 0.1 |
| 2012 | 923 | 0.2 | 561 | 0.4 | 60.8 | 0.1 | 77.0 | 1.8 | 44.2 | -1.6 |

18) 이하에서는 동남통계청의 '부산/울산/경남 고용동향'에서 발표된 통계치 참조.

- 울산지역의 경제활동인구 현황을 보면(2012년 말 기준), 15세이상 인구가 923천명이며, 전년 동월의 922천명에 비해 1천명(0.2) 증가하였음. 추세상으로는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115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률 추이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는 561천명(2012년 말 기준)으로, 전년동월의 559천명에 비해 2천명(0.4%) 증가한 것임. 경제활동인구 수를 보면 10년전인 2003년에 492천명에서 69천명이 증가한 것임. 증감률 추이 면에서는 약간의 등락이 있으나 대체로 감소세를 보임.
-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60.8%임. 이는 2003년의 60.8%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더 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다만 남녀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엇볼 수 있음.
- 먼저 남자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79.5%에서 2012년에는 77.0%로 나타나 약 2.5%p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여자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42.1%였으나, 2012년에는 44.2%로 지난 십년간 2.1%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3-8〉 경제활동인구총괄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비)

| | 취업자 | | 실업자 | | 실업률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수 | 증감률 | 수 | 증감률 | 률 | 증감(p) | 수 | 증감률 |
| 2003 | 476 | 0.6 | 16 | 31.7 | 3.2 | 0.8 | 317 | 3.2 |
| 2004 | 488 | 2.6 | 18 | 15.8 | 3.6 | 0.2 | 317 | -0.1 |
| 2005 | 493 | 1 | 18 | -2.7 | 3.5 | -0.1 | 331 | 4.5 |
| 2006 | 494 | 0.2 | 15 | -17.4 | 2.9 | -0.6 | 349 | 5.5 |
| 2007 | 515 | 4.2 | 14 | -7.5 | 2.6 | -0.3 | 346 | -1 |
| 2008 | 526 | 2.2 | 19 | 39.7 | 3.5 | 0.9 | 339 | -1.9 |
| 2009 | 521 | -1 | 23 | 20.5 | 4.2 | 0.7 | 355 | 4.8 |
| 2010 | 534 | 2.4 | 20 | -12.7 | 3.6 | -0.6 | 361 | 1.5 |
| 2011 | 544 | 1.9 | 16 | -22 | 2.8 | -0.8 | 363 | 0.5 |
| 2012 | 547 | 0.6 | 15 | -5.8 | 2.6 | -0.2 | 362 | -0.2 |

-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는 547천명(2012년 말 기준)으로 이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한 것임. 증감률 면에서는 2007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추세상으로는 2003년의 취업자 수가 476천명으로는, 지난 십년간 71천명의 취업자가 늘어난 것임을 알 수 있음.

- 실업자 수는 15천명(2012년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5.8% 감소한 것임. 10년 전인 2003년의 실업자 수가 16천명이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23천명으로 다소 늘어났으나 점차 감소세를 보임.
- 실업률은 2012년 말 기준으로 2.6%임. 10년 전인 2003년의 실업률 3.2%와 비교해 볼 때 의미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음. 다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실업률이 4.2%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실업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
-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2012년 말 기준으로 362천명으로 추정됨. 이는 2003년의 비경제활동인구 317명에 비해 무려 45만명이 증가한 것임. 그 외에도 울산의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지난 십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울산지역의 실업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실업률 수치가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정체상태이며, 무엇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¹⁹⁾

(2) 산업별 취업자

〈표 3-9〉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시간, 전년동기비)

| | | 총 취업자 | 농림어업 | 광공업 | 제조업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 | | | |
|------|-----|-------|------|------|------|-----------------|-------------------|---------------------|-----------------------|------|
| | | | | | | 건설업 | 도소매 음식, 숙박업 | 사업개 인, 공공 서비스 | 전기, 운 수, 창고, 금융 | |
| 2003 | 취업자 | 476 | 18 | 175 | 175 | 283 | 43 | 93 | 113 | 34 |
| | 증감률 | 0.6 | 5.9 | -4.4 | -4.4 | 3.7 | 53.6 | -13.1 | 11.9 | -8.1 |
| 2004 | 취업자 | 488 | 18 | 179 | 178 | 292 | 43 | 93 | 122 | 34 |
| | 증감률 | 2.6 | -1.7 | 2.2 | 2.1 | 3.2 | 1.6 | 0.1 | 8.0 | -2.0 |
| 2005 | 취업자 | 493 | 19 | 184 | 184 | 290 | 39 | 92 | 125 | 34 |
| | 증감률 | 1 | 5.1 | 2.9 | 3 | -0.5 | -11.1 | -1.2 | 3.0 | 2.1 |
| 2006 | 취업자 | 494 | 20 | 183 | 183 | 292 | 36 | 92 | 130 | 33 |
| | 증감률 | 0.2 | 4.3 | -0.5 | -0.5 | 0.4 | -6 | -0.5 | 4.0 | -2.9 |
| 2007 | 취업자 | 515 | 18 | 184 | 184 | 313 | 39 | 93 | 138 | 42 |
| | 증감률 | 4.2 | -7.2 | 1.3 | 1.3 | 6.9 | 7.4 | 1.5 | 7.6 | 17.3 |
| 2008 | 취업자 | 526 | 22 | 179 | 179 | 325 | 37 | 93 | 150 | 45 |
| | 증감률 | 2.2 | 19.3 | -2.5 | -2.5 | 4.1 | -4.6 | 0.2 | 8.3 | 6.7 |

19) 현재 실업률 통계에는 '사실상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통계치로서는 의미를 상실한 상태임.

| | | | | | | | | | | |
|------|-----|-----|-------|-------|-------|-----|------|------|------|------|
| 2009 | 취업자 | 521 | 15 | 164.1 | 164.1 | 342 | 42 | 99 | 159 | 42 |
| | 증감률 | 2.2 | 19.3 | -2.5 | -2.5 | 4.1 | -4.6 | 0.2 | 6.2 | -6.9 |
| 2010 | 취업자 | 534 | 10 | 157 | 157 | 366 | 40 | 105 | 179 | 42 |
| | 증감률 | 2.4 | -35.7 | -4.1 | -4.3 | 7.2 | -5.5 | 6.1 | 12.6 | 1.4 |
| 2011 | 취업자 | 544 | 8 | 159 | 159 | 377 | 40 | 112 | 180 | 46 |
| | 증감률 | 1.9 | -23.2 | 0.9 | 0.9 | 3 | 0.3 | 6.8 | 0.3 | 7.8 |
| 2012 | 취업자 | 547 | 7 | 174 | 174 | 366 | 36 | 103 | 182 | 44 |
| | 증감률 | 0.6 | -10.5 | 9.7 | 9.9 | -3 | -9 | -7.4 | 1.4 | -4.4 |

- 울산지역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은 대부분 제조업 및 3차산업으로 이루어짐. 2012년을 기준으로 3차산업 취업자 수는 366천명이며, 제조업 취업자 수는 174천명이며, 그 외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7천명임.
- 먼저 제조업의 취업자 추이를 보면, 2003년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75천명이며 2005년에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84천명에까지 달함.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7천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3년 뒤인 2012년에는 174천명으로 회복됨.
- 다음으로, 3차산업의 취업자 추이를 보면, 2003년의 3차산업 취업자 수는 283천명이며, 이후 취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 2012년의 3차산업 취업자 수는 366천명에 달함. 지난 10년간 3차산업 취업자 수는 무려 83천명이 증가함. 서비스업 중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뚜렷이 증가한 하위 업종은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으로 지난 10년간 69천명이 늘어났으며, 다음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으로 지난 10년간 10천명이 늘어났음.
-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울산지역 산업별 취업자의 경우 대부분 3차산업 그 중에서도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정체 상태이며, 증감률면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직업별 취업자

〈표 3-10〉 직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비)

| |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 | 사무직 | | 서비스·판매직 | | 농업및어업 숙련 근로자 | | 기능,기계조작 단순노무직 | |
|------|--------------|-----|-----|-----|---------|-------|-----------------|------|------------------|------|
| | | 증감률 | | 증감률 | | 증감률 | | 증감률 | | 증감률 |
| 2003 | 81 | 3.8 | 65 | 14 | 90 | -18.2 | 18 | 5.9 | 222 | 5.2 |
| 2004 | 83 | 2.1 | 65 | 1.1 | 90 | -0.1 | 17 | -4.5 | 233 | 4.9 |
| 2005 | 83 | 0 | 69 | 5.5 | 93 | 3.3 | 18 | 3.6 | 231 | -1.2 |
| 2006 | 85 | 1.9 | 71 | 2.8 | 96 | 3.7 | 19 | 8.6 | 223 | -3.2 |

| | | | | | | | | | | |
|------|----|------|----|------|-----|------|----|-------|-----|------|
| 2007 | 82 | 6.5 | 76 | 4.2 | 100 | 6.8 | 17 | -10.6 | 239 | 3.6 |
| 2008 | 84 | 2.2 | 86 | 13.4 | 98 | -1.6 | 21 | 22.5 | 237 | -1.1 |
| 2009 | 84 | -0.4 | 86 | 0.1 | 101 | 2.9 | 15 | -26.6 | 235 | -0.8 |
| 2010 | 95 | 13.6 | 86 | -0.6 | 108 | 6.3 | 10 | -33.6 | 235 | 0 |
| 2011 | 94 | -1.6 | 85 | -1.4 | 111 | 3.3 | 8 | -19.8 | 246 | 4.8 |
| 2012 | 93 | -1 | 83 | -1.5 | 103 | -7.2 | 7 | -13.6 | 261 | 5.9 |

- 울산의 직업별 취업자수의 구성(2012년 기준)을 보면 261천명에 이르는 기능및기계조작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103천명의 서비스판매직이 많고, 전문직 및 기술행정관리직의 경우 93천명이며, 사무직은 83천명 순이며,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가 7천명으로 가장 적음.
- 먼저, 전문 기술행정관리직(93천명)의 경우, 2003년의 81천명 이후 2010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다시 감소추세. 다음으로 사무직은 2003년의 65천명에서 2012년 83천명으로 10년간 약 20천명이 증가하였고 증감률에서는 꾸준한 증가세였으나 지난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됨.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103천명임. 이는 십년 전인 2003년의 90천명에 비해 13천명이 증가하였음. 증감률에서는 대체로 증가세였으나 2012년 들어 감소 추세를 보임. 기능및기계조작 단순노무직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261천명으로, 2003년의 222천명에 비해 39천명이 증가한 것임. 기능및기계조작 단순노무직은 몇 번에 걸친 약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전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추이를 분석해 볼 때, 울산지역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은 전과 다름없이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기능및기계조작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고 증가률도 높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의 증가률이 높은 편임. 반면 전문 기술행정관리직의 경우 지난 십년간 의미 있는 변화는 없어 보임.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표 3-1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비)

| | 자영업주 | | 무급가족종사자 | | 상용근로자 | | 임시근로자 | | 일용근로자 | |
|------|------|------|---------|-------|-------|------|-------|------|-------|------|
| | 증감률 | | 증감률 | | 증감률 | | 증감률 | | 증감률 | |
| 2003 | 85 | -6.6 | 17 | -29.2 | 229 | -0.4 | 110 | 11.1 | 34 | 17.2 |

| | | | | | | | | | | |
|------|-----|------|----|-------|-----|------|-----|-------|----|-------|
| 2004 | 86 | 1.3 | 16 | -6.3 | 241 | 5.2 | 103 | -6.4 | 42 | 21.9 |
| 2005 | 92 | 6.6 | 15 | -6.1 | 252 | 4.3 | 95 | -7.1 | 39 | -7.7 |
| 2006 | 96 | 4.1 | 16 | 5.9 | 245 | -2.5 | 103 | 8 | 34 | -12.2 |
| 2007 | 95 | -1 | 18 | 11.1 | 254 | 3.3 | 115 | 11.9 | 33 | -2.1 |
| 2008 | 100 | 5.7 | 19 | 4.4 | 258 | 1.8 | 118 | 1.9 | 32 | -4.2 |
| 2009 | 95 | -4.8 | 14 | -23.4 | 266 | 2.9 | 114 | -3.4 | 33 | 2.5 |
| 2010 | 92 | -3.3 | 13 | -10.4 | 281 | 5.9 | 118 | 4.3 | 29 | -10.7 |
| 2011 | 92 | -0.5 | 15 | 14 | 280 | -0.6 | 128 | 8 | 30 | 2.7 |
| 2012 | 92 | 0.3 | 15 | 1.4 | 303 | 8.3 | 108 | -15.6 | 29 | -2 |

- 울산지역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상용직 수가 303천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임시직 수가 108천명이며, 그 외 자영업주 92천명, 일용직 29천명, 무급가족종사자 15천명 순으로 이루어짐.
- 먼저 자영업주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92천명으로 이는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한 것임. 자영업주의 수를 보면 2003년 85천명에서 2012년 92천명으로 지난 십년간 7천명이 증가하였음.
- 다음으로 상용직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303천명으로 이는 전년동월대비 8.3% 증가한 것임. 상용직 수의 추이를 보면 2003년 229천명에서 십년 뒤인 2012년에는 303천명으로 이 기간 동안 총 74천명이 증가하였음.
- 임시직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108천명으로 이는 전년동월대비 15.6% 감소한 것임. 임시직 수의 추이를 보면 2003년 110천명에서 2012년 108천명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임시직은 한 때(2011년) 128천명까지 늘어날 정도였으나 이를 정점으로 현재 격감 상태. 임시직은 지난 십년간 증감폭이 다소 큰 데다 이런 격감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일용직은 2012년 기준으로 29천명임. 2003년의 일용직 수는 34천명, 2004년 42천명 등으로 잠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로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임
- 울산지역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은 주로 상용직이 대부분이며, 지난 십년간 취업자의 증가세를 주도한 것도 이들에 의해서임.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임시직 및 일용직의 경우 증감폭이 다소 크긴 하나 대체로 이들 취업자에 의한 증가 정도는 미미한 편임.

(5)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표 3-12〉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시간, 전년동기비)

| | 1~17시간 | | 18~35시간 | | 36~53시간 | | 54시간이상 | | 일시휴직 | | 평균 취업 시간 |
|------|---------|---------|---------|---------|---------|---------|---------|---------|------|-------|----------------|
| | 증감 률 | | | |
| 2003 | 14 | 27.3 | 43 | 22.9 | 242 | -2 | 167 | -2.9 | 9 | 28.6 | 47.6 |
| 2004 | 15 | 5 | 39 | -8.2 | 261 | 8.1 | 162 | -3 | 10 | 10.6 | 47.7 |
| 2005 | 16 | 10.1 | 40 | 0.8 | 264 | 1 | 162 | -0.6 | 11 | 9.6 | 47.4 |
| 2006 | 17 | 5.5 | 36 | -8.8 | 275 | 4.2 | 157 | -3.1 | 9 | -20.2 | 47.4 |
| 2007 | 15 | -13.4 | 46 | 26.5 | 288 | 4.7 | 157 | 0.1 | 9 | 25.7 | 47.1 |
| 2008 | 20 | 35.6 | 71 | 54.1 | 287 | -0.5 | 138 | -11.6 | 10 | 10.8 | 44.8 |
| 2009 | 18 | -12.4 | 44 | -37.1 | 313 | 9.1 | 136 | -2 | 11 | 4.9 | 45.5 |
| 2010 | 21 | 20.3 | 57 | 27.3 | 313 | 0.2 | 134 | -1.3 | 9 | -21.3 | 44.9 |
| 2011 | 21 | 0 | 70 | 23.9 | 301 | -3.8 | 142 | 5.8 | 10 | 11.8 | 44.7 |
| 2012 | 17 | -21.2 | 47 | -32.6 | 314 | 4.3 | 160 | 12.8 | 9 | -6.3 | 46.4 |

- 울산지역 취업자의 취업시간대를 보면, (정규직에 해당하는)36~53시간대의 취업자 수의 분포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54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취업자 군이 뒤를 따르고 있음. (비정규직에 해당하는)1~17시간대 및 18~35시간대의 취업자 수는 2012년 기준으로 각각 17천명, 47천명에 이룸.
- 먼저 1~17시간대 취업자의 경우 2003년 14천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21천명으로까지 증가 하였음. 다만 2012년에는 17천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18~35시간대 취업자의 경우 2003년에 43천명이었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 71천명에 이룸. 2009년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2년에는 47천명임.
- 이 두 집단을 합친 1~35시간대 취업자, 다시 말해 비정규직 취업자의 경우 2003년에 57천 명이었으며, 2012년에는 64천명에 이르러 지난 십년간 1~35시간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취업자 수는 7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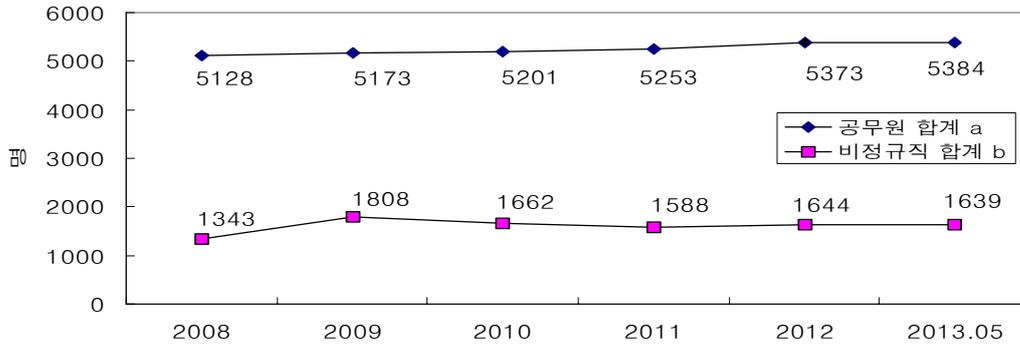
2) 공공부문 고용 및 임금수준

(1) 울산지역 정부기관 고용 현황

- 울산시의 시청과 구(군)청에서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 비정규직노동자 현황을 보면, 2013년 5월 현재 공무원 수는 5384명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1639명임.

-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는 약 250명이 증가하는 등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2009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3년 전 부터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그림 3-1〉 울산지역 정부기관의 공무원 및 비정규직(무기/기간제)고용 현황



자료:〈부표2〉 참조

- 공무원 대비 비정규직(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의 비율을 보면 2008년 26%, 2009년 35%였으며 2013년 5월 현재에는 30% 정도임(표 3-14 참조).

〈표 3-13〉 울산지역 공공기관의 공무원/비정규직노동자 비율

(단위: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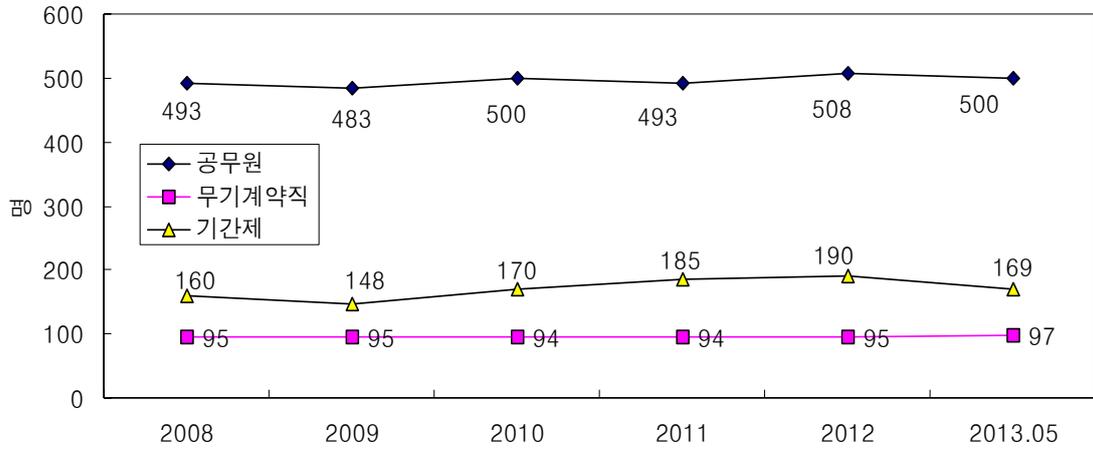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05 |
|-----------|------|------|------|------|------|---------|
| 공무원 합계 a | 5128 | 5173 | 5201 | 5253 | 5373 | 5384 |
| 비정규직 합계 b | 1343 | 1808 | 1662 | 1588 | 1644 | 1639 |
| b/a | 0.26 | 0.35 | 0.32 | 0.30 | 0.31 | 0.30 |

북구청 내부자료

울산 북구청의 공공부문 고용

- 울산 북구청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수 현황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2008년 493명에서 5년 뒤인 2013년 5월 현재 500명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2008년 255명에서 5년 뒤인 2013년 5월 현재 266명임.
- 비정규직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은 2008년 160명이었으며 2013년 5월 현재 169명임. 기간제의 경우 2008년 95명이었으며, 2013년 5월 현재 97명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그림 3-2〉 울산 복구청의 고용 현황



복구청 내부자료

(2) 울산지역 공공부문의 임금수준

울산지역의 고용형태별 임금현황

〈표 3-14〉 울산지역의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2012년 3분기 기준)

(단위: 만원)

| | 전체(a+b) | 상용직 a | 임시/일용직 b | b/a |
|-------|---------|-------|----------|------|
| 울산 | 283.6 | 340.1 | 136.8 | 40.1 |
| 서울 | 235.7 | 282.4 | 124.4 | 44.1 |
| 부산 | 188.6 | 233.1 | 119 | 51.1 |
| 대구 | 198.8 | 244.6 | 116.5 | 47.6 |
| 인천 | 202.3 | 242.4 | 124.3 | 51.3 |
| 광주 | 207.2 | 254.7 | 114.7 | 45.0 |
| 대전 | 206.7 | 251.6 | 122.5 | 48.7 |
| 7대광역시 | 218.8 | 266.4 | 122.3 | 45.9 |
| 전국 | 220 | 247.8 | 115.6 | 46.7 |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울산지역의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2012년 3분기 기준).

○ 먼저 울산지역 전체 노동자(상용/임시/일용직 포함)의 월평균임금은 283.6만원임. 그 외 고용

형태별로 보면 상용직노동자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340.1만원이며,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월평균임금은 136.8만원임. 이러한 임금수준은 전국은 물론이고 7대 광역시의 임금 수준에 비해 높은 것임.

- 다음으로 상용직대비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약 40.1%로 추정됨. 이는 전국적인 수준인 46.7%는 물론 7대 광역시 수준인 45.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이는 울산지역 상용직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임.

울산지역 공공부문의 임금 수준

〈표 3-15〉 울산지역 공공부문의 월평균임금 현황(2012년 3분기 기준)

(단위: 만원)

| | 2차산업 | | 3차산업 | | 공공* | | |
|-------|-------|-------|-------|-------|-------|-------|-------|
| | 상용직 | 임시일용 | 상용직 | 임시일용 | 상용직 | 임시일용 | 36h이상 |
| 울산 | 426.8 | 180.6 | 257.1 | 130.8 | 257.3 | 102.4 | 135.1 |
| 서울 | 276.5 | 132.8 | 283.6 | 123.6 | 284.8 | 104.3 | 142.7 |
| 부산 | 223.4 | 128.8 | 236.0 | 117.9 | 249.6 | 93.3 | 135.2 |
| 7대광역시 | 277.9 | 128.5 | 263.1 | 121.7 | 270.0 | 95.0 | 135.8 |
| 전국 | 250.1 | 126.2 | 247.1 | 116.8 | 250.3 | 83.6 | 121.7 |

* 공공부문: 산업분류번호 35,36,84,85,86,87에 해당하는 업종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첫째, 울산지역의 2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면(2012년 3분기 기준),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426.8만원이며,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80.6만원임. 상용직대비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비중은 약 42%임.
- 둘째, 울산지역의 3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57.1만원이며,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30.8%임. 이렇게 볼 때 울산지역에서 산업격차는 상용직노동자끼리는 약 170만원, 임시/일용직 노동자끼리는 약 5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3차산업에 종사하는 상용직대비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비중은 51%임.

- 셋째, 울산지역의 3차산업 중에서 공공부문의 임금수준을 추출해 보면,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57.3만원이며,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02.4만원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상용직대비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비중은 40%임.

이렇게 볼 때 공공부문과 3차산업 상용직의 월평균임금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반면 공공부문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차산업은 물론 3차산업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비교해도 차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됨.²⁰⁾

- 요컨대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의 임금비중은 3차산업(51%) > 2차산업(42%) > 공공부문(40%) 순으로 나타남.

20) 위의 표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며 노동시간이 월 36시간 이상인 경우의 수치를 참조할 것.

IV. 생활임금의 구상과 기준

1. 복구청 노동자의 임금분포

울산 복구청에 직간접 고용 노동자의 생활임금 기준을 산출하기 위해 먼저 표본 노동자의 임금 분포를 알아보고자 함. 이를 위해 시간당 임금 분포와 월평균 임금 분포를 제시함.²¹⁾ 그 외 이 장에서 다루는 복구청 노동자(표본)의 기본적인 설명은 실태조사 부분에서 참조.

1) 시간당임금 분포

- 울산 복구청에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 중에서 전체 표본 노동자의 시간당임금²²⁾은 평균 5806 원임. 이 중에서 위탁제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이 가장 높으며,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들을 기간제 무기계약직, 위탁제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기간제 노동자는 시간당임금이 평균 5063원임. 둘째,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시간당임금이 평균 5602원이며, 최소임금과 최대 임금간 격차가 적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셋째, 위탁제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은 7524원으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에 비해 높으며, 최소임금과 최대임금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표4-1〉 울산 복구청 고용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2012년 3분기)

(단위:명, 원)

| | 인원 | 평균 | 최소 | 최고 |
|-----|-----|------|------|-------|
| 기간제 | 171 | 5063 | 4054 | 5734 |
| 무기직 | 42 | 5602 | 4867 | 5701 |
| 위탁제 | 79 | 7524 | 3478 | 20560 |
| 전체 | 292 | 5806 | 3478 | 20560 |

* 〈부표 1〉에서 계산

- 울산 복구청에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 중에서 표본에 해당하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 분포를 보면 첫째, 시간당 임금이 대부분 5천원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음. 그 외의 임금분포는 시간당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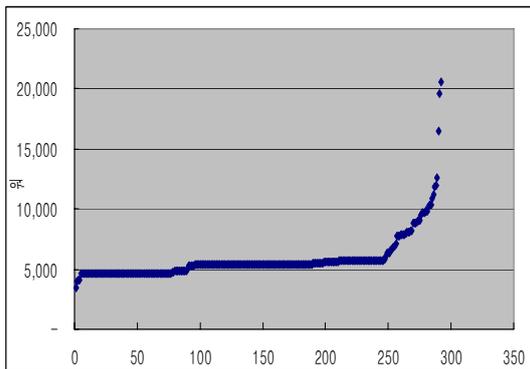
21) 표본인 복구청 노동자의 시간당(또는 월간) 노동량이 정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월평균임금이나 월 비용총액 추정 과정에 일부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음. 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원자료 상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임.

22) 약정임금을 바탕으로 시간당임금을 계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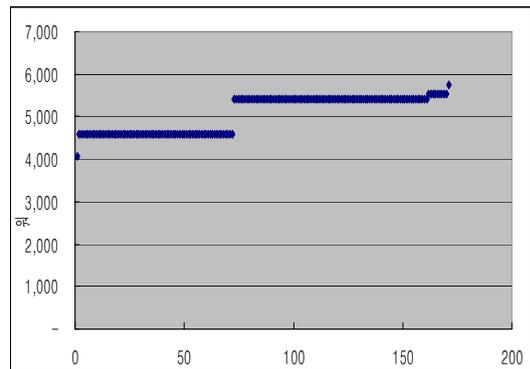
금이 1만원부터 2만원까지 가파르게 분포함(그림4-1 참조).

- 둘째, 기간제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의 경우 대체로 4580원, 5405원 등을 위주로 구성됨. 시간당 최저임금의 분포가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띠는 것은 서류상으로 제시된 임금 기준인 약정임금 기준을 적용한 요인도 있음(그림4-2 참조).
- 셋째 무기계약직노동자의 경우, 몇몇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임금분포는 5천700원 대에 집중되어 있음. 무기계약직의 시간당 임금은 기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매우 단순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4-3 참조).
- 넷째, 위탁제 노동자의 임금분포는 최저임금 기준에서부터 1만 3천원대까지 상대적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 그 외 1만5천원에서 2만원까지 일부 분포함(그림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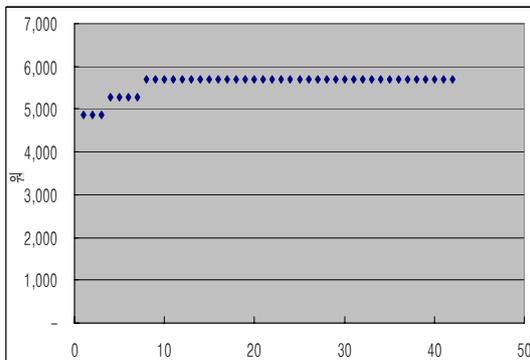
〈그림4-1〉복구청노동자의 시간당임금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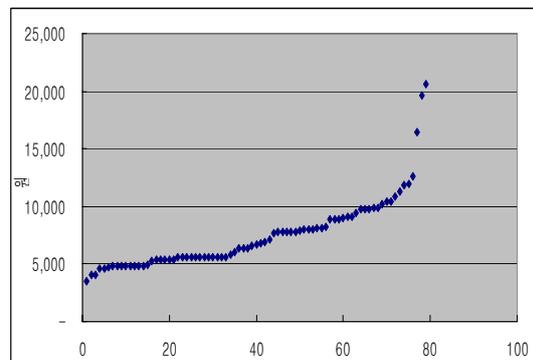
〈그림4-2〉기간제노동자의 시간당임금분포



〈그림4-3〉무기계약직의 시간당임금분포



〈그림4-4〉위탁직의 시간당임금 분포



2) 월평균임금²³⁾ 분포

- 울산 북구청에 고용된 노동자 중에서 표본인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임금(2012년 3분기 기준)은 평균 1,783,519원임. 이들 중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으며,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들을 기간제 무기계약직, 위탁제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기간제 노동자는 171명(58.6%)로 절반을 상회하며, 이들의 월임금은 평균 1,225,673원임. 다음으로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42명(14.4%)이며, 이들의 월임금은 평균 3,422,254원임. 위탁직 노동자는 79명(27.1%)이며, 이들의 월임금은 평균 2,119,782원임.

〈표 4-2〉 울산 북구청 고용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2012년 3분기)

(단위: 명, 원)

| | 인원 | 평균 | 최소 | 최고 |
|-----------|-------------|-----------|-----------|-----------|
| 기간제 | 171(58.6%) | 1,225,673 | 311,440 | 2,306,860 |
| 무기직 | 42(14.4%) | 3,422,254 | 2,545,943 | 4,237,537 |
| 위탁직 | 79((27.1%) | 2,119,782 | 767,890 | 5,858,667 |
| 전 체 | 292(100.0%) | 1,783,519 | 311,440 | 5,858,667 |
| 전체(계약직포함) | 319 | 1,949,765 | 311,440 | 5,858,667 |

* 〈부표 1〉에서 계산

- 첫째, 북구청 노동자 전체 표본의 월평균임금 분포를 보면 130~160만원대가 가장 많으며, 160만원대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6백만원대까지 폭넓게 형성(그림4-5 참조).
- 둘째, 기간제노동자의 월평균임금 (=총액급여/산정기준시간)의 분포를 보면 1백만원부터 140만원까지 상대적으로 좁은 구간에서 광범위하게 구성됨(그림4-6 참조).²⁴⁾
- 셋째,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대략 3백만원에서 4백만원까지 분포함. 임금분포는 수평선의 형태를 띠며 고르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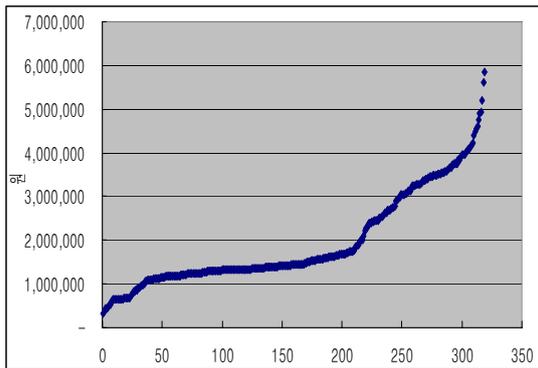
23) 구체적인 월임금 분포는 부표1을 참조. 여기서 월평균 임금은 2012년 3분기에 해당하는 7월, 8월, 9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것임. 단 3개월 중에서 1개월만 노동을 제공한 경우는 근로기간이 짧거나 3개월치 평균 값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제외함.

24) 이는 시간당 총액임금의 경우 일하는 시간에 따라 각종 초과수당은 물론 연간수당까지 포함되면서 시간당 임금액수도 증가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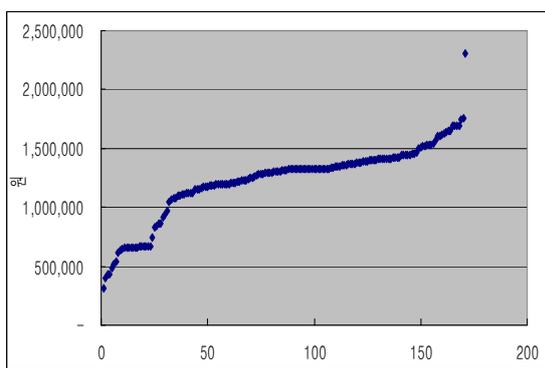
최저임금 기준에 의한 시간당임금에 비해 적게는 두배, 많게는 세배까지 높게 형성(그림4-7 참조).

- 넷째, 위탁직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의 분포는 1백만원부터 6백만원까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에 비해 임금폭이 큼(그림4-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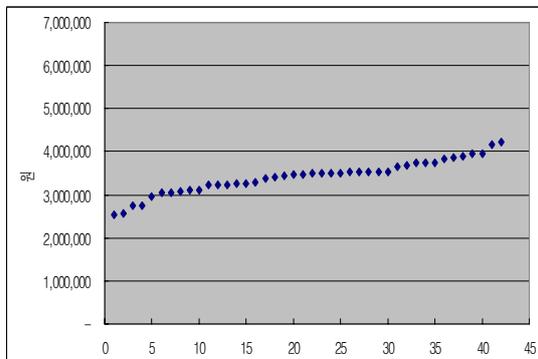
〈그림4-5〉복구청노동자의 월평균임금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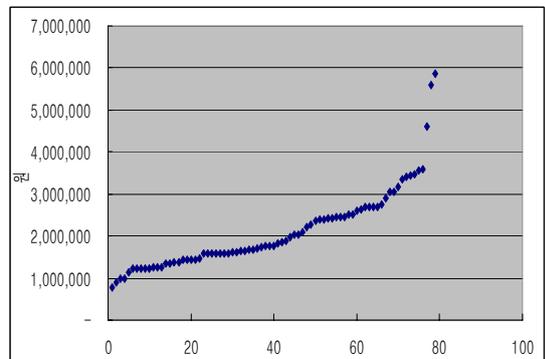
〈그림4-6〉기간제노동자의 월평균임금분포



〈그림4-7〉무기계약직의 월평균임금분포



〈그림4-8〉위탁노동자의 월평균임금 분포



- 요약하면, 첫째, 복구청에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대체로 저임금에 기반하고 있으며 구조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 이들은 대개 최저임금(4580원, 2012년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이는 공공기관이 임금수준의 설정에 암묵적으로 최저임금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료에 서처럼 지난 5년간의 이런 양상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또한 이는 공공기관이 저임금노동자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음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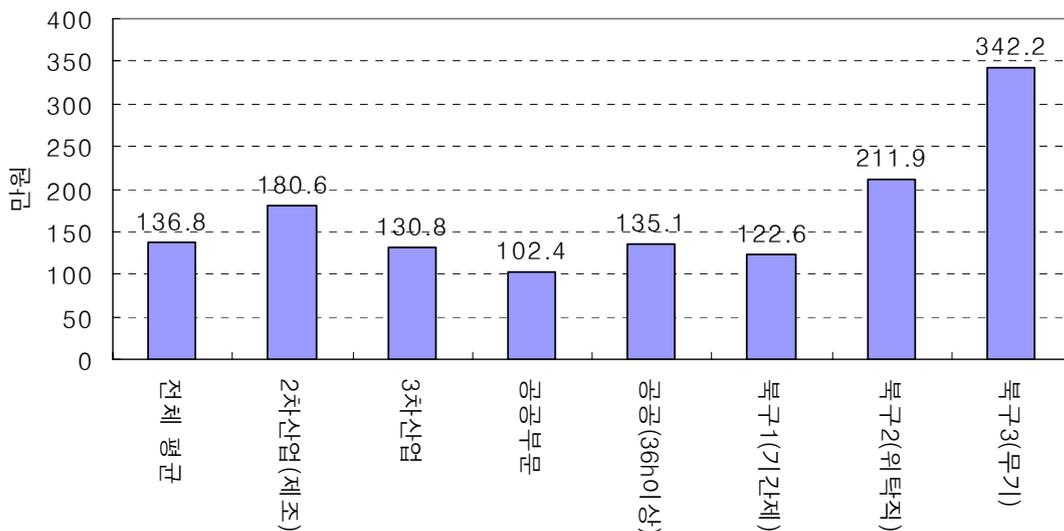
- 둘째, 노동자간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격차가 적지 않음. 임금수준은 대략 무기계약직〉 위

탁제〉 기간제 순으로 나타남. 간접고용 형태인 위탁제노동자의 임금수준이 기간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위탁제의 경우 직책을 보유한 고임금층과 그렇지 못한 저임금층간의 임금격차가 큰 데, 이 때문에 위탁제의 평균 임금이 다소 높게 나타나 일종의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임.

- 북구청의 직간접 고용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울산지역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해 볼 때 내부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9〉를 보면 울산지역 전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36.8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102.4만원임. 이에 비해 북구청에 고용된 기간제의 월평균 임금은 122.6만원, 위탁직 211.9만원, 무기계약직 342.2만원 수준임.

이미 앞에서도 보았듯이 무기계약직의 경우 월등하게 높은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탁직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만 기간제 및 위탁직 일부가 울산의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림 4-9〉 울산 북구 및 울산지역 비정규직의 임금수준(2012년 3분기기준)



월평균임금 기준은 2012년 3분기임.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및 〈부표1〉에서 계산

2. 생활임금의 기준

- 생활임금의 기준은 크게 상대적 임금 산정, 절대적 임금 산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상대적 임금기준에 따라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이유는 연구진 구성의 한계, 절대적 임금 산정에 따른 논란, 공공부문 통계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몇 가지 부족한 점 때문임.
- 생활임금의 상대적 기준은 대개 중위소득의 50%~60%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설정함. 이를 위해 각각의 중위소득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및 국세청의 과세자 소득자료를 사용함. 그 외 평균소득 결과를 보여주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자료를 사용하는데,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과세자 소득자료가 지닌 통계 수치상의 문제 및 한시적 자료 활용 문제에 기인함.

1) 중위소득 기준

첫째,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중위소득

- 2012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통계청)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평균소득은 월 419만원이며, 중위소득은 50%에서는 373만원, 40%에서는 325만원에 해당.
- 표본에 나타난 북구청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 P50은 물론이고 P40과 비교해 보아도 턱없이 낮은 수준임. 북구청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012년 3분기 기준으로 1,783,519원임(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225,673원,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3,422,254원, 위탁직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119,782원), <가계동향조사>의 2012년 3분기 평균소득은 4,187,831원이며, 중위소득은 P40이 3,246,238원, P50이 3,730,979원임.

〈표 4-3〉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임금 기준치(2012년 3분기 기준)

|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 | 북구청 노동자 |
|----|--------------|------------------------------------|---|
| | 평균소득(월) | 중위소득 | 월평균임금 |
| 금액 | 4,187,831원 | 3,246,238원(P40) 3,730,979원(P50) | 전체 1,783,519원 기간제 1,225,673원 무기계약직 3,422,254원 위탁직 2,119,782원 |

-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 P40 이하에 해당하는 복구청노동자(표본)의 임금분포를 보면 기간제의 경우 대부분 100-150만원 구간에 분포하며, 위탁직의 경우 150-200만원 구간과 100-150만원 구간에 주로 분포함. 무기계약의 경우 월등히 높아 250만원-350만원 구간에 분포함(표 4-4 참조).

〈표 4-4〉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p40 이하에 해당하는 표본(복구청)의 월평균임금

| | 기간제 | | 위탁직 | | 무기계약 | | 전체 | |
|-------------|-----|-----------|-----|-----------|------|-----------|-----|-----------|
| | 인원 | 평균 금액 | 인원 | 평균금액 | 인원 | 평균금액 | 인원 | 평균금액 |
| ~100만원 미만 | 31 | 664,022 | 3 | 884,872 | - | - | 254 | 1,491,404 |
| 100~150만원미만 | 117 | 1,293,002 | 19 | 1,303,118 | - | - | | |
| 150~200만원미만 | 22 | 1,609,875 | 22 | 1,689,273 | - | - | | |
| 200~250만원미만 | 1 | 2,306,860 | 13 | 2,305,713 | - | - | | |
| 250~300만원미만 | - | - | 10 | 2,673,950 | 5 | 2,708,236 | | |
| 300만원 이상 | - | - | 3 | 3,093,507 | 8 | 3,139,151 | | |
| 소 계 | 171 | 1,225,673 | 70 | 1,865,316 | 13 | 2,973,415 | | |

- 이상과 같이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중위소득 자료를 이용해 생활임금의 기준을 제시할 경우 통계상 기준선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도 괴리가 커서 기각함. 대신 과세자 중위소득을 이용하여 생활임금 기준치를 제시하고 비용을 추정함.

둘째, 과세자소득 100분위 자료에 의한 중위소득

- 이와 달리 과세자소득 100분위자료(국세청)를 이용해 분석한 홍중학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소득은 298.6만원, 중위소득 50%에서는 209.2만원에 해당함. 과세자 소득자료에 의한 중위소득(P50)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복구청 표본의 전체 월평균임금은 중위소득에 약간 못 미치는 임금수준임.
- 세부적으로는 무기계약직 및 위탁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중위소득(P50)인 209.2만원을 상회함. 다만 위탁직노동자 중에서 상대적 저임금층을 형성하는 절반 정도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그 외 기간제노동자의 월평균임금도 중위소득(P50)보다 한참 낮아 이들은 거의 전부가 생활임금을 적용할 대상으로 추정됨.

〈표 4-5〉 과세자소득자료에 의한 중위소득 기준치

| | 국세청 과세자소득 100분위자료* | | 북구청 노동자 |
|----|--------------------|-----------|---|
| | 평균소득(월) | 중위소득(P50) | 월평균임금 |
| 금액 | 298.6만원 | 209.2만원 | 전체 1,783,519원(292명) 기간제 1,225,673원(171명) 무기계약직 3,422,254원(42명) 위탁직 2,119,782원(79명) |

* 2011년 자료임. 이 자료의 과세자 표본은 13266천명. 209.2만원은 13266천명의 정중앙인 6633천번째 과세자의 연간소득 2510만원을 월소득으로 표시한 것임.

- 과세자 자료의 중위소득(P50=209.2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표본의 월평균임금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표 참조).
- 먼저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1,219,313원(170명)이며, 다음으로 위탁직노동자의 경우 1,504,391원(47명)임.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무기계약직은 해당자가 없음. 기간제와 위탁제를 합친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281,058원(217명)으로 나타남.
- 생활임금 기준을 중위소득 P50(209.2만원)으로 잡을 경우, 209.2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표본은 총 217명임. P50(209.2만원)과 각 표본의 월평균임금간 차이를 모두 합친 비용총액을 월 175,974,454원으로 추정함.
- 이 중에서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해당 인원이 170명이며, P50(209.2만원)과 각 표본(기간제)의 월평균임금간 차이를 모두 합친 비용총액은 148,356,815원임. 다음으로 위탁직노동자의 경우 해당 인원이 47명이며, P50(209.2만원)과 각 표본(위탁직)의 월평균임금간 차이를 모두 합친 비용총액은 27,617,639원임.

〈표 4-6〉 생활임금 기준을 중위소득 p50으로 잡을 경우의 비용 추정

| 중위소득 p50 (a) | 중위소득 p50이하인 표본의 평균 (b) | a-b | 인원 (c) | 비용총액(월) (a-b)*c |
|-----------------|---------------------------|----------|-----------|---------------------|
| 209.2만원 | 전체: 1,281,058원 | 810,942원 | 217 | 175,974,454원 |
| | 기간제: 1,219,313원 | 872,687원 | 170 | 148,356,815원 |
| | 위탁직: 1,504,391원 | 587,609원 | 47 | 27,617,639원 |

- 따라서 실질적인 비용총액은 위탁직노동자 일부 및 기간제노동자의 비용을 합친 총액인 월 175,974,454원으로 추정됨(단, 이 비용 추정에 고용보험료 등의 계산은 빠져 있음).

중위소득 자료의 문제점

- 이상과 같이 중위소득 자료에 의한 생활임금안의 제시에는 다음과 같은 통계상의 한계를 안고 있음.
- 과세자 중위소득 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했다는 점, 표본이 모집단에 근접할 정도로 아주 크다는 점 때문에 매우 정확할 것으로 추정됨. 다만 정기적으로 조사되는 자료가 아니며, 그 시기도 2011년에 한정된 만큼 앞으로도 이 자료를 사용하기에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제약이 따름.
-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 자료는 표본이 8700개로 적은데다 무작위로 추출한 것이어서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실제로 표에서도 보이듯이, 중위소득 P50 수치는 과세자 중위소득 자료의 P50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평균임금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 자료의 2012년 3분기 평균임금(3,061,096원)의 50%에 해당하는 표본의 월평균임금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표 참조).
- 먼저 표본의 고용형태별 전체 현황을 보면 전체 292명이며, 이들의 임금 평균은 1,783,519원임.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171명이며 이들의 임금 평균은 1,225,673원임. 위탁직노동자의 경우 79명이며, 이들의 임금 평균은 2,119,782원임. 무기계약직노동자의 경우 42명이며, 이들의 임금 평균은 3,422,254원으로 이들 중에서 가장 높음.

〈표 4-7〉 도시근로자 분기 평균임금 기준치

| | 도시근로자 평균임금(12년3분기) | | 표본(북구청 노동자) |
|----|---------------------------|------------|--|
| | 평균임금(분기) | 50% | 월임금 평균 |
| 금액 | 3,061,096원 ²⁵⁾ | 1,530,538원 | 전체 1,783,519원(292명) 기간제1,225,673원(171명) 무기계약직3,422,254원(42명) 위탁직2,119,782원(79명) |

- 생활임금 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3,061,096원, 2012년 3/4분기)의 50%로 잡을 경우, 50%인 1,530,538원 이하에 해당하는 표본은 총 177명임. 평균임금50%(=1,530,538원)에 해당하는 임금과 각 표본의 임금간 차이를 모두 합친 비용총액을 월 60,998,105원(연간 731,977,260원)으로 추정함.
- 이 중에서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해당 인원이 155명이며, 평균임금50%(=1,530,538원)와 각 표본(기간제)의 임금간 차이를 모두 합친 비용총액은 54,739,905원임. 다음으로 위탁직노동자의 경우 해당 인원이 22명이며, 평균임금50%(=1,530,538원)과 각 표본(위탁직)의 임금간 차이를 모두 합친 비용총액은 6,258,200원임.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월 1인당 평균 344622원의 임금인상을 의미함. 단, 이 비용 추정에 고용보험료 등의 계산은 빠져 있음.²⁵⁾

〈표 4-8〉생활임금 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잡을 경우의 비용추정

|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 (a) | 평균임금의 50%이하 표본의 임금 평균 (b) | a-b | 인원 (c) | 비용총액(월) (a-b)*c |
|---------------------------|------------------------------|----------|-----------|--------------------|
| 1,530,548원 | 전 체: 1,185,926원 | 344,622원 | 177명 | 60,998,105원 |
| | 기간제: 1,177,387원 | 353,161원 | 155명 | 54,739,905원 |
| | 위탁직: 1,246,084원 | 284,464원 | 22명 | 6,258,200원 |

- 2012년 울산 북구청의 총인건비 예산이 330억 2386만원임을 비추어 볼 때, 〈표 4-8〉을 통해 추정한 연간 비용총액 731,977,260원이 북구청 인건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 수준.

〈표 4-9〉 울산 북구청의 인건비 현황

(단위: 천원)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05 |
|-------|------------|------------|------------|------------|------------|------------|
| 인건비예산 | 25,998,049 | 32,179,460 | 30,154,254 | 31,593,933 | 33,023,862 | 35,641,075 |

울산 북구청, 내부자료

- 타 지역 생활임금안과 비교해 보면, 먼저 부천시의 경우 생활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액보다

25) 2012년 3분기 월평균임금의 50%인 1,530,538원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7323원이며, 226시간 기준으로 6772원임.

26) 부천시는 각종 보험료 9.2% 및 퇴직금(임금총액의 1/12)을 반영

높은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0%를 기준선으로 잡았음. 이를 근거로 생활임금을 추정한 결과 부천시가 이 생활임금의 확보에 드는 비용총액은 59,777,592원임(노동자 1인당 월평균 87,908원의 임금을 의미). 다음으로, 서울 노원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50%를 생활임금의 기준선으로 잡았으며, 이를 근거로 추정한 생활임금의 확보에 드는 비용총액은 221,457,699원임.

〈표 4-10〉 생활임금 추정시 소요되는 비용총액의 비교

| 지역 | 인원 | 생활임금액 기준치 | 총비용 |
|-------|------|------------------------------|--------------|
| 울산 북구 | 217명 | 1)과세자 중위소득 50%(209.2만원) | 175,974,454원 |
| | 177명 | 2)도시근로자 평균임금 50%(1,530,538원) | 60,998,105원 |
| 서울노원구 | - |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50% | 221,457,699원 |
| 부천시 | 680명 |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40% | 59,777,592원 |

자료: 노원구 및 부천시 수치는 〈부천시 생활임금안〉에서 인용.

3. 함의와 시사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첫째, 지자체 등 정부기관이 노동착취의 온상이 되고 있음. 무엇보다 시군구청의 저임금노동자 활용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울산의 시,군,구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기관의 기간제노동자 활용 비율은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추세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음-위탁직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한다면 그 비율은 좀 더 높아질 것임. 울산 북구의 기간제 및 위탁직노동자 수를 근거로 단순 추정해 보면, 울산 시청 및 5개 구(군)청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최소 1천명이상이며,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이들 저임금 노동자의 직간접 고용하여 매년 적어도 수십 억원의 인건비를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둘째, 울산지역의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여타 대도시에 비해 심각함. 울산지역의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에도, 상용직 등 정규직의 임금이 워낙 높아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임금 탓에 울산지역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의 정도와 그에 따른 박탈감 등은 좀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임.

- 셋째, 비교적 소규모의 예산만으로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직간접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 본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 인건비 총액의 2% 정도만 추가 부담한다면, 울산의 시,구청에 직간접 고용된 저임금노동자에게 적정 금액의 생활임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물론 앞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생활임금안이 당장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대상 인원이 많지 않아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그럼에도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 저임금 문제의 해소를 위해 나선다면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현재 울산지역의 지자체 여건상 2개 구청 정도에서 생활임금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 외, 생활임금안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지역주체의 형성이 시급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역운동적 관점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임금 문제를 공론화하는 활동이 중요함. 아직 생활임금운동이 지역에서 활성화된 것이 아니어서 아래로부터의 추진이 당장은 쉽지 않겠으나, 이미 이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부천시나 노원구 그리고 서울시 등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지자체와 지역노사민정 차원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의제로 가시화하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 물론 이 경우도 지자체 단체장의 결정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²⁷⁾

27) 일부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중에서 시중노임단가의 인상 적용을 통해, 기존의 생활임금안(서울 성북구, 노원구, 부천시 등)보다 훨씬 높은 생활임금 수준을 확보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지역운동의 관점에서 실행 주체와 운동역량의 확보 등 지역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생활임금운동의 결합이라는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임.

참고 문헌

- 강남훈, 광노완(2009),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 강병구, 강신욱, 윤명수, 이병희, 2008, 한국경제 빈부격차 심화되는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올아카데미.
- 강신욱, 정은희, 김수현, 황덕순, 박은경,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 장영식 외, 2011, 2010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 보건부문 지출비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인회, 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교상, 노혜진, 2011, 한국의 빈곤, 나눔의 집.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8. 1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종숙, 신선미,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과 여성근로빈곤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완, 김문길 외, 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홍경준, 최승아, 진지현, 박은영, 2009,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황덕순 외, 2007,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동남통계청, 각 년도, 부산/울산/경남 고용동향.
- 마틴 하트-랜즈버그, 2009, 생활임금운동: 개혁주의적 투쟁이 직면한 도전, 대안적 경제전략과 한국경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올아카데미.
- 박주하, 2013, 울산지역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울산본부.
- 브루스 액커만외(너름복지연구모임 옮김), 2010, 분배의 재구성 :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나눔의 집.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11, 한국의 빈곤 확대와 노동시장구조, 한올아카데미.
- 송헌재, 전영준, 2011,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여유잔, 김미곤 외 10명, 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울산광역시 북구, 201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 정진호, 남재량, 김주영, 전영준, 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조선주 외, 2008,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의 노동공급 : 실증분석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성은, 권혜자 외, 2012, 2012년 사회예산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2013 KLI 노동통계.
- 황선자이철, 2008, 생활임금운동과 노동조합,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반빈곤운동 활동가수련회 자료집, 2008

〈부표1〉 울산 북구청 무기직/위탁직/기간제 노동자(표본)의 월평균 임금 분포

(2012년 3분기 기준)

| 번호 | 무기계약직 | 번호 | 위탁직 | 번호 | 위탁직 |
|----|-----------|----|-----------|----|-----------|
| 1 | 2,545,943 | 1 | 767,890 | 41 | 1,838,410 |
| 2 | 2,553,430 | 2 | 903,393 | 42 | 1,850,000 |
| 3 | 2,742,263 | 3 | 983,333 | 43 | 1,889,470 |
| 4 | 2,749,167 | 4 | 1,000,000 | 44 | 1,964,580 |
| 5 | 2,950,377 | 5 | 1,133,333 | 45 | 2,020,000 |
| 6 | 3,038,363 | 6 | 1,232,527 | 46 | 2,022,000 |
| 7 | 3,042,370 | 7 | 1,236,527 | 47 | 2,086,493 |
| 8 | 3,076,340 | 8 | 1,236,527 | 48 | 2,215,890 |
| 9 | 3,118,007 | 9 | 1,236,847 | 49 | 2,268,063 |
| 10 | 3,122,423 | 10 | 1,240,527 | 50 | 2,361,203 |
| 11 | 3,235,017 | 11 | 1,250,847 | 51 | 2,392,667 |
| 12 | 3,237,567 | 12 | 1,252,884 | 52 | 2,392,667 |
| 13 | 3,243,123 | 13 | 1,256,847 | 53 | 2,411,643 |
| 14 | 3,266,087 | 14 | 1,336,267 | 54 | 2,432,000 |
| 15 | 3,269,743 | 15 | 1,348,267 | 55 | 2,447,637 |
| 16 | 3,295,993 | 16 | 1,370,267 | 56 | 2,462,000 |
| 17 | 3,365,505 | 17 | 1,382,160 | 57 | 2,462,000 |
| 18 | 3,399,090 | 18 | 1,432,933 | 58 | 2,518,810 |
| 19 | 3,444,620 | 19 | 1,438,185 | 59 | 2,522,667 |
| 20 | 3,455,443 | 20 | 1,448,793 | 60 | 2,602,000 |
| 21 | 3,472,657 | 21 | 1,448,793 | 61 | 2,636,400 |
| 22 | 3,495,797 | 22 | 1,476,710 | 62 | 2,688,433 |
| 23 | 3,496,137 | 23 | 1,573,480 | 63 | 2,699,333 |
| 24 | 3,498,867 | 24 | 1,573,480 | 64 | 2,699,333 |
| 25 | 3,504,740 | 25 | 1,573,480 | 65 | 2,705,353 |
| 26 | 3,524,227 | 26 | 1,573,480 | 66 | 2,762,503 |
| 27 | 3,527,947 | 27 | 1,573,480 | 67 | 2,904,667 |
| 28 | 3,533,960 | 28 | 1,584,685 | 68 | 3,048,520 |
| 29 | 3,534,583 | 29 | 1,590,267 | 69 | 3,056,000 |
| 30 | 3,541,823 | 30 | 1,618,610 | 70 | 3,176,000 |
| 31 | 3,650,933 | 31 | 1,618,610 | 71 | 3,361,333 |
| 32 | 3,668,647 | 32 | 1,636,933 | 72 | 3,395,333 |
| 33 | 3,742,980 | 33 | 1,650,000 | 73 | 3,436,667 |
| 34 | 3,748,257 | 34 | 1,679,740 | 74 | 3,466,667 |
| 35 | 3,750,660 | 35 | 1,679,740 | 75 | 3,569,333 |
| 36 | 3,831,983 | 36 | 1,710,000 | 76 | 3,586,667 |
| 37 | 3,847,780 | 37 | 1,722,273 | 77 | 4,610,000 |
| 38 | 3,889,997 | 38 | 1,751,570 | 78 | 5,606,000 |
| 39 | 3,948,687 | 39 | 1,751,570 | 79 | 5,858,667 |
| 40 | 3,956,960 | 40 | 1,760,153 | | |
| 41 | 4,178,630 | | | | |
| 42 | 4,237,537 | | | | |

| 번호 | 기간제 | 번호 | 기간제 | 번호 | 기간제 | 번호 | 기간제 |
|----|-----------|----|-----------|-----|-----------|-----|-----------|
| 1 | 311,440 | 44 | 1,149,827 | 87 | 1,315,580 | 130 | 1,407,465 |
| 2 | 395,680 | 45 | 1,153,067 | 88 | 1,321,167 | 131 | 1,409,267 |
| 3 | 429,880 | 46 | 1,157,033 | 89 | 1,322,787 | 132 | 1,409,267 |
| 4 | 435,960 | 47 | 1,163,627 | 90 | 1,322,787 | 133 | 1,409,267 |
| 5 | 480,180 | 48 | 1,176,960 | 91 | 1,323,867 | 134 | 1,409,267 |
| 6 | 521,320 | 49 | 1,178,587 | 92 | 1,323,867 | 135 | 1,409,267 |
| 7 | 538,640 | 50 | 1,179,200 | 93 | 1,326,027 | 136 | 1,409,267 |
| 8 | 610,760 | 51 | 1,183,627 | 94 | 1,326,027 | 137 | 1,420,107 |
| 9 | 638,240 | 52 | 1,183,627 | 95 | 1,326,027 | 138 | 1,422,060 |
| 10 | 648,400 | 53 | 1,188,053 | 96 | 1,326,027 | 139 | 1,422,060 |
| 11 | 657,560 | 54 | 1,193,067 | 97 | 1,326,027 | 140 | 1,423,680 |
| 12 | 657,560 | 55 | 1,193,067 | 98 | 1,326,027 | 141 | 1,440,107 |
| 13 | 657,560 | 56 | 1,193,067 | 99 | 1,326,027 | 142 | 1,440,107 |
| 14 | 658,560 | 57 | 1,193,067 | 100 | 1,326,027 | 143 | 1,440,107 |
| 15 | 658,560 | 58 | 1,193,067 | 101 | 1,326,027 | 144 | 1,444,500 |
| 16 | 658,560 | 59 | 1,193,067 | 102 | 1,326,027 | 145 | 1,446,027 |
| 17 | 661,667 | 60 | 1,195,840 | 103 | 1,326,027 | 146 | 1,456,027 |
| 18 | 666,845 | 61 | 1,203,627 | 104 | 1,328,373 | 147 | 1,460,107 |
| 19 | 667,720 | 62 | 1,203,627 | 105 | 1,329,640 | 148 | 1,466,213 |
| 20 | 667,720 | 63 | 1,203,627 | 106 | 1,329,993 | 149 | 1,502,953 |
| 21 | 667,720 | 64 | 1,220,267 | 107 | 1,329,993 | 150 | 1,506,428 |
| 22 | 667,720 | 65 | 1,220,267 | 108 | 1,337,200 | 151 | 1,517,813 |
| 23 | 667,720 | 66 | 1,229,100 | 109 | 1,340,473 | 152 | 1,521,173 |
| 24 | 738,290 | 67 | 1,232,340 | 110 | 1,342,973 | 153 | 1,525,913 |
| 25 | 829,440 | 68 | 1,233,627 | 111 | 1,344,407 | 154 | 1,527,013 |
| 26 | 838,090 | 69 | 1,242,750 | 112 | 1,346,027 | 155 | 1,527,813 |
| 27 | 864,800 | 70 | 1,253,627 | 113 | 1,356,307 | 156 | 1,536,440 |
| 28 | 867,000 | 71 | 1,253,960 | 114 | 1,358,373 | 157 | 1,569,720 |
| 29 | 920,333 | 72 | 1,261,167 | 115 | 1,362,060 | 158 | 1,608,500 |
| 30 | 933,667 | 73 | 1,271,270 | 116 | 1,366,027 | 159 | 1,608,500 |
| 31 | 967,093 | 74 | 1,282,787 | 117 | 1,366,027 | 160 | 1,617,200 |
| 32 | 1,050,553 | 75 | 1,286,753 | 118 | 1,369,267 | 161 | 1,629,433 |
| 33 | 1,064,240 | 76 | 1,286,753 | 119 | 1,369,993 | 162 | 1,637,200 |
| 34 | 1,081,493 | 77 | 1,288,507 | 120 | 1,376,473 | 163 | 1,650,823 |
| 35 | 1,082,560 | 78 | 1,289,993 | 121 | 1,380,720 | 164 | 1,651,667 |
| 36 | 1,095,413 | 79 | 1,289,993 | 122 | 1,383,680 | 165 | 1,694,333 |
| 37 | 1,099,200 | 80 | 1,297,200 | 123 | 1,386,027 | 166 | 1,694,333 |
| 38 | 1,106,987 | 81 | 1,302,480 | 124 | 1,386,027 | 167 | 1,694,333 |
| 39 | 1,113,793 | 82 | 1,302,770 | 125 | 1,389,640 | 168 | 1,694,333 |
| 40 | 1,117,033 | 83 | 1,304,407 | 126 | 1,398,093 | 169 | 1,744,333 |
| 41 | 1,123,627 | 84 | 1,306,827 | 127 | 1,399,360 | 170 | 1,757,000 |
| 42 | 1,123,627 | 85 | 1,309,993 | 128 | 1,401,787 | 171 | 2,306,860 |
| 43 | 1,125,920 | 86 | 1,309,993 | 129 | 1,401,787 | | |

〈부표2〉 울산지역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간접 노동자 현황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05 |
|-----------------|-----|-------|-------|-------|-------|-------|---------|
| 공무원 | 북구 | 493 | 483 | 500 | 493 | 508 | 500 |
| | 동구 | 467 | 466 | 465 | 466 | 474 | 470 |
| | 남구 | 624 | 624 | 624 | 624 | 649 | 649 |
| | 중구 | 530 | 536 | 535 | 534 | 546 | 542 |
| | 울주군 | 731 | 721 | 735 | 752 | 773 | 781 |
| | 울산시 | 2,283 | 2,343 | 2,342 | 2,384 | 2,423 | 2,442 |
| | 합계 | 5128 | 5173 | 5201 | 5253 | 5373 | 5384 |
| 비정규직 (무기,기간) | 북구 | 255 | 243 | 264 | 279 | 285 | 266 |
| | 동구 | 156 | 172 | 174 | 176 | 209 | 189 |
| | 남구 | 227 | 227 | 228 | 212 | 186 | 180 |
| | 중구 | 0 | 297 | 280 | 252 | 241 | 225 |
| | 울주군 | 482 | 665 | 492 | 445 | 489 | 458 |
| | 울산시 | 223 | 204 | 224 | 224 | 234 | 321 |
| | 합계 | 1343 | 1808 | 1662 | 1588 | 1644 | 1639 |

울산시 내부자료(2013)

〈부표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한 임금소득 분배

(단위: 천원/월)

| | 임금수준 | | 지니계수 |
|------|------|------|-------|
| | 평균값 | 중위값 | |
| 2004 | 1542 | 1300 | 0.335 |
| 2005 | 1593 | 1300 | 0.339 |
| 2006 | 1656 | 1450 | 0.339 |
| 2007 | 1745 | 1500 | 0.346 |
| 2008 | 1846 | 1500 | 0.339 |
| 2009 | 1852 | 1500 | 0.349 |
| 2010 | 1949 | 1600 | 0.352 |
| 2011 | 2032 | 1700 | 0.350 |
| 2012 | 2104 | 1800 | 0.347 |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KLI노동통계(2013)에서 인용

〈부표4〉 도시근로자의 소득분배 지표

| | 지니계수 | | 5분위 분배율 | | 상대적 빈곤율 | |
|------|-------|-------|---------|-------|---------|-------|
| | 시장소득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가처분소득 |
| 1990 | 0.266 | 0.256 | 3.93 | 3.72 | 7.8 | 7.1 |
| 1991 | 0.259 | 0.250 | 3.77 | 3.58 | 7.2 | 6.8 |
| 1992 | 0.254 | 0.245 | 3.71 | 3.52 | 7.4 | 6.5 |
| 1993 | 0.256 | 0.250 | 3.84 | 3.70 | 8.2 | 7.5 |
| 1994 | 0.255 | 0.248 | 3.76 | 3.61 | 7.9 | 7.3 |
| 1995 | 0.259 | 0.251 | 3.85 | 3.68 | 8.3 | 7.7 |
| 1996 | 0.266 | 0.257 | 4.01 | 3.79 | 9.1 | 8.2 |
| 1997 | 0.264 | 0.257 | 3.97 | 3.80 | 8.7 | 8.2 |
| 1998 | 0.293 | 0.285 | 4.78 | 4.55 | 11.4 | 10.9 |
| 1999 | 0.298 | 0.288 | 4.93 | 4.62 | 12.2 | 11.4 |
| 2000 | 0.279 | 0.266 | 4.40 | 4.05 | 10.4 | 9.2 |
| 2001 | 0.290 | 0.277 | 4.66 | 4.29 | 11.3 | 10.1 |
| 2002 | 0.293 | 0.279 | 4.77 | 4.34 | 11.1 | 10.0 |
| 2003 | 0.283 | 0.270 | 4.66 | 4.22 | 12.1 | 10.6 |
| 2004 | 0.293 | 0.277 | 4.94 | 4.41 | 12.8 | 11.4 |
| 2005 | 0.298 | 0.281 | 5.17 | 4.55 | 13.6 | 11.9 |
| 2006 | 0.305 | 0.285 | 5.39 | 4.62 | 13.8 | 11.9 |
| 2007 | 0.316 | 0.292 | 5.79 | 4.84 | 14.9 | 12.6 |
| 2008 | 0.319 | 0.294 | 5.93 | 4.88 | 14.7 | 12.5 |
| 2009 | 0.320 | 0.295 | 6.11 | 4.97 | 15.4 | 13.1 |
| 2010 | 0.315 | 0.289 | 6.02 | 4.82 | 14.9 | 12.5 |
| 2011 | 0.313 | 0.289 | 5.96 | 4.82 | 15.0 | 12.4 |

통계청, KOSIS, KLI노동통계(2013) 인용.

〈부표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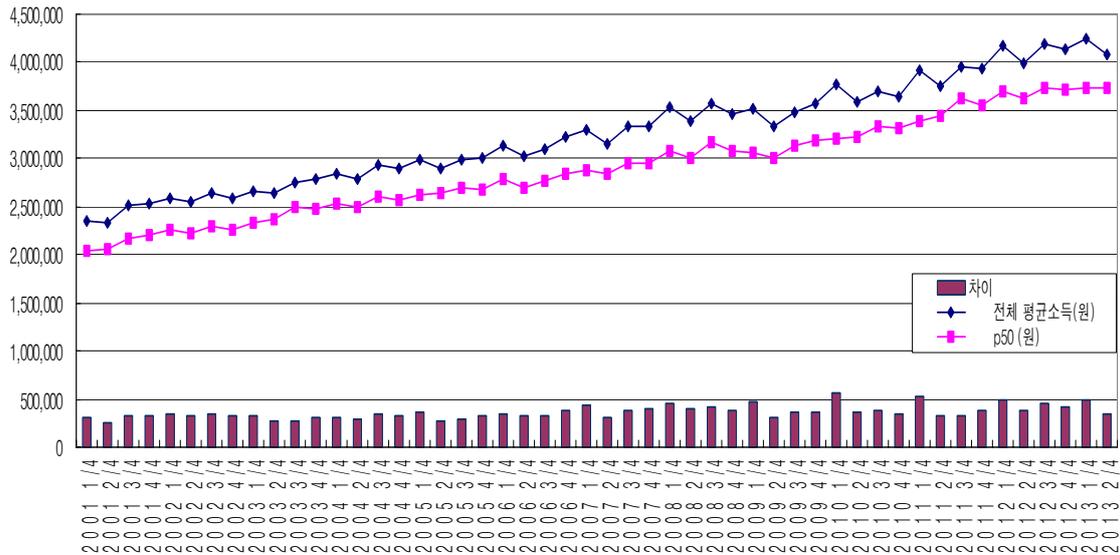
| | 총 수급자 | |
|------|--------------|----------------|
| | 가구 수 | 인원 수 |
| 2000 | 688,354(4.7) | 1,488,874(3.2) |
| 2001 | 698,075(4.7) | 1,419,995(3.0) |
| 2002 | 691,018(4.6) | 1,351,185(2.8) |
| 2003 | 717,861(4.6) | 1,374,405(2.9) |
| 2004 | 753,681(4.8) | 1,424,088(3.0) |
| 2005 | 809,745(5.1) | 1,513,352(3.1) |
| 2006 | 831,692(5.1) | 1,534,950(3.2) |
| 2007 | 852,420(5.2) | 1,549,848(3.2) |
| 2008 | 854,205(5.1) | 1,529,939(3.1) |
| 2009 | 882,925(5.2) | 1,568,533(3.2) |
| 2010 | 878,799(5.1) | 1,549,820(3.2) |
| 2011 | 850,689(4.8) | 1,469,254(3.0) |

()안은 추계인구 및 추계가구대비 비중.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가족백서.

통계청, KOSIS.

〈부표6〉 가계동향조사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



〈부표7〉가계동향조사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추이

(단위: 원)

| 분기 | 평균소득(원) | 중위소득 p50 | 분기 | 평균소득(원) | 중위소득 p50 |
|---------|-----------|-----------|---------|-----------|-----------|
| 20011/4 | 2,345,507 | 2,037,302 | 20072/4 | 3,148,824 | 2,838,236 |
| 20012/4 | 2,325,331 | 2,062,293 | 20073/4 | 3,341,487 | 2,958,811 |
| 20013/4 | 2,506,651 | 2,175,797 | 20074/4 | 3,339,172 | 2,942,787 |
| 20014/4 | 2,527,119 | 2,200,000 | 20081/4 | 3,531,684 | 3,073,236 |
| 20021/4 | 2,591,918 | 2,253,620 | 20082/4 | 3,392,783 | 3,000,000 |
| 20022/4 | 2,551,194 | 2,229,947 | 20083/4 | 3,575,046 | 3,164,709 |
| 20023/4 | 2,638,241 | 2,296,667 | 20084/4 | 3,463,625 | 3,079,175 |
| 20024/4 | 2,586,028 | 2,261,112 | 20091/4 | 3,524,824 | 3,057,318 |
| 20031/4 | 2,663,267 | 2,336,637 | 20092/4 | 3,326,275 | 3,011,385 |
| 20032/4 | 2,637,504 | 2,362,964 | 20093/4 | 3,484,018 | 3,127,714 |
| 20033/4 | 2,760,024 | 2,488,353 | 20094/4 | 3,565,640 | 3,197,334 |
| 20034/4 | 2,786,590 | 2,482,486 | 20101/4 | 3,775,122 | 3,213,060 |
| 20041/4 | 2,846,384 | 2,528,164 | 20102/4 | 3,583,912 | 3,220,530 |
| 20042/4 | 2,789,028 | 2,500,812 | 20103/4 | 3,703,413 | 3,325,058 |
| 20043/4 | 2,941,362 | 2,601,859 | 20104/4 | 3,649,443 | 3,309,448 |
| 20044/4 | 2,896,575 | 2,574,905 | 20111/4 | 3,913,761 | 3,391,588 |
| 20051/4 | 2,989,474 | 2,622,813 | 20112/4 | 3,761,903 | 3,439,070 |
| 20052/4 | 2,903,278 | 2,633,242 | 20113/4 | 3,946,469 | 3,619,050 |
| 20053/4 | 2,993,281 | 2,697,888 | 20114/4 | 3,936,719 | 3,560,000 |
| 20054/4 | 3,006,045 | 2,681,811 | 20121/4 | 4,178,467 | 3,689,885 |
| 20061/4 | 3,129,330 | 2,782,157 | 20122/4 | 3,993,860 | 3,618,776 |
| 20062/4 | 3,031,383 | 2,701,869 | 20123/4 | 4,187,731 | 3,730,979 |
| 20063/4 | 3,099,584 | 2,762,651 | 20124/4 | 4,137,017 | 3,709,358 |
| 20064/4 | 3,219,827 | 2,843,972 | 20131/4 | 4,237,786 | 3,742,059 |
| 20071/4 | 3,302,574 | 2,871,183 | 20132/4 | 4,076,229 | 3,726,835 |

통계청, KOSIS

2부

울산광역시 복구청

직·간접 고용노동자 임금실태 조사



1. 서론

- 1) 문제의식
- 2) 조사 목적
- 3) 조사 방법

2. 직간접고용 노동자 현황

- 1) 직접고용 노동자 현황
- 2)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

3. 직간접 고용노동자 임금실태 조사결과

- 1) 실태조사결과보고의 특징과 한계
- 2) 용어 및 기호 해설
- 3)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시급·월액 산정기준시간
- 4) 임금 현황
- 5) 정부 및 양대 노총 발표 각종 생계비 현황(2012년 기준)
- 6) 공공부문 근로조건 보호 관련 정부 지침에 근거한 기준임금 (2012년 기준)
- 7) 각급 임금 Vs 각 생계비 및 정부 제시 공공부문 노동자 기준임금
- 8)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4.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접고용 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2) 조사 내용
- 3)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5. 조사과정에서 갖게 된 문제의식

[별지1]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접고용 노동자 면접조사 문답서

[별지2] 보건복지부 발표 2012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 서론

1) 문제의식

- 우리나라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곧 바로 이 제도를 운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986. 12. 31.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그 다다음 해부터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 오랜 세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최근까지 제도에 근거하여 결정·시행되는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현행 최저임금은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에의 기여라는 제도 시행의 목적을 여전히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와 같은 현실에서 서울시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기간제 등 저임금노동 문제해결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올해 생활임금정책을 시행, 해당 자치구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8%로 인상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생활임금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장되었다.
- 이에, ‘울산광역시북구기간제노동자지원센터(이하 ‘북구기간제노동자지원센터’라 함) ‘는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례입법 등을 통한 북구청 저임금노동자 임금개선방안 연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 실태조사는 위와 같은 연구사업의 부속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된 문제의식 중 하나는 연구 결과로 제안될 생활임금수준이 북구청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설득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 문제의식은 임금은 관행으로 보아 매년 새롭게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생활임금 결정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복잡성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로 제도(정책) 시행의 편리성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소정급여’라고 정의(명

명)하고, 이를 생활임금을 적용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임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정부(보건복지부, 최저임금위원회)와 양대 노총이 각자의 정책시행을 목적으로 발표하는 각 생계비를 생활임금 산출의 지표로 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기준임금으로 제시한 ‘소정급여’와 각 생계비를 비교하고, 각 노동자 집단의 ‘정액급여’를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지침상의 기준임금 등과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2) 조사 목적

- 이 실태조사의 1차 목적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울산광역시북구기간제노동자지원센터(이하 ‘북구기간제노동자지원센터’라 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북구기간제노동자지원센터’로부터 의뢰 받은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례입법 등을 통한 북구청 저임금노동자 임금개선방안 연구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금실태를 조사 분석하는데 있다.

3) 조사 방법

- 이 실태조사는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취하는 설문조사방식을 피하고, ①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각 노동자들의 월 임금지급 내역서 또는 ② 사용자가 소정근로를 조건으로 그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임금의 내역이 담긴 근로계약서 및 임금(단체)협약서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이 건 실태조사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고 매월 그 금액도 다르게 지급되는 임금을 개별 노동자들의 기억에 의존하는 설문조사방식에 의한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 실태조사에 의한 북구청 직간접 고용노동자 임금실태 현황은 각 노동자 집단 간의 비교 적정성을 감안하고, 소정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적정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소정근로를 조건으로 약정된 임금을 근거로 납세 전(前) 각종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연간특별급여)을 산출해 정액급여(기본급 + 법정외수당)와 소정급여(기본급 + 법정외수당 + 월할연간특별급여), 최저임금(시급, 월급)을 구하고, 그것을 고용형태, 직무, 근속기간(호봉) 등에 따라 분별해 나타내는 형식을 취했다.

2. 직간접 고용노동자 현황

1) 직접고용 노동자 현황

<표 1-1> 직접고용 노동자 현황

(2013. 6. 21. 기준, 단위 : 명)

| 무기계약직 | | | 기간제 | | | | | | |
|---------|--------|-----|-------|-------|-------|--------|--------|--------|-----|
| 현업실무원 | 환경회원 | 합계 | 30일이하 | 60일이하 | 90일이하 | 180일이하 | 240일이하 | 240일초과 | 합계 |
| 58(여33) | 53(여2) | 111 | 17 | 28 | 32 | 87 | 13 | 73 | 250 |

2)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

<표 1-2>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

(2013. 6. 21. 기준, 단위 : 명)

| 무기계약직 | 기간제 | 한시직 | 합계 |
|-------|-----|-----|-----|
| 49 | 59 | 3 | 111 |

3. 직간접 고용노동자 임금실태 조사결과

1) 조사결과보고의 특징과 한계

- 이 실태조사 결과보고는 고용형태별 각 노동자 집단 간의 임금 비교를 통한 상대 평가가 가능토록 하였고,
-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대상 노동자의 최저임금 월액은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발표하는 미혼 단신노동자 생계비와 비교하고, 소정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기준선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발표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임금교섭에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발표하는 노총의 평균 표준생계비와 비교하여 조사대상 노동자의 임금을 각 생계비 등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복구청 직간접 고용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보고는 앞서도 언급한 바처럼 사용자가 소

정근로를 조건으로 그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약정임금의 내역이 담긴 근로계약서 또는 그 지급내역서 및 임금(단체)협약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조사대상 노동자들의 초과근로 시간은 파악되지 못했다.

- 그리하여 이 임금실태 조사결과는 월 정상근로와 초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통계인 ‘월급여액’ 을 보고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해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산출은 그 산출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수를 조사하지 못하여 통계청이 발표(2012. 8. 28)한 「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에 나타난 ‘2012년 울산시 평균가구원수(2.73명)’ 를 근거로 삼았다. 직접고용 기간제근로 참가자 중 일부 직책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무기계약직 현업실무원 일부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지닌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실태 조사결과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요구의 기준임금으로 삼고 있는 ‘정액급여’, 생활임금을 적용하는데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제시한 ‘소정급여’,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까지 보고하고 있으므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초래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게다가 이 건 임금실태조사를 통해 보고된 통계는 앞서 살핀 바처럼 참가자의 기억에 의존한 설문지 응답 조사방식이 아닌 사용자와 노동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특정된 약정 임금을 근거로 산출하고, 그것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서와 비교해 그 산출의 정확성을 검증한 것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용어 및 기호 해설

- ‘소정근로시간’ 이란 약정 임금의 전제조건으로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란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을 말한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휴일의 성격(여기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인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시간수로 인정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되는데, 이것이 최저임금 월환산액 산정기준시간이 되기도 한다.

- ‘기본급’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소정시간 근로했을 때 받게 되는 일체의 수당은 물론이고, 상여금과 같은 연간특별급여를 제외한 그러나 유급주휴일수당을 포함하는 기본급 또는 본봉 등으로 표현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정액급여’란 통상임금(기본급 + 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된다.
- ‘최저임금 산입임금’이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 ‘소정급여’란 소정근로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임금을 말하는데, 기본급, 고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은 시간외근로수당은 제외), 상여금처럼 년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율을 정하여 지급되는 월할 임금을 포함한다.
- ‘—’는 ‘미상’ 또는 ‘해당사항 없음’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시급·월환산액 산정기준시간

(1) 소정근로시간

- 직접고용의 경우
 - 무기계약직 현업실무원(구청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중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임)과 환경미화원,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기간제 ‘공동체일자리 참가자’는 특이하게 나이(65세)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과 달리 정하고 있었는데, 65세 이상인 자는 주 16시간으로, 65세 이하인 경우 주 3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 간접고용 경우
 - 법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각 노동자 집단의 소정근로시간수(단위 : 시간)

| 고용형태 | | 직무특성 | 소정근로시간수 | | |
|------|--------|-------|---------|----|-----|
| | | | 1일 | 1주 | 한 달 |
| 직접고용 | 무기 계약직 | 현업실무원 | 8 | 40 | 209 |
| | | 환경미화원 | 8 | 40 | 209 |

| | | | | | |
|------|-----|---------------|---|----|--------|
| | 기간제 | (일반)기간제 | 8 | 40 | 209 |
| | | 공동체일자리(65세 ↑) | - | 16 | 83.424 |
| | | 공동체일자리(65세 ↓) | - | 30 | 156.42 |
| 간접고용 | 무기직 | 건물청소 등 | 8 | 40 | 209 |
| | 기간제 | - | - | - | - |

(2) 각 임금의 시급과 월액을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산정기준시간

- 최저임금 월액을 환산할 때 기준시간이 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는 토요일에 대한 유급휴일 인정 여부 및 그 인정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조사결과 고용형태별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가 다르게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직접고용의 경우
 - 무기계약직 중 현업실무원과 기간제 노동자는 243시간이고, 환경미화원은 226시간이다.
 - 공동체일자리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65세 이상) 경우는 83.424시간이고, 30시간인(65세 미만) 경우는 156.424시간이다.
- 간접고용의 경우
 - 무기계약직은 전부 209시간이고, 기간제는 파악하지 못했다.

<표 3> 각 임금의 시급과 월액 환산에 사용된 산정기준시간수

| 고용형태 | | 직무특성 (소정근로시간) |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계산식(*결과:소수점 이하 반올림) |
|------|-----------|--------------------------|------------------|---|
| 직접고용 | 무기 계약직 | 현업실무원 (주40시간) | 243시간 | 56시간(1주소정근로시간40+유급주휴일 시간16) × 4,345주 = 243 |
| | | 환경미화원 (주40시간) | 226시간 | 52시간(1주소정근로시간40+유급주휴일 시간12) × 4,345주 = 226 |
| | 기간제 | 기간제 (주40시간) | 243시간 | 현업실무원과 동일 |
| | | 공동체일자리 (65세 ↑, 주16시간) | 83.424시간 | 19.2시간(1주소정근로시간16+유급주 휴일시간3.2) × 4,345주 = 83.424 |
| | | 공동체일자리 (65세 ↓, 주30시간) | 156.42시간 | 36시간(1주소정근로시간30+유급주휴일 시간6) × 4,345주 = 156.42 |
| 간접고용 | 무기 계약직 | (주40시간) | 209시간 | 48시간(1주소정근로시간40+유급주휴일 시간8) × 4,345주 = 209 |
| | 기간제 | - | - | - |

4) 임금 현황

(1) 조사 및 산출방식

- 임금 현황은 소정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연간 특별급여를 파악하고, 그것을 근거로 각 종류의 임금을 산출해,
 - 정액급여(기본급 + 시간외 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 소정급여(기본급 + 수당 + 월할연간특별급여),
 - 최저임금(시급 및 월액)을 구하고,
 - 그것을 다시 고용형태, 직무특성, 근속(호봉) 등으로 분별하여 나타내는 형식을 취했다.

(2) 소정급여

-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소정급여' 를 고용 형태별로 비교하면,

○ 직접고용의 경우

- 무기계약직 현업실무원 '가' 군 1,778,030원, '나' 군 1,916,950원, '다' 군 2,049,850원이고, 환경미화원은 2,616,186원이다.
- 기간제 내근직은 1,167,540원, 외근직은 1,368,015원이고, 공동체일자리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65세 이상) 자는 434,222원이고, 30시간인 경우는 781,579원에 불과하다.

○ 간접고용의 경우

- 건물 청소업체들의 관리자는 평균 1,846,014원이고, 평직원은 1,259,287원이다.
- 재활용품 선별장의 관리자는 평균 1,530,267원이고, 평직원은 1,216,291원이다.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관리자 중 부장은 1,948,333원, 차장은 1,898,333원, 과장은 1,848,333원이고, 평직원은 1,748,333원이다.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지역본부) 노동자들의 임금은 나이에 따른 호봉체제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은 1,888,667원, 상담실장은 2,433,067원이다.
- 사회복지시설(△△복지재단)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관장은 3,024,850원, 선임사회복지사는 2,124,683원, 사회복지사 2급은 1,928,000원, 물리치료사(의료직)는 1,940,517원이고, 기타직으로 분류되는 조리원은 850,000원에 불과하다.

※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의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지침 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치단체 및 시설운영법인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완화 또는 강화되기도 한다. 이 지침상의 임금기준은 시설 특성별(생활시설, 이용시설 등), 근속(호봉)별, 종사상 지위별, 직무 성격별로 구분된 체계로 매우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이용시설 중심으로 몇 가지 직책(무)에 대하여만 살핀다.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시급과 월액

-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시급과 월액)’ 을 고용형태별로 비교하면,
- 직접고용의 경우
 - 무기계약직 현업실무원 ‘가’ 군은 1,182,800원(4,867원), ‘나’ 군은 1,284,100원(5,284원), ‘다’ 군은 1,385,390원(5,701원)이고, 환경미화원은 1,517,090원(6,713원)이다.
 - 기간제 내근직은 1,112,940원(4,580원)이고, 외근직은 1,313,415원(5,405원)이다.
 - 공동체일자리 참가자는 기간제 내근직과 시급은 동일하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탓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65세 이상의 자는 382,082원(4,580원)이고, 30시간인 65세 이하의 자는 716,040원(4,580원)에 불과하다.
- 간접고용의 경우
 - 건물 청소업체들의 관리자는 평균 1,518,367원, 평직원은 1,132,329원이다.
 - 재활용품 선별장의 관리자는 평균 1,333,600원, 평직원은 1,053,176원이다.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체 관리자 중 부장은 1,627,333원, 차장은 1,577,833원, 과장은 1,527,833원, 평직원은 1,427,833원이다.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본부) 사무국장은 1,326,550원, 상담실장은 1,704,800원이다.
 -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2,631,000원, 선임사회복지사는 1,777,000원, 사회복지사 2급은 1,594,000원, 물리치료사(의료직)는 1,607,000원이고, 기타직으로 분류되는 조리원은 850,000원에 불과하다.

<표 4> 고용형태 및 근속기간별 각종 월 임금 비교(소정근로시간 기준)

(단위 : 원)

| 고용형태 및 위탁사무 | 신분 및 수탁자 | | 직책 | 인원 | 근속(호봉) (이상~미만) | 기본급 | 장애급여 | 소정급여 | 최저임금 산입임금 | |
|---------------------------------|---------------------|-----------------------|-----------|-----------|-------------------|-----------|-----------|-----------|-----------|-----------|
| | | | | | | | | | 사급 | 월 임금 |
| 직 접 고 용 | 무기 계약직 | 현 업 실 무 원 | 가 | - | 00~01 | 970,700 | 1,357,400 | 1,778,030 | 4,867 | 1,182,800 |
| | | | | | 29~30 | 1,200,230 | 1,625,260 | 2,245,360 | 5,970 | 1,450,660 |
| | | | 나 | - | 00~01 | 1,057,500 | 1,458,700 | 1,916,950 | 5,284 | 1,284,100 |
| | | 29~30 | | | 1,326,325 | 1,718,415 | 2,423,665 | 6,575 | 1,597,815 | |
| | | 다 | - | 00~01 | 1,144,300 | 1,559,990 | 2,049,850 | 5,701 | 1,385,390 | |
| | | | | 29~30 | 1,452,420 | 1,919,570 | 2,669,980 | 7,181 | 1,744,970 | |
| | 환경미화원 | - | 00~01 | 1,287,090 | 1,731,690 | 2,616,186 | 6,713 | 1,517,090 | | |
| | | | 29~30 | 1,941,060 | 2,385,660 | 3,672,706 | 9,606 | 2,171,060 | | |
| | 기간제 | 기간제 | 내근 | - | 00~01 | 1,112,940 | 1,167,540 | 1,167,540 | 4,580 | 1,112,940 |
| | | | | | 29~30 | - | - | - | - | - |
| | | | 외근 | - | 00~01 | 1,313,416 | 1,368,015 | 1,368,015 | 5,405 | 1,313,415 |
| | | | | | 29~30 | - | - | - | - | - |
| 공 동 용 체 일 차 리 | | 주16 시간 | - | 00~01 | 382,082 | 434,222 | 434,222 | 4,580 | 382,082 | |
| | | | | 29~30 | - | - | - | - | - | |
| | | 주30 시간 | - | 00~01 | 716,404 | 781,579 | 781,579 | 4,580 | 716,040 | |
| | | | | 29~30 | - | - | - | - | - | |
| 간 접 고 용 | 건물청소 | ○○기업 | 관리자 | 1 | - | 1,636,470 | 1,636,470 | 1,636,470 | 7,830 | 1,636,470 |
| | | | 평직원 | 15 | - | 1,162,040 | 1,162,040 | 1,162,040 | 5,560 | 1,162,040 |
| | | △△기업 | 관리자 | 1 | - | 1,268,630 | 1,468,630 | 1,627,209 | 7,027 | 1,468,630 |
| | | | 평직원 | 8 | - | 1,139,050 | 1,139,050 | 1,281,431 | 5,450 | 1,139,050 |
| | | □□기업 | 관리자 | - | - | - | - | - | - | - |
| | | | 평직원 | 1 | - | 957,220 | 957,220 | 1,036,988 | 4,580 | 957,220 |
| | | ◇◇기업 | 관리자 | 1 | - | 1,150,000 | 2,050,000 | 2,274,633 | 6,938 | 1,450,000 |
| | | | 평직원 | 4 | - | 993,750 | 1,051,250 | 1,245,362 | 5,030 | 1,051,250 |
| | | 평 균 | 관리자 | 3 | - | 1,351,700 | 1,718,367 | 1,846,014 | 7,265 | 1,518,367 |
| | | | 평직원 | 32 | - | 1,189,740 | 1,196,935 | 1,259,287 | 5,418 | 1,132,329 |
| | 재활용품 선별장 | ○○기업 | 관리자 | 2 | - | 1,045,000 | 1,463,600 | 1,530,267 | 6,381 | 1,333,600 |
| | | | 평직원 | 11 | - | 989,140 | 1,182,958 | 1,216,291 | 5,039 | 1,053,176 |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 □□기업 | 부 장 | 1 | 00~01 | 1,000,000 | 1,835,833 | 1,948,333 | 7,789 | 1,627,833 |
| | | | | | 29~30 | 1,435,000 | 2,705,833 | 3,184,166 | 11,951 | 2,497,833 |
| | | | 차 장 | 1 | 00~01 | 1,000,000 | 1,785,833 | 1,898,333 | 7,549 | 1,577,833 |
| | | | | | 29~30 | 1,435,000 | 2,655,833 | 3,134,166 | 11,712 | 2,447,833 |
| | | | 과 장 | 2 | 00~01 | 1,000,000 | 1,735,833 | 1,848,333 | 7,310 | 1,527,833 |
| | | | | | 29~30 | 1,435,000 | 2,608,833 | 3,087,166 | 11,487 | 2,400,833 |
| 평 직 원 | 13 | 00~01 | 1,000,000 | 1,635,833 | 1,748,333 | 6,832 | 1,427,833 | | | |
| | | 29~30 | 1,435,000 | 2,505,833 | 2,984,166 | 10,994 | 2,297,833 | | | |
| 비정규직 센터운영 | △△△△ 울산본부 | 사무국장 | 1 | 19호봉(36) | 1,266,500 | 1,446,550 | 1,888,667 | 6,347 | 1,326,550 | |
| | | 상담실장 | 1 | 29호봉(46) | 1,644,800 | 1,864,800 | 2,433,067 | 8,157 | 1,704,800 | |
| 북구종합 복지관등 이용시설 | △ △ ◇◇ | 사회 복지 직 | 관 장 | - | 00~01 | 2,271,000 | 2,825,600 | 3,024,850 | 12,588 | 2,631,000 |
| | | | | | 29~30 | 3,944,000 | 4,578,600 | 4,907,267 | 20,928 | 4,374,000 |
| | | | 부 장 | - | 00~01 | 2,018,000 | 2,318,000 | 2,486,167 | 11,378 | 2,378,000 |
| | | | | | 29~30 | 3,616,000 | 4,250,600 | 4,551,933 | 19,359 | 4,046,000 |
| | | | 과 장 | - | 00~01 | 1,793,000 | 2,157,600 | 2,307,017 | 9,344 | 1,953,000 |
| | | | | | 29~30 | 3,302,000 | 3,736,600 | 4,011,767 | 16,899 | 3,532,000 |

| | | | | | | | | | |
|------|----|------|------------|-------|-----------|-----------|-----------|--------|-----------|
| 운영 등 | 재단 | 의료 직 | 선입사회 복지 사 | 00~01 | 1,717,000 | 1,981,600 | 2,124,683 | 8,052 | 1,777,000 |
| | | | | 29~30 | 3,079,000 | 3,413,600 | 3,670,183 | 15,354 | 3,209,000 |
| | | | 사회복지 사(1급) | 00~01 | 1,554,000 | 1,818,600 | 1,948,100 | 7,722 | 1,614,000 |
| | | | | 29~30 | 2,836,000 | 3,170,600 | 3,406,933 | 13,856 | 2,896,000 |
| | | | 사회복지 사(2급) | 00~01 | 1,554,000 | 1,798,600 | 1,928,100 | 7,627 | 1,594,000 |
| | | | | 29~30 | 2,836,000 | 3,150,600 | 3,386,933 | 13,761 | 2,946,000 |
| | | 기타 | 물 리 치 료 사 | 00~01 | 1,547,000 | 1,811,600 | 1,940,517 | 7,689 | 1,607,000 |
| | | | | 29~30 | 2,894,000 | 3,228,600 | 3,469,767 | 14,469 | 3,024,000 |
| | | | 영 양 사 | 00~01 | 1,618,000 | 1,882,600 | 2,017,433 | 8,029 | 1,678,000 |
| | | | | 29~30 | 2,967,000 | 3,301,600 | 3,548,850 | 14,818 | 3,097,000 |
| | | | 조 리 원 | - | 850,000 | 850,000 | 920,833 | 4,066 | 850,000 |

5) 2012년 정부 및 노총 발표 각 생계비 현황

- 보건복지부 발표 3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218,873원이고,
-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미혼 단신노동자 월 생계비는 전연령층의 경우 1,512,717원, 29세 이하의 경우 1,873,899원, 34세 이하의 경우 1,849,264원이다.
- 민주노총 발표 3인 가구 표준생계비는 4,131,915원이고, 한국노총 발표 3인 가구 표준생계비는 4,137,604원이다.

<표 5> 2012년 정부 각 기관 및 노총 발표 각종 생계비 현황

| | | (단위 : 원) | | | |
|-------|-----------|---|--|--|-----------------|
| |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 최저임금위원회 (단신노동자생계비) |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
| 1인 가구 | 553,354 | 1,512,717 (전연령층) 1,873,899 (29세 이하) 1,849,264 (34세 이하) | 1,872,294 남 28세 여 25세 | 1,828,840 성인 1인 | |
| 2인 가구 | 942,197 | | 3,856,097 가구주 31세 배우자 28세 | 3,172,989 성인 남녀 | |
| 3인 가구 | 1,218,873 | | 4,131,915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여아 4세 | 4,137,604 가구주 5세 배우자 2세 유아 5세 | |
| 4인 | i | | 5,216,478 가구주 40세 | 5,158,981 가구주 40세 | |

| | | | | | |
|--------|-----------|-----------|--|---|---|
| 가 구 | | | | 배우자 37세 여초 8세 남유 6세 | 매우자37세 초 11세 초 9세 |
| | ii | 1,495,550 | | 5,628,778 가구주 45세 배우자 42세 여중 13세 남초 11세 | 5,298,211 가구주 43세 배우자 40세 중 14세 초 12세 |
| | iii | | | 5,907,183 가구주 49세 배우자 46세 여고 17세 남중 15세 | 5,709,093 가구주 46세 배우자 43세 고 17세 중 15세 |
| 5인 가구 | 1,772,227 | | | | |
| 6인 가구 | 2,048,904 | | | | |

6) 공공부문 근로조건 보호 관련 정부 지침에 근거한 임금기준(2012년)

- 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은 자치단체 직접고용 무기계약 또는 유기계약 노동자의 임금은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경비 외에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통계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집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가 2012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과 환경부 고시 ‘제2011-14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은 정부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청소·경바시설물관리 등 자치단체의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기준으로 사용토록 했다.
- 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북구청 직간접 고용노동자 중 시설물 관리나 청소와 같은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1항 제1호) 기준으로 다음과 같고,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청소 등 단순노무 종사자 : 일급 57,859원, 월환산액 1,511,828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종사자 : 일급 75608원, 월환산액 1,975,259원

<표 6> 공공부문 근로조건 관련 정부 고시 등에 근거한 임금기준(2012년)

| 고시 등의 명칭 | 시달(행)기관 | 적용대상 | 기준임금 |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자 | 지정통계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 공표 노임단가와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종사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표 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기본급* 기준) * 일급 : 57,859원 * 월환산액 : 1,511,828원 |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 환경부 (고시 제2011-147)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종사자 | 건설협회 공표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기본급* 기준) * 일급 : 75,608원 * 월환산액 : 1,975,259원 |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시설종류 및 직무와 직위에 따라 세분화되어 그 내용이 상당하여 생략하고 [별지]로 제시 |
| 사무총국 호봉표 | 민주노총 | 사무총국 간부 | * 19호봉 : 1,336,500원(기본급) * 29호봉 : 1,714,800원(기본급) |

※ 기준임금 칸에 나타나는 ‘기본급*’에는 고정수당이 포함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1항제1호 참조)

7) 각급 임금 Vs 각 생계비 및 정부의 공공부문 기준임금

(1) 소정급여 Vs 보건복지부 발표 3인 가구 최저생계비

- 고용형태별로 ‘근무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의 월 소정급여’ 를 보건복지부 발표 3인가구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면,
- 직접고용의 경우
 - 무기계약직 현실업무원 ‘가’ 군은 97%, ‘나’ 군은 105%, ‘다’ 군은 168%, 환경미화원은 21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 기간제 중 내근직은 96%, 외근직은 112%,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16시간 내지 30시간인 공동체일자리 참가 노동자는 각 36%,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간접고용의 경우
 - 건물청소업에 종사하는 관리자는 151%, 평직원은 103%로,
 - 재활용품 선별장에 종사하는 관리자는 126%, 평직원은 100%로,
 - 음식물류 쓰레기 청소업에 종사하는 관리자 중 부장은 160%, 차장은 156%, 과장은 152%, 평직원은 143%로,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종사하는 사무국장은 155%, 실장은 2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248%, 부장은 204%, 선임사회복지사는 174%원, 사회복지사 2급은 158%, 물리치료사(의료직)는 159%원이고, 기타직으로 분류되는 조리원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소정급여 Vs 보건복지부 발표 3인 가구 최저생계비

(단위 : 원, %)

| 고용형태 및 위탁 사무 | | 신분 및 수탁자 | | 직책 | 근속(호봉) (이상~미만) | 소정급여 (가) | 최저생계비 (나) | (가)/(나) | | | |
|-----------------------------|----------------------------|-----------------------|------------------|----------|-------------------|------------------------|------------------------|------------------------|----------------|-----------|-----|
| 직 접 고 용 | 무기 계약직 | 현업 심부원 | 가 | - | 00~01 29~30 | 1,778,030 2,245,360 | 1,218,873 | 97 | | | |
| | | | 나 | - | 00~01 29~30 | 1,916,950 2,423,665 | 1,218,873 | 105 | | | |
| | | | 다 | - | 00~01 29~30 | 2,049,850 2,669,980 | 1,218,873 | 168 | | | |
| | | 환경미화원 | | - | - | 00~01 29~30 | 2,616,186 3,672,706 | 1,218,873 | 215 | | |
| | | 기간제 | 기간제 | 내근 | - | - | 00~01 29~30 | 1,167,540 - | 1,218,873 | 96 | |
| | | | | | 외근 | - | - | 00~01 29~30 | 1,368,015 - | 1,218,873 | 112 |
| | 공용 체 일 차 리 | | 주6 시간 | - | - | 00~01 29~30 | 434,222 - | 1,218,873 | 36 | | |
| | | | | 주8 시간 | - | - | 00~01 29~30 | 781,579 - | 1,218,873 | 64 | |
| | | | 간 접 고 용 | 건물청소 | 수탁업체 모 | 관리자 | - | - | 1,846,014 | 1,218,873 | 151 |
| | | | | | | 평직원 | - | - | 1,259,287 | 1,218,873 | 103 |
| | 재활용품 선별직업 | ○○기업 | | 관리자 | - | - | 1,530,267 | 1,218,873 | 126 | | |
| | | | | 평직원 | - | - | 1,216,291 | 1,218,873 | 100 | |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 □□기업 | 부 장 | | - | - | 00~01 29~30 | 1,948,333 3,184,166 | 1,218,873 | 160 | | |
| | | 차 장 | | - | - | 00~01 29~30 | 1,898,333 3,134,166 | 1,218,873 | 156 | | |
| | | 과 장 | | - | - | 00~01 29~30 | 1,848,333 3,087,166 | 1,218,873 | 152 | | |
| | | 평직원 | | - | - | 00~01 29~30 | 1,748,333 2,984,166 | 1,218,873 | 143 | | |
| 비정규직 센터운영 | △△△△ 울산본부 | 사무국장 | | - | - | 19호봉(36) | 1,888,667 | 1,218,873 | 155 | | |
| | | 상담실장 | | - | - | 29호봉(46) | 2,433,067 | 1,218,873 | 200 | | |
| 복구종합 복지관등 이용시설 운영등 | △ △ ◇ ◇ 재 단 | 사 회 복 지 직 | | 관 장 | - | - | 00~01 29~30 | 3,024,850 4,907,267 | 1,218,873 | 248 | |
| | | | | 부 장 | - | - | 00~01 29~30 | 2,486,167 4,551,933 | 1,218,873 | 204 | |
| | | | 과 장 | - | - | 00~01 29~30 | 2,307,017 4,011,767 | 1,218,873 | 189 | | |
| | | | 선임사회 복지사 | - | - | 00~01 29~30 | 2,124,683 3,670,183 | 1,218,873 | 174 | | |
| | | | 사회복지사 (1급) | - | - | 00~01 29~30 | 1,948,100 3,406,933 | 1,218,873 | 160 | | |
| | | | 사회복지사 (2급) | - | - | 00~01 29~30 | 1,928,100 3,386,933 | 1,218,873 | 158 | | |
| | | | 의 물 리 | - | - | 00~01 | 1,940,517 | 1,218,873 | 159 | | |

| | | | | | | | |
|--|--|-------------|-------|-------|-----------|-----------|-----|
| | | 목 기 타 | 치 료 사 | 29~30 | 3,469,767 | | |
| | | | 영 양 사 | 00~01 | 2,017,433 | 1,218,873 | 166 |
| | | | | 29~30 | 3,548,850 | | |
| | | | 조 리 원 | - | 920,833 | 1,218,873 | 76 |

(2) 소정급여 Vs 노총 발표 1:3인 가구 평균 표준생계비

- 위와 같은 조건의 ‘월 소정급여’ 를 양대 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발표 1:3인 가구 평균 표준생계비와 비교하면,
 - 직접고용의 경우(괄호는 소정급여 : 1인 생계비 %임)
 - 무기계약직 현실업무원 ‘가’ 군은 43(96)%, ‘나’ 군은 46(104)%, ‘다’ 군은 50(111)%, 환경미화원은 63(141)%로 나타나고,
 - 기간제 내근직은 28(63)%, 외근직은 33(74)%,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16시간 내지 30시간인 공동체일자리 참가자는 각 11(25)%, 19(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간접고용의 경우(괄호는 소정급여 대비 1인 생계비 비율임)
 - 건물청소업에 종사하는 관리자는 45(100)%이고, 평직원은 30(68)%로 나타난다.
 - 재활용품 선별장에 종사하는 관리자는 37(83)%이고, 평직원은 29(66)%로 나타난다.
 - 음식물류 쓰레기 청소업에 종사하는 관리자 중 부장은 47(105)%이고 차장은 46(103)%, 과장은 45(100)%이고 평직원은 42(94)%로 나타난다.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종사하는 사무국장은 46(102)%이고, 실장은 259(131)%로 나타난다.
 -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73(163)%, 부장은 60(134)%, 선임사회복지사는 51(115)%원, 사회복지사 2급은 47(104)%, 물리치료사(의료직)는 47(105)%원이고, 기타직으로 분류되는 조리원은 22(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소정급여 Vs 양대 노총 발표 1·3인 가구 표준생계비(평균)

(단위 : 원, %)

| 고용형태 및 위탁사무 | 신분 및 수탁자 | | 직책 | 근속(호봉) (이상~미 만) | 소정급여 (가) | 표준생계비(나) | | (가)/(나) | |
|-----------------------------|------------------------|---------------------------------|-------------|-----------------------|-------------|-----------|-----------|---------|----|
| | | | | | | 1인가구 | 3인가구 | 1인 | 3인 |
| 직 접 고 용 | 무기 계약직 | 현업실무원 | 가 | 00~01 | 1,778,030 | 1,850,567 | 4,134,759 | 96 | 43 |
| | | | | 29~30 | 2,245,360 | | | | |
| | | | 나 | 00~01 | 1,916,950 | 1,850,567 | 4,134,759 | 104 | 46 |
| | | 29~30 | | 2,423,665 | | | | | |
| | | 다 | 00~01 | 2,049,850 | 1,850,567 | 4,134,759 | 111 | 50 | |
| | | | 29~30 | 2,669,980 | | | | | |
| | 환경미화원 | | - | 00~01 | 2,616,186 | 1,850,567 | 4,134,759 | 141 | 63 |
| | | | | 29~30 | 3,672,706 | | | | |
| | 기간제 | 기간제 | 내근 | 00~01 | 1,167,540 | 1,850,567 | 4,134,759 | 63 | 28 |
| | | | | 29~30 | - | | | | |
| | | | 외근 | 00~01 | 1,368,015 | 1,850,567 | 4,134,759 | 74 | 33 |
| | | | | 29~30 | - | | | | |
| | | 공통 노동 계약 자 리 | 주16 시간 | 00~01 | 434,222 | 1,850,567 | 4,134,759 | 25 | 11 |
| | | | | 29~30 | - | | | | |
| 주30 시간 | | | 00~01 | 781,579 | 1,850,567 | 4,134,759 | 42 | 19 | |
| | | | 29~30 | - | | | | | |
| 간 접 고 용 | 건물청소 | 수탁업체 모 듬 | 관리자 | - | 1,846,014 | 1,850,567 | 4,134,759 | 100 | 45 |
| | | | 평직원 | - | 1,259,287 | 1,850,567 | 4,134,759 | 68 | 30 |
| | 재활용품 선별직업 | ○○기업 | 관리자 | - | 1,530,267 | 1,850,567 | 4,134,759 | 83 | 37 |
| | | | 평직원 | - | 1,216,291 | 1,850,567 | 4,134,759 | 66 | 29 |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 □□기업 | 부 장 | 00~01 | 1,948,333 | 1,850,567 | 4,134,759 | 105 | 47 |
| | | | | 29~30 | 3,184,166 | | | | |
| | | | 차 장 | 00~01 | 1,898,333 | 1,850,567 | 4,134,759 | 103 | 46 |
| | | | | 29~30 | 3,134,166 | | | | |
| | | | 과 장 | 00~01 | 1,848,333 | 1,850,567 | 4,134,759 | 100 | 45 |
| | | | | 29~30 | 3,087,166 | | | | |
| | 평직원 | 00~01 | 1,748,333 | 1,850,567 | 4,134,759 | 94 | 42 | | |
| | 29~30 | 2,984,166 | | | | | | | |
| | 비정규직 센터운영 | △△△△ 울산본부 | 사무국장 | 19호봉(36) | 1,888,667 | 1,850,567 | 4,134,759 | 102 | 46 |
| | | | 상담실장 | 29호봉(46) | 2,433,067 | 1,850,567 | 4,134,759 | 131 | 59 |
| 북구종합 복지관등 이용시설 운영등 | △ △ ◇ ◇ 재단 | 사 회 복 지 직 제 단 | 관 장 | 00~01 | 3,024,850 | 1,850,567 | 4,134,759 | 163 | 73 |
| | | | | 29~30 | 4,907,267 | | | | |
| | | | 부 장 | 00~01 | 2,486,167 | 1,850,567 | 4,134,759 | 134 | 60 |
| | | | | 29~30 | 4,551,933 | | | | |
| | | | 과 장 | 00~01 | 2,307,017 | 1,850,567 | 4,134,759 | 125 | 56 |
| | | | | 29~30 | 4,011,767 | | | | |
| | | | 선임사회 복지사 | 00~01 | 2,124,683 | 1,850,567 | 4,134,759 | 115 | 51 |
| | | | | 29~30 | 3,670,183 | | | | |
| 사회복지 사 (1급) | 00~01 | 1,948,100 | 1,850,567 | 4,134,759 | 105 | 47 | | | |
| | 29~30 | 3,406,933 | | | | | | | |
| 사회복지 사 (2급) | 00~01 | 1,928,100 | 1,850,567 | 4,134,759 | 104 | 47 | | | |
| | 29~30 | 3,386,933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직 | 물리치료사 | 00~01 | 1,940,517 | 1,850,567 | 4,134,759 | 105 | 47 |
| | | | | | 29~30 | 3,469,767 | | | | |
| | | | 기타 | 영양사 | 00~01 | 2,017,433 | 1,850,567 | 4,134,759 | 109 | 45 |
| | | | | | 29~30 | 3,548,850 | | | | |
| | | | | 조리원 | - | 920,833 | 1,850,567 | 4,134,759 | 50 | 22 |

(3) 최저임금 산입 월액 Vs 최저임금위원회 미혼 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

- 고용형태별로 ‘근무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월 임금을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전연령층 미혼 단신노동자생계비와 비교하면,
 - 직접고용의 경우
 - 무기계약직 현실업무원 ‘가’ 군은 78%, ‘나’ 군은 85%, ‘다’ 군은 92%, 환경미화원은 100%로 나타나고,
 - 기간제 내근직은 74%, 외근직은 87%,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16시간 내지 30시간인 공동체일자리 참가자는 각각 25%,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간접고용의 경우
 - 건물청소업에 종사하는 관리자는 100%, 평직원은 75%로,
 - 재활용품 선별장에 종사하는 관리자는 88%, 평직원은 70%로,
 - 음식물류 쓰레기 청소업에 종사하는 관리자 중 부장은 108%, 차장은 104%, 과장은 101%, 평직원은 94%로,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종사하는 사무국장은 88%, 실장은 113%로 나타나고,
 -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174%, 부장은 157%, 선임사회복지사는 117%원, 사회복지사 2급은 105%, 물리치료사(의료직)는 106%원이고, 기타직으로 분류되는 조리원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8> 최저임금 산입 월액 Vs 최저임금위 발표 미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단위 : 원, %)

| 고용형태 및 위탁 사무 | 신분 및 수탁자 | 직책 | 근속(호봉) (이상~미만) | 최저임금산입임금 (가) | | 생계비(나) | (가)/(나) | |
|--------------|----------|--------|-------------------|--------------|-------|-----------|-----------|----|
| | | | | 사급 | 월액 | | | |
| 직접고용 | 무기계약직 | 현업실업무원 | 가 | 00~01 | 4,867 | 1,182,800 | 1,512,717 | 78 |
| | | | | 29~30 | 5,970 | 1,450,660 | | |
| | | | 나 | 00~01 | 5,284 | 1,284,100 | 1,512,717 | 85 |
| | | | | 29~30 | 6,575 | 1,597,815 | | |
| | | | 다 | 00~01 | 5,701 | 1,385,390 | 1,512,717 | 92 |
| | | | | 29~30 | 7,181 | 1,744,970 | | |

| | | | | | | | | |
|-----------------------------|------------------------|-------------------|-----------|-----------|-----------|-----------|-----------|-----|
| 간 접 고 용 | 기간제 | 환경미화원 | | 00~01 | 6,713 | 1,517,090 | 1,512,717 | 100 |
| | | | | 29~30 | 9,606 | 2,171,060 | | |
| | | 기간제 | 내근 | 00~01 | 4,580 | 1,112,940 | 1,512,717 | 74 |
| | | | | 29~30 | - | - | | |
| | | 기간제 | 외근 | 00~01 | 5,405 | 1,313,415 | 1,512,717 | 87 |
| | | | | 29~30 | - | - | | |
| | 기간제 | 공통 체일차리 | 주16 시간 | 00~01 | 4,580 | 382,082 | 1,512,717 | 25 |
| | | | | 29~30 | - | - | | |
| | 기간제 | 공통 체일차리 | 주30 시간 | 00~01 | 4,580 | 716,040 | 1,512,717 | 47 |
| | | | | 29~30 | - | - | | |
| | 건물청소 | 수탁업체 모듬 | 관리자 | - | 7,265 | 1,518,367 | 1,512,717 | 100 |
| | | | 평직원 | - | 5,418 | 1,132,329 | 1,512,717 | 75 |
| 재활용품 선별직업 | ○○기업 | 관리자 | - | 6,381 | 1,333,600 | 1,512,717 | 88 | |
| | | 평직원 | - | 5,039 | 1,053,176 | 1,512,717 | 70 |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 □□기업 | 부 장 | 00~01 | 7,789 | 1,627,833 | 1,512,717 | 108 | |
| | | | 29~30 | 11,951 | 2,497,833 | | | |
| | | 차 장 | 00~01 | 7,549 | 1,577,833 | 1,512,717 | 104 | |
| | | | 29~30 | 11,712 | 2,447,833 | | | |
| | | 과 장 | 00~01 | 7,310 | 1,527,833 | 1,512,717 | 101 | |
| | | | 29~30 | 11,487 | 2,400,833 | | | |
| 평직원 | 00~01 | 6,832 | 1,427,833 | 1,512,717 | 94 | | | |
| | 29~30 | 10,994 | 2,297,833 | | | | | |
| 비정규직 센터운영 | △△△△ 울산본부 | 사무국장 | 19호봉(36) | 6,347 | 1,326,550 | 1,512,717 | 88 | |
| | | 상담실장 | 29호봉(46) | 8,157 | 1,704,800 | 1,512,717 | 113 | |
| 복구종합 복지관등 이용시설 운영등 | △ △ ◇ ◇ 재단 | 사회 복지 직 | 관 장 | 00~01 | 12,588 | 2,631,000 | 1,512,717 | 174 |
| | | | | 29~30 | 20,928 | 4,374,000 | | |
| | | | 부 장 | 00~01 | 11,378 | 2,378,000 | 1,512,717 | 157 |
| | | | | 29~30 | 19,359 | 4,046,000 | | |
| | | | 과 장 | 00~01 | 9,344 | 1,953,000 | 1,512,717 | 129 |
| | | | | 29~30 | 16,899 | 3,532,000 | | |
| | | 선임사회 복 지 사 | 00~01 | 8,052 | 1,777,000 | 1,512,717 | 117 | |
| | | | 29~30 | 15,354 | 3,209,000 | | | |
| | | 사회복지 사 (1급) | 00~01 | 7,722 | 1,614,000 | 1,512,717 | 107 | |
| | | | 29~30 | 13,856 | 2,896,000 | | | |
| | | 사회복지 사 (2급) | 00~01 | 7,627 | 1,594,000 | 1,512,717 | 105 | |
| | | | 29~30 | 13,761 | 2,946,000 | | | |
| 의료 직 | 물 리 치 료 사 | 00~01 | 7,689 | 1,607,000 | 1,512,717 | 106 | | |
| | | 29~30 | 14,469 | 3,024,000 | | | | |
| 가타 | 영 양 사 | 00~01 | 8,029 | 1,678,000 | 1,512,717 | 111 | | |
| | | 29~30 | 14,818 | 3,097,000 | | | | |
| | | 조 리 원 | - | 4,066 | 850,000 | 1,512,717 | 56 | |

(4) 정액급여 Vs 정부의 공공부문 기준임금 비율

- 고용형태별로 근무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의 정액급여 를 정부의 지정통계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와 비교하면,

○ 직접고용의 경우

- 무기계약직 현업실무원 '가' 군은 90%, '나' 군은 96%, '다' 군은 103%, 환경미화원은 88%로 나타나고,
- 기간제 내근직은 77%, 외근직은 90%,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16시간 내지 30시간인 공동체일자리 참가자는 각각 29%,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간접고용의 경우

- 건물청소업에 종사하는 관리자는 114%, 평직원은 79%로,
- 재활용품 선별장에 종사하는 관리자는 74%, 평직원은 60%로,
- 음식물류 쓰레기 청소업에 종사하는 관리자 중 부장은 93%, 차장은 90%, 과장은 88%, 평직원은 83%로,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종사하는 사무국장은 97%, 실장은 123%로 나타나고,
- ○○종합사회복지관 무기계약직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기타직으로 분류되는 조리원의 임금수준을 미루어 짐작하면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9> 기본급 Vs 정부 지정통계기관 시중노임단가

(단위 : 원, %)

| 고용형태 및 위탁사무 | 신분 및 수탁자 | 직책 | 인원 | 근속(호봉) (이상~미만) | 정액급여 (가) | 노임단가 (나) | (가)/(나) | | | |
|----------------------------|-------------|-----------------------|-----|-------------------|----------------|------------------------|------------------------|----------------|-----------|-----|
| 직 접 고 용 | 무기 계약직 | 현 업 실 무 원 | 가 | - | 00~01 29~30 | 1,357,400 1,625,260 | 1,511,828 | 90 | | |
| | | | 나 | - | 00~01 29~30 | 1,458,700 1,718,415 | 1,511,828 | 96 | | |
| | | | 다 | - | 00~01 29~30 | 1,559,990 1,919,570 | 1,511,828 | 103 | | |
| | | 환경미화원 | | - | | 00~01 29~30 | 1,731,690 2,385,660 | 1,975,259 | 88 | |
| | | 간 접 고 용 | 기간제 | 기 간 제 | 내근 | - | 00~01 29~30 | 1,167,540 - | 1,511,828 | 77 |
| | | | | | 외근 | - | 00~01 29~30 | 1,368,015 - | 1,511,828 | 90 |
| 공 동 체 일 차 리 | 주6 시간 | | | - | 00~01 29~30 | 434,222 - | 1,511,828 | 29 | | |
| | 주30 시간 | | | - | 00~01 29~30 | 781,579 - | 1,511,828 | 52 | | |
| 간 접 고 용 | 건물청소 | | | 수탁업체 모 듬 | 관리자 | 3 | - | 1,718,367 | 1,511,828 | 114 |
| | | | | 평직원 | 32 | - | 1,196,935 | 1,511,828 | 79 | |
| | 재활용품 선별장 | ○○기업 | 관리자 | 2 | - | 1,463,600 | 1,975,259 | 74 | | |
| | | | 평직원 | 11 | - | 1,182,958 | 1,975,259 | 60 | | |

| | | | | | | | | |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 □□기업 | 부 장 | 1 | 00~01 29~30 | 1,835,833 2,705,833 | 1,975,259 | 93 | |
| | | 차 장 | 1 | 00~01 29~30 | 1,785,833 2,655,833 | 1,975,259 | 90 | |
| | | 과 장 | 2 | 00~01 29~30 | 1,735,833 2,608,833 | 1,975,259 | 88 | |
| | | 평직원 | 13 | 00~01 29~30 | 1,635,833 2,505,833 | 1,975,259 | 83 | |
| 비정규직 센터운영 | △△△△ 울산본부 | 사무국장 | 1 | 19호봉(36) | 1,446,550 | 1,516,500 | 95 | |
| | | 상담실장 | 1 | 29호봉(46) | 1,864,800 | 1,934,800 | 96 | |
| 북구종합 복지관등 이용시설 운영 등 | △ △ ◇ ◇ 재 단 | 사 회 복 지 직 | 관 장 | 00~01 29~30 | 2,825,600 4,578,600 | | | |
| | | | 부 장 | 00~01 29~30 | 2,318,000 4,250,600 | | | |
| | | | 과 장 | 00~01 29~30 | 2,157,600 3,736,600 | | | |
| | | | 선임사회 복지사 | 00~01 29~30 | 1,981,600 3,413,600 | | | |
| | | | 사회복지사 (1급) | 00~01 29~30 | 1,818,600 3,170,600 | | | |
| | | | 사회복지사 (2급) | 00~01 29~30 | 1,798,600 3,150,600 | | | |
| | | 의 료 직 | 물 리 치 료 사 | 00~01 29~30 | 1,811,600 3,228,600 | | | |
| | | | 기 타 | 영 양 사 | 00~01 29~30 | 1,882,600 3,301,600 | | |
| | | | | 조 리 원 | - | 850,000 | | |

8)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1) 임금 체계는 무기계약직은 근속(호봉)별 월급, 기간제는 단순 시급

○ 직접고용의 경우

-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근속(호봉)별 월급 체계로,
- 반면, 기간제의 임금은 연중 최장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근무기한도 관리되지 않아서인지 단순 시급 체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간접고용의 경우

- 사업장마다 서로 다른 임금 체계로 되어 있는데,
- 건물청소업과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단순 월급 또는 시급체제로 되어 있고,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근속에 따

른 호봉체계를 되어 있고,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이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민주노총울산본부의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데, 연령에 따른 호봉이라는 특징이 있다.

(2) 직접고용은 직무특성별로, 간접고용은 직책에 따라 상당한 임금 격차 존재

○ 직접고용의 경우

- 고용형태 간 임금 격차가 상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일 고용형태 내에서도 직무특성별로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근무기간 1년 미만의 현업실무원과 환경미화원 간의 월 소정급여를 비교하면,
- 현업실무원 '가' 군은 환경미화원보다 838,156원이, '나' 군은 699,236원이, '다' 군은 566,366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간제 내근직(2012년 시급 4,580원)의 월 소정급여를 외근직(2012년 시급 5,405원)과 비교하면 200,475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소정근로시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기간제 내근직과 소정근로시간이 주 16시간(65세 이상)인 공동체일자리의 월 소정급여를 비교하면 무려 733,318원의 차이가 나고(외근직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짐), 주 30시간(65세 미만)인 공동체일자리와 비교해도 385,961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간접고용의 경우

- 위탁사무 간, 직책 간 상당한 수준의 임금 격차가 있는데,
- 건물청소의 경우 관리자와 평직원 간 월 소정급여는 586,727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반면, 임금기준이 나이에 따른 호봉체계로 되어 있는 민주노총울산본부의 경우는 1호봉 간 임금격차가 최소 12,500원에서 최대 38,000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춘산환경의 임금기준은 근속별 호봉체계로 되어 있는데 1호봉 간의 임금격차는 30,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회복지관 등을 위탁 받아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근속별 호봉체계 등으로 된 임금가이드라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지침)보다 강화된 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호봉 간 임금격차는 크지 않으나 직책 등에 따른 임금 격차가 ○○기업(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동일 고용형태 내에서도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 유급휴일(시간)수 달라

○ 직접고용의 경우

- 무기계약직 현업실무원의 주당 유급휴일은 2일(16시간)이고, 환경미화원은 1.5(12시간)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현업실무원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43시간이 되고, 환경미화원은 226시간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간제의 주당 유급휴일은 2일(16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6시간(65세 이상)인 공동체일자리 주당 유급휴일은 0.4일(3.2시간)로, 주 30시간(65세 미만)인 경우는 0.75일(6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간접고용의 경우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수탁사업장이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루어 주당 유급휴일은 1일(8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실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 무기계약직 현업실무원과 환경미화원 모두 법정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당 유급휴일수(시간)을 달리하고 있어 그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고,
- 기간제의 경우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주당 유급휴일을 2일(16시간 유급)을 주고 있다.
-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6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체일자리 참가자에게는 주당 유급휴일을 0.4일(3.2시간)이 아니라 0.8일(6.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인 경우는 주당 유급휴일을 0.75일(6시간 유급)이 아니라 1.5일(12시간 유급)을 주어야 소정근로시간 대비 유급휴일(시간)이 동일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동체일자리 참가자의 유급휴일(시간)을 늘리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4)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월 소정급여는 보건복지부 발표 3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높아

○ 위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소정급여가 보건복지부 발표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노동자 집단은,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현업실무원 '가' 군(97%)과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65세 이상)인 공동체일자리(36%)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65세 미만)인 공동체일자리(64%) 뿐이고,
- 그 외 노동자 집단의 월 소정급여는 보건복지부 발표 3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어떤 집단의 노동자들 월 소정급여는 노총 발표 3인 가구 표준생계비에는 한참 못 미쳐

- 위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고용형태의 노동자든 월 소정급여는
 - 양대 노총 발표 3인 가구 (평균)표준생계비에 한 참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직접고용 기간제 내근직과 외근직, 공동체일자리, 간접고용 중 건물청소업무 및 재활용품 선별업무에 종사하는 평직원의 월 소정급여는 1인 가구 (평균)표준생계비에도 한 참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근무기간 1년 미만 자를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이 산입하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전연령층 단신노동자 생계비에 미달하는 노동자 다수 존재

- 위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기간 1년 미만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이 산입하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전연령층 단신노동자 생계비를 초과하는 노동자는
 -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과
 - 간접고용 중 건물청소업무 및 음식물류 쓰레기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담실장, 사회복지시설의 원장, 관장, 사회복지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현업실무원 ‘다’ 군만 근무기간 1년 미만 자를 기준으로 할 때 정부 지정통계기관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초과

- 위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기간 1년 미만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의 지정통계기관이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즉 정부가 제시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기준임금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현업실무원 뿐이다.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종사하는 하는 사무국장과 상담실장의 임금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노임이 아니라 이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민주노총이 채용 상근간부들에게 적용하는 해당 호봉과 비교해보니 전년도 호봉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직접고용 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 대상자

- 조사는 <표 10>와 같은데, 주로 복구청에 추천을 요청하여 선정한 직접고용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 10> 인터뷰 참가자의 일반적 특징

| 참가자(성) | 고용형태 | 계약기간 | 연령 | 학력 | 전직 | 배우자 직업 | 자녀 |
|--------|----------------------|------|-----------|----|-------------|-----------|-----------|
| 사례1(남) | 공동체일자리 기간제(65세 ↑) | 4개월 | 67세 | - | 일용노동자 | 기간제 | 1남, 1녀 |
| 사례2(여) | 공동체일자리 기간제(65세 ↓) | 6개월 | 40대 중반 | - | 중소기업 | 이혼 | 1남, 1녀 |
| 사례3(남) | 기간제(외근) | 6개월 | 65세 | - | 대공장 | 무직 | 2남(독립) |
| 사례4(남) | 기간제(내근) | 3개월 | 24세 | 대재 | 학생 | 미혼 | 부모와 동거 |
| 사례5(여) | 기간제(외근) | 3개월 | 58세 | - | 주부 | 무직 | 1남, 2녀 |
| 사례6(남) | 무기계약직 환경보원 | 정년까지 | 50세 | 고졸 | 자영업 | 무직 | 1남, 1녀 |
| 사례7(남) | 기간제 공무원 (전임계약직) | 2년 | 40대 중반 | 대졸 | 공기업 | 공무원 | 2남(초등) |
| 사례8(여) | 기간제 공무원 (시간제계약직) | 2년 | 42세 | - | 사립 사회복지관 | 무기 계약직 | 2명(초등) |

(2)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기간은 2013. 9. 3(화) ~ 같은 달 6(금)까지 4일간 이고,
- 면접은 진행자가 구청에 협조를 얻어 근로시간 중 대상자의 근무 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상자를 호출하여 복구기간제노동자지원센터 상담실을 이용해 각 대상자마다 1~2시간씩 1:1로 면접하며 녹취와 필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분석 방법

- 면접조사 내용은 녹취와 간단히 필기한 것을 다시 ‘문답서’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모듬하여 동일한 범주로 묶일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정리하였으며, 면접 대상자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되 전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4) 조사 한계

- 이 면접조사는 생활임금 조례 입법 등을 통하여 복구청과 근로계약 관계를 형성하여 일하는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실태조사에 부속된 것이다.
- 이 면접조사는 고용형태별로 1~2명이라는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그 한계를 보충할 목적으로 중요 사항은 재차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자존심 등이 이유가 되어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답변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 또 적은 수의 면접 대상자로 인하여 답변 내용이 동일 노동자 집단의 일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대변했다고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2) 조사 내용

- 정형화 시킨 질문지에 의존하지 않았으나 면접 진행자와 조사 대상자 간의 대화는
 - 구청이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의 취득 경로,
 - 구청으로부터 제공되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평가,
 - 조사 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 수준,
 -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임금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 수준,
 - 구청에 요청할 애로사항이나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핀다.

(1) 구인정보 취득 경로 : 동료 또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통해서 구청 구인정보 접해

“이번에는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언니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 2>

“먼저 취업해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구청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사례 6>

“(구청의 구인정보는) 알바천국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 4>

- 인터뷰 대상자 8명에게 모두 질문한 것이 아님에도 공동체일자리 참가자인 <사례 2>와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인 <사례 6>은 이웃으로부터 구청의 구인정보를 들어서 알게 되었다 하였고, 대학 복학을 앞두고 있는 기간제근로(내근) 참가자인 <사례 4>는 사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2) 구청이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한 평가 :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의미많은 일자리로 평가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구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당장 살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많이 낮기는 하지만 매우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사례 1>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면) 임금은 조금 더 많이 받지만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그 일자리가 구청 일자리보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사례 2>

“이젠 나이도 있고 해서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업 경쟁이 심하다보니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사례 3>

“배우자인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 경우, 여성인 주부들에게 이 일자리가 적당한 자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동강도도 빠시지 않고, 가사와의 병행이 용이하고, 근로시간도 법정 시간만 하면 되고, 그래서 시급은 낮지만 주부들이 선호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40대가 많고 50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30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례 4>

“(구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그나마 기간을 좀 길게 할 수 있다면 괜찮은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5>

- 임금이 매우 낮은 공동체일자리 참가자들인 <사례 1>과 <사례 2> 모두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곤란과 종합적인 비교를 이유로 구청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자신들에게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평가했고, 기간제근로 참가자인 <사례 3>과 <사례 4> 또한 나이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곤란과 적당한 노동강도와 근로시간 등을 이유로 구청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 재산 및 가구 소득 : 공동체일자리 참가자는 심각한 빈곤 상태, 기간제근로 참가자는 가구 내 보조적 소득원인 경우 많은 것으로 보여

“집사람과 함께 염포동에서 달세를 살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입니다. 이것만 없어도 좋겠는데 집이 없으니.....” <사례 1>

“재산은 없고, (제가 버는 것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보니 전세 보증금을 줄여서 생활했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사례 2>

“(기간제근로 참가자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례 3>

“구청으로부터 일자리를 얻지 못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사례 3>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 같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이 많습니다.” <사례 4>

- 공동체일자리 참가자인 <사례 1>은 무주택자로 매월 부담하는 주거비(월세)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표시했고, <사례 2>는 채무는 없으나 자신이 소득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전세 보증금을 줄여서 생활해 왔다고 했다.
- 반면, 기간제근로 참가자인 기간제근로 참가자인 <사례 3>과 <사례 4>는 (자신들도 그러하거나) 구청이 제공하는 기간제근로 참가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고, (배우자 등 가구 내 주된 소득원이 따로 있어) 생활 형편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4) 임금 만족도 및 기대 임금 : 임금을 올려주기 보다는 고용기간을 늘려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

“월 120만 원 정도만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례 2>

“별다른 것은 없고, (구청의) 기간제근로는 모두 1년 미만입니다. 그나마 장기간 일한 사람은 연이어 채용하지 않고, 1년 정도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근로)계약기간을 한 2년 정도로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사례 3>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2013년)에 불과한 공동체일자리 참가자인 <사례 2>는 월 임금이 120만 원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고 하였고,
- 기간제근로 참가자인 <사례 3>은 구청의 기간제근로로는 모두 1년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1년 범위 내에서도 장기간 근로했을 때는 그 다음 해에는 채용이 불가능하다며 근로계약기간을 2년 정도로 늘려 주면 좋겠다고 했다.

(5) 고충 및 개선 사항 : 너무 짧은 공동체일자리의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주고, 일자리 참가 희망자들의 보유 기능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 기대

구청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보유) 기능 등을 조사하여 관리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도 재미있고 일당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례 1>

“일을 좀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하는 시간도 더 늘려 일당도 좀 더 받았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구청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근력으로도 하루 8시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1>

“기간을 2년 정도라도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1년 내에서도 장기간 일을 한 경우는 재계약을 1년 쉬었다가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구청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일부 사람들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5>

“무엇보다 인력 총원이 시급합니다. 최근 (몇 년은) 매년 몇 명씩 신규채용을 해서 총원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해봐야 퇴직 인원을 채우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서도 이야기 했지만 업무량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례 6>

“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인력 규모는 정원 규정의 통제를 받는데, 전임은 정원에 포함이 되는 자리이고, 시간제는 정원 외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처우 측면에서는 전임이 시간제보다 좋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임은 공무원 연금 가입과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시간제는 안 됩니다. 이런 것 까지 포함해서 판단하면 1일 근로시간이 딱 1시간 짧다는 차이 밖에 없는데 처우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7>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불과한 공동체일자리 참가자인 <사례 1>은 일자리 참가자의 기능을 활용하는 일자리 개발과,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고,
- 기간제근로 참가자인 <사례 5>는 기간제 근로자가 일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정도로 늘려 달라고 하였고,
-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인 <사례 6>은 업무량의 증가를 이유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하였으며,
- 계약직공무원인 <사례 7>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전임계약직 보다 5시간이 짧은 시간제 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희망했다.

3) 면접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1) 공동체일자리는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늘여야

- 공동체일자리 참가자는 가구소득이 없거나 낮고(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1.35억원 이하)도 적으면서, 설상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 자격도 없는데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쟁력도 없는 경우 등만 참가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취약(빈곤)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공동체일자리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고, 소정근로시간(2012년 : 65세 이상 16시간, 65세 이하 30시간, 2013년 : 65세 이상 15시간, 65세 이하 28시간)과 근로계약기간마저 너무 짧아 그 일자리 제공의 목적을 무색케 한다.
- 그러므로 구청은 소득과 재산이 취약함에도 사회복지제도의 수급 대상도 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내 취약(빈곤)계층에게 구청이 제공하는 일자리 중 적정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기간이 보장되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기간제근로 참가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임금 인상만큼 중요

- 기간제근로 내근직은 공동체일자리와 시급은 동일하지만 1일 8시간,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공동체일자리와 비

교할 바가 아니다.

- 기간제근로 외근직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2012년 : 시급 5,405원, 2013년 : 시급 5,551원)이고, 내·외근직 모두 공동체일자리 참가와 달리 해당 직무수행능력 외에는 그 참가 자격에 특별한 제한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내에서 다양하게(30일 미만 ~ 240일 초과까지) 존재할 뿐이다.
- 그러므로 구청의 한정된 재정으로 임금도 인상하고 근로계약기간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취업하지 못할 경우 적당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도 그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보면, 임금 인상보다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이 더 절실하다 할 것이다.

5. 조사과정에서 갖게 된 문제의식

1) 정부 발표 공공부문 기간제 대책도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생활임금지원 조례입법 추진의 목적은 조례 제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사용자가 다른 어떤 사용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을 당사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려는데 있다.

○ 더 나아가서는 자신과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 용역업체, 그리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업체, 즉 공공계약이나 보조금, 감세 등을 통해 납세자가 내는 세금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신에게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있다.

○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부문 임금정책을 통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단합을 저해하는 소득 및 생활의 양극화와 빈곤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선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관점에서 생활임금 문제에 접근하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관련한 조례의 준비와 관계없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는 작년 1월에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우선하여 기간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여론이 떠밀려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상사-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기간제 고용 개선 추진지침」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 바 있고, 금년 4월과 10월에는 이를 보완하는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시달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도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의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다.

-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하여 유력한 사회단체와 정당(새누리당 제외)을 포괄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매년 정액급여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임

금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지침 등은 공직사회의 업무처리 관행으로 보아 지역 내 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를 설득하는데 있어 다른 어떤 논리나 근거보다 높은 설득력을 발휘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 그러므로 생활임금운동을 고민하는 단체나 기관은 우선 위와 같은 지침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철저히 준수(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공공부문 저임금노동자 임금개선의 1단계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실질적인 생계(활)비를 근거로 하는 생활임금 요구는 1단계 목표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다.

2) 생활임금운동이 힘 있게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와 의지에 기초한 행동과 사업이 실행되도록 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북구청 직·간접 고용노동자 중 임금이 가장 높은 집단은 환경미화원이다. 동일한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소정급여를 기준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같은 무기계약직(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면서 임금체계도 동일한 현업실무원과 비교하면, 환경미화원의 초임(1호봉)은 현업실무원의 최고 호봉(30호봉)과 비슷하다. 이처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현업실무원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이유는 직무의 특성보다는 오랜 기간 거듭된 단체교섭의 성과로 보인다.
-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가장 확실한 처우개선 방도는 그 당사자들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각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3) 북구청 등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생활상의 필요에서 소득이 절실한 주민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그 의미가 더 많아 진다.

- 북구청 작간접 고용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 하나는 임금수준 자체를 끌어 올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간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중 일부를 현업실무원들과 같은 무기계약직으로 그 고용형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일자리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일자리 참가자의 경우는 중앙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자리(풀타임 근로가 가능한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생각해 보라, 소정급여 기준으로 한 달 근로소득이 약 40만원에 내지는 80만원 불과한 취약 계층 노동자에게 지역사회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수준(취업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되는 경우)의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이 노동자가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은 공동체일자리에 참여 할 때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다. 양질의 일자리아말로 취약계층의 자활과 빈곤 탈출의 유력한 수단이다.
- 그러므로 공공부문은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개선된 일자리를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갖도록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같은 값이면 공공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생활상의 필요에서 (근로)소득이 절실히 요구되고, 본인의 강한 취업 욕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곤란한 주민에게 제공될 경우 그와 사정이 다른 주민에게 제공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게 된다.
-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과 다양한 주민 정보를 활용하여 위와 같은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별지1]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접고용 노동자 면접조사 문답서

1. 인터뷰 참가자의 일반적 특징

| 참가자(성) | 고용형태 | 계약기간 | 연령 | 학력 | 전직 | 배우자 직업 | 자녀 |
|--------|---------------------|------|-----------|----|---------------------|-----------|-----------|
| 사례1(남) | 공동체일자리 기간제(65세↑) | 4개월 | 67세 | - | 일용노동자 | 기간제 | 1남, 1녀 |
| 사례2(여) | 공동체일자리 기간제(65세↓) | 6개월 | 40대 중반 | - | 중소기업 | 이혼 | 1남, 1녀 |
| 사례3(남) | 기간제(외근) | 6개월 | 65세 | - | 대공장 | 무직 | 2남(독립) |
| 사례4(남) | 기간제(내근) | 3개월 | 24세 | 대재 | 학생 | 미혼 | 부모와 동거 |
| 사례5(여) | 기간제(외근) | 3개월 | 58세 | - | 주부 | 무직 | 1남, 2녀 |
| 사례6(남) | 무기계약직 환경지원 | 정년까지 | 50세 | 고졸 | 자영업 | 무직 | 1남, 1녀 |
| 사례7(남) | 기간제 공무원 (전임계약직) | 2년 | 40대 중반 | 대졸 | 공기업 | 공무원 | 2남(초등) |
| 사례8(여) | 기간제 공무원 (시간제계약직) | 2년 | 42세 | - | 사 립 사회복지 관 | 무기 계약직 | 2명(초등) |

2. 인터뷰 내용

1) <사례 1>

(1) 개요

- 일시 : 2013. 9. 3(화) 오후
- 장소 : 북구기간제노동자지원센터 상담실
- 특징 : 67세 남성, 주 15시간 공동체일자리 참가자

(2) 내용

- 질문 : 귀하는 언제부터 구청이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까?
- 답변 : 이번이 두 번째인데, 먼저는 구청 건설과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해서 두 달 보름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건설노동시장에서 철근공으로 일당 11만원 내지 12만원 정도 받고 일을 했고, 아주 예전에는 조선소에서 용접사로 근무했어요.

- 질문 : 현재 공동체일자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답변 : 공단 인도의 잡초제거 등의 환경을 정비하는 겁니다.

- 질문 : 지금 일자리의 임금은 철근공이나 용접사로 일하실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낮은데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 답변 : 마누라가 구청의 기간제 근로에 참여해 일하고 있어요. 집사람이 일해서 버는 돈이 내가 버는 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는 월세를 내면 딱 맞는 정도예요.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근력도 떨어져 용접과 철근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살려 일하려고 해도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취업을 못합니다. 누가 받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낮아도 구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내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겁니다.

- 질문 : 월세를 부담하신다는 것은 자가 소유의 집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답변 : 그렇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엽포동에서 달세를 살고 있습니다. 월 30만원입니다. 이것만 없어도 좋겠는데 집이 없으니.....

- 질문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애들을 1남1녀 두고 있는데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쁘다보니 부모 생계를 지원할 형편은 못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 보호나 별로 지원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 질문 : 혹시 국민연금 수급자격은 없습니까?
- 답변 : 그거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로부터는 지원 받는 것은 약간의 교통비가 전부예요.

- 질문 : 어디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요?
- 답변 : 당뇨와 혈압이 높아서 약을 지어 먹고 있는데, 나는 베트남 참전 고엽제 피해자라 거기에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뇌경색 같은 것은 따로 돈을 조금 내야 합니다. 집사람도 혈압이 높아 고생을 좀 합니다. 갖은 게 없고 벌어도 시원찮으니 큰 병이라도 오면 어쩌나 늘 불안하지요.

- 질문 : 공동체일자리 중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일자리의 근로시간은 작년에는 16시간 올해는

주당 15시간이던데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됩니까?

- 답변 : 하루 노동시간은 4시간 입니다. 3일을 출근해도 주차를 줍니다.

- 질문 : 울산이 고향이십니까?
- 답변 : 고향은 부산이고, 80년대 초 이사 와서 양정동에서 쪽 살았습니다.

- 질문 :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일을 좀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하는 시간도 더 늘려 일당도 좀 더 받았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구청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근력으로도 하루 8시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질문 :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 답변 : 일을 일찍 마치기 때문에 귀가해서 해결합니다.

- 질문 : 하루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답변 : 아침에 출근하면 부서별로 모여서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각자 일터로 나갑니다.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을 합니다.

- 질문 : 기간제 일자리에 참가하는 사람은 여성들이 절대 많다고 하시던데 공동체 일자리 참가자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 답변 : 여자와 남자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질문 :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은 없습니까?
- 답변 :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구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당장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많이 낮기는 하지만 매우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구청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보유) 기능 등을 조사하여 관리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도 재미있고 일당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 <사례 2>

(1) 개요

- 일시 : 2013. 9. 6(금) 오후
- 장소 : 오토벨리복지센터 4층 인터뷰 참가자 작업실
- 특징 : 40세 중반 여성, 소정근로시간이 1주 28시간인 공동체일자리 참가자

(2) 내용

- 질문 : 지금 하시는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 답변 :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 질문 : 어떻게 아시고 취업하셨습니까?
- 답변 : 재작년부터 구청이 제공하는 일자리에 취업하여 일했는데 이번에는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언니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공공근로를 마지막으로 하고 실업급여 타먹고 구청 일자리 말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용이치 않아서 또 구청 일자리에 취업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1회에 2개월 보름씩 일을 했고, 3회 반복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려면 취업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퇴직전 18개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짧아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안 생기고 취업도 쉽게 안 되고 하면 생활이 많이 곤란해집니다.

- 질문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답변 : 중학교 3학년 딸이 있고, 24세 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직업 군인입니다. 제가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뭐가 지원 같은 것이 안 되네요.

- 질문 : 구청 일자리 취업과정 및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우선 구직정보를 보고 동사무소에 (구직) 신청을 해두면, 동에서 월말에 전화를 걸어와 업무내용과 임금 수준을 알려주고 할 수 있겠는지를 묻습니다. 구직자가 생각하는 조건과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취업을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 질문 : 65세 이하의 사람이 참가하는 올해 공동체 일자리는 주당 근로시간이 28시간인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 답변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5시간 일하고, 금요일은 8시간 합니다.

- 질문 : 다른 직장 생활 경험은 없으신지요?

- 답변 : 결혼 후 가사에 전념하다가 잠깐 공장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화학공단 내 케미칼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 질문 : 그 일하고 지금 일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답변 : 그 일이 구청에서 하는 일보다 훨씬 힘들지요. 집에서 사업장 거리가 멀다 보니 출퇴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임금은 조금 더 많이 받지만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그 일자리가 구청 일자리보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 질문 : 혼자 벌어 가족생활을 꾸려 나가시겠네요?
- 답변 : 그렇습니다. 군대에 아들이 있는데 도움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 질문 : 혼자 버시는 걸로 생활이 됩니까? 채무는 없는지요?
- 답변 : 적자입니다. 이사를 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전세 보증금을 줄여서 생활했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 질문 : 재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 답변 : 전혀 없습니다. 딸아이를 고등학교 졸업까지 책임지고 (부양책임) 마치려고 합니다.

- 질문 : 기간제 근로 참가자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 답변 : 맞습니다.

- 질문 : 기간제 근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 답변 : 저처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금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공장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쉽고, 또 동네에서 주로 하는 일이고 작업시간도 딱 8시간만 하나까 주부들이나 또 취업이 어려운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질문 : 귀하는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답변 :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용기가 없어 면접을 보는 것도 두렵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됩니다. 제 상태가 그렇다보니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고 어쩔 수 없는 거지요.

- 질문 : 임금을 얼마나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 답변 : 월 120만원 정도만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 질문 : 운전면허 등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답변 : 운전면허도 없고 다른 자격증도 가진 것은 없습니다.

- 질문 : 일자리 주로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 답변 : 인터넷 같은데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 중 ‘알바천국’ 을 주로 이용합니다. 얼마 전에는 식품가공업종에 취업 했었는데 한 달 정도 하고 그만 두었어요. 임금은 낮은데 일은 힘들고 부당한 행위도 많고 해서요.

- 질문 : 지금 하시는 일을 마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걱정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바람도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 답변 :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을 일찍 했고 이혼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남편 모두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맨날 술만 먹고 나태하고 해서 함께 사는데 애로가 많았어요. 13년을 같이 살았는데 6년은 그럭저럭 살았으나 7년은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대한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도 그렇고 제가 어려서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늘 우울한 상태이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친정 엄마도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첫 번째 남편과는 아이를 제가 키우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했고, 또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두 번째 남편도 문제가 많아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송해서 이혼했습니다. 지금 생활이라는 게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니까 이런 것이 좀 해결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저는 내가 벌어서 나를 위해 소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식들은 제 사는 처지가 그렇다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3) <사례 3>

(1) 개요

- 일시 : 2013. 9. 5(목) 오전

- 장소 : 북구기간제노동자지원센터 상담실
- 방식 : 65세 남성, (일반)기간제근로 참가자

(2) 내용

- 질문 : 귀하는 북구청 기간제 근로에 어떻게 취업할 수 있었습니까?
- 답변 : 현대차를 다니다가 98년도 희망퇴직한 후 현대차 납품업체에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정년이 되어 퇴직했어요. 퇴직 후 주변 사람들로 부터 들어서 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월에 면접을 보았는데, 구청이 필요로 하는 나무 및 공원 관리, 잡초제거, 가지치기 등을 할 수 있는지, 예초기를 다룰 수 있는지 등을 물어서 근로능력을 확인하더군요.
- 질문 : 외근직으로 일하는 분들의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 답변 : 내가 일하는 '녹지작업단'에는 남자 10명에 여자 21명이 일합니다. 공원에는 고정으로 2명씩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 질문 :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답변 : 2월에 시작하는 사람은 10월말까지 9개월간(240일 초과) 하고, 3월에 시작하는 사람은 11월말까지 일을 합니다. 나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하는 사람은 매년 연속해서 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기간제로 일해 왔습니다. 나는 3년 전 부터 북구에서 일을 못할 때에는 시의 태화강관리공단이나 거주지 불문하고 사람을 모집하는 울주군에 구직 신청 해서 일자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구에서 모집을 할 때는 (위장) 전입해서 구직신청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 질문 : 언제부터 구청의 기간제 노동자로 일을 하셨습니까?
- 답변 : 북구청에서 일을 시작한지는 3년전부터 입니다.
- 질문 : 지금 받고 있는 일당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 답변 : 이젠 나이도 있고 해서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업 경쟁이 심하다보니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 질문 : 임금 수준이 높지도 않은데 취업 경쟁이 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 : 집에서 별 하는 일 없이 노느니 일해서 한 푼이라도 벌면 좋고, 여성들은 가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청에서 하는 일은 연장근로 같은 것이 없어서 가사와 병행하기에 좋고, 특별한 기능이 없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다른 데(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도 어렵고 하니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청의 일자리에 취업하려고 신청을 하지만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 질문 : 기간제 근로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십니까?
- 답변 : 나이는 주로 50대, 60대이고, 여성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질문 : 기간제 근로에 참여하는 분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 답변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답변 : 애들은 모두 분가해서 하나는 (울산) 우정동에, 하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 질문 : 임금은 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 답변 : 건강보험료 떼고 137만 원 정도 받습니다. 집 사람은 돈벌이를 하지 않지만 내가 국민연금(월 80만 원 정도)을 수급하고 있어 그러저럭 생활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 질문 :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답변 : 만 65세 이상자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 질문 : 현대차를 다니시다 희망퇴직을 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까?
- 답변 : 왜 후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인데도 한 동안은 계속 후회 속에서 지냈어요.
- 질문 : 지금 하시는 일이나 임금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요? 임금에 대하여 불만족하시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
- 답변 : 만족도를 못 느낍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나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별다른 것은 없고, 기간제 근로는 모두 1년 미만입니다. 그나마 장기간 일한 사람은 연이어 채용하지 않고 1년 정도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근로)계약기간을 한 2년 정도로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 질문 : 자격증이나 기능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답변 : 원전면허증 2종 보통을 가지고 있고, 나의 원래 직종은 판금입니다. 사상도 했고, 용접도 웬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구청은 기간제 근로를 내근, 외근으로 구분하고 일당도 달리 정하고 있는데 구직자들이 이를 모두 알고 구직신청을 하나요?
- 답변 :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근직에 종사하는 기간제에게 제시되는 일당은 더 높습니다.

- 질문 : 기간제 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의 생활수준은 어떠한 것으로 짐작이 되십니까?
- 답변 : 구청으로부터 일자리를 얻지 못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 질문 : 자식들이 부모님(귀하)의 생활을 지원하지는 않습니까?
- 답변 : 생활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도 뻣뻣한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 질문 : 자식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작은 아이가 성균관대에 배구 특기생으로 입학하여 졸업 후 실업팀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그 실업팀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큰 아이는 울대를 졸업했습니다.

- 질문 : 구청이 제공하는 일자리에 취업해 일하기까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 구인정보를 알게 되면 구청을 방문해서 구직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고, -> 면접을 보고 기다리면 -> 문자로 취업여부 알려 줍니다. -> 취업이 되었을 경우 출근일자와 장소를 지정해 알려주면 출근일자에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 질문 : 구청에 건의하거나 귀하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서로 다 같은 지역이지만 동네마다 아는 사람끼리 함께 일을 할 수 있으니 재미가 있습니다. 작업도구 같은 것은 구청이 다 주니까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작업화

포함해서 작업 소모품까지 구청이 다 제공해 줍니다.

- 질문 : 기간제 근로는 30일 이하부터 240일 초과까지 있는데 이 분들이 모두 그 해 한 번이라도 취업하면 당해 년도 재취업이 불가능가요?
- 답변 : 구청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일한 사람은 한 해 쉬어야 재취업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 답변 : 부서별로 반장이 1명씩 있습니다.

- 질문 : 점심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 답변 : 식비나 식사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도시락을 싸가고 와서 같이 먹습니다. 가족수당을 배우자 4만원 자녀1인당(19세 미만) 2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4) <사례 4>

(1) 개요

- 일시 : 2013. 9. 5(목) 오후
- 장소 : 북구기간제노동자지원센터 상담실
- 방식 : 24세 남성, 군 제대 후 복학 준비과정 있는 기간제(내근직)근로 참가자

(2) 내용

- 질문 : 기간제 내근직이신데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입니까?
- 답변 : 간단하게 말하면 컴퓨터 수리하는 업무입니다.

- 질문 :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답변 : 3개월인데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질문 : 다른 분들과 달리 나이가 젊은데 어떻게 구청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답변 : 경희대 2학년 다니다 입대를 했고, 올 4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내년도 복학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알바천국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질문 : 구청 일자리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겠네요?

- 답변 : 그렇습니다.

- 질문 : 업무의 내용은 귀하가 희망하는 것인가요?

- 답변 : 저는 정보디스플레이를 전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액정을 연구개발하는 일입니다. 공학을 공부하는데 지금 하는 일과 관련성이 조금은 있다고 할 수 있어 좋습니다.

- 질문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답변 : 농사 짓는(배과수원+논농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 질문 :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 답변 : 중학교 2학년인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동생 공부를 도와줍니다.

- 질문 : 기간제 일자리에 여자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 답변 : 배우자인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 경우, 여성인 주부들에게 이 일자리가 적당한 일자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동강도도 빠지지 않고, 가사와의 병행이 용이하고, 근로시간도 법정 시간만 하면 되고, 그래서 시급은 낮지만 주부들이 선호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40대가 많고 50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30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질문 : 지금 지급되는 기간제 내근직 임금은 법정 최저시급인데, 독신이고 복학 예정자인 대학생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만약에 시급에 불만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 : 제 조건에서도 시급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1시간 일해서 밥 한 그릇도 사 먹을 수도 없는 수준이잖습니까. 최소 5천원은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 : 대학 재학 중 다른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 답변 : 방학마다 서울과 지역에서 학비 등에 보태려고 세차, 보안요원, 써빙 등의 일을 했습니다.

- 질문 : 귀하에게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 답변 : 예,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려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되거나 자녀가 있거나 해야 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조건에 미달하여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 구청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생활 형편이나 처지는 어떤 것 같습니까?
- 답변 :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 같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이 많습니다.

5) <사례 5>

(1) 개요

- 일시 : 2013. 9. 6(금) 오전
- 장소 : 북구기간제노동자지원센터 상담실
- 특징 : 58세 여성, 기간제근로(외근직) 참가자

(2) 내용

- 질문 :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답변 : 4월부터 6개월 간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3개월 더 연장 될 가능성 있습니다.
- 질문 : 구청의 사업부서는 녹지작업단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 남자들이 예초기를 사용해서 풀을 베어 놓으면 여자들은 거두어 처리하는 일을 하며, 양묘장의 국화꽃에 거름과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묶어 주기도 하는 일을 합니다. 남녀가 절반씩 썩여 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질문 : 가족관계를 말씀 좀 해주시죠?
- 답변 : 배우자(남편)와 딸 2명, 아들 1명입니다. 딸 둘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아들은 내일이 결혼식입니다. 오늘 일 마치고 경기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 질문 :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 답변 :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중입니다. 우리 아저씨 나이가 62살인데 일자리 구하기가 쉽

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질문 : 그럼 생활이 제법 어려우시겠어요?

- 답변 : 그렇습니다. 아저씨도 놀고 있고, 한 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아저씨가 만이이고, 시어른 두 분의 생활비도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시어른이 다리도 많이 아프셔서 걸음도 잘 못 걷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마트에서 일을 제법 오랫동안 했습니다.

- 질문 : 구청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모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 답변 : 인터넷을 이용해서 구청 구인정보 코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질문 : 구청에 무엇이든 개선할 점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 답변 : 기간을 2년 정도라도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1년 내에서도 장기간 일을 한 경우는 재계약을 1년 쉬었다가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구청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일부 사람들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질문 : 일당은 얼마입니까?

- 답변 : 일당이 44,410원(시급 5,551원)입니다. 혼자서 버니까 생활하기에 너무 빠듯합니다. 문화생활 같은 것은 꿈도 못 꾸니다.

- 질문 : 채무는 없습니까?

- 답변 :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보니까 빚은 없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지은 빚을 갚아 드린다고 고생 좀 했습니다. 우리는 종갓집 만이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부담이 더 됩니다.

- 질문 : 집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 답변 :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소득이 별로 없어서 계속 살림을 줄여 생활비로 쓰려고, 삼산에서 살다가 북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 질문 : 남편께서는 국민연금은 수급하고 계시나요?

- 답변 : 그렇습니다.

- 질문 : 지금 어디 불편하시거나 걱정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 답변 : 아들이 내일 결혼을 하는데 월세로 신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도와줄 수 없어 안타깝고 미안하지요.
- 질문 : 사회보험료는 납부하고 계신가요?
- 답변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합니다.
- 질문 : 배우자 되시는 분이 빨리 일자리를 얻어야 하실텐데요?
- 답변 : 예, 혼자 버는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하려니 어렵습니다. 비가 와서 쉬면 임금이 없습니다. 남편도 지금은 이상이 없지만 예전에 몸이 안 좋아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 질문 : 일하시는 게 힘에 부치지 않는습니까?
- 답변 : 어디 쉬운 일이 있습니까.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이거라도 해야죠.
- 질문 : 식사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시지요?
- 답변 : 예, 디들 도시락을 싸와서 돌려 앉아 같이 먹습니다.
- 질문 : 구청이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평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답변 :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그나마 기간을 좀 길게 할 수 있다면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 답변 : 울산에 시집간 딸이 살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내일 아들 결혼식이 있는 경기도 의왕시로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매월 8만원 정도의 노령연금인가 하는 것을 받는 것이 전부인 시부모님이 무릎 관절 수술해야 합니다. 거기에 6~7백만원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 질문 : 고향은 어디세요?
- 답변 : 강원도 횡성에서 살다가 20년 전 쯤에 울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6) <사례 6>

(1) 개요

- 일시 : 2013. 9. 3(화) 오후
- 장소 : 인터뷰 참가자 사업장 휴게실
- 특징 : 50세 남성, 무기계약직(무기계약) 환경미화원

(2) 내용

- 질문 : 북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특징은 무엇입니까?
- 답변 : 총 53명이 있는데 그중 여성 2명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남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여성이 하기에는 힘에 부칩니다. 인구수와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비해 정년 퇴직으로 (재직) 미화원수가 줄어 예전과 비교하면 업무량은 늘어 엄청 힘들어 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청이 2010년과 2011년에 사람을 더 받아서 그 때 취업한 사람들이 15명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평균 연령은 약 신규 입사자가 여러 명 생겨 낮아 졌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약 45세 정도 될 것 같고, 평균 근속년수는 10년 정도 될 겁니다. 조합원들의 평균 가구원수는 3~4명 사이라고 보면 될 같습니다.
- 질문 : 인구와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답변 : 인구는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1997년에는 북구에 사는 사람이 10만이 조금 넘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18만 명이 넘으니 인구수만 해도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래서 업무량도 늘었지만 소비지출이 늘면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등의 량도 과거보다 훨씬 증가했다고 봐야 합니다. 도로도 많이 생기고 확장 되었지요. 업무의 종류는 과거(2011년 이전)에는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폐가구를 수거했는데 2011년에 폐가전과 폐형광등 수거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시간이 지나 올수록 점점 더 힘들어 졌다고 할 수 있지요. 구청 측도 이런 사실을 훤히 알고 있으니 신규 채용에 나섰던 것이지요. 그래도 과거 수준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5개 구군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는 곳은 우리 북구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없다보니 가로청소 같은 일은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원으로 가로청소까지 만족스럽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 질문 : 귀하는 어떻게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까?

- 답변 : 먼저 취업해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구청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복구가 탄생하기 전에 입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는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처럼 몸만 건강하면 별 어려움 없이 취업할 수 있었어요.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 최근에는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하려는 사람이 무척 늘었습니다. 재작년에도 보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 질문 :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은 얼마나 되고, 만족하십니까?
- 답변 : 우리 미화원들은 근속별 임금체계로 되어 있는데 근속 10년차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서 년 4천만원이 조금 넘을 것 같네요. 근속 20년차가 되어도 년 5천만원이 안 됩니다. 울산에서 웬만한 회사에 20년을 다니면 연봉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과 근무기한을 생각하면 만족할 수 없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지요.
- 질문 : 채무는 없습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 답변 : 나는 매곡동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비 문제로 빚도 조금 있고, 매월 월세도 20만원 나갑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하다 보면 조금도 넉넉한 생활이 안 됩니다. 딸이 둘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생과 한 놈은 대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비부담이 매우 큼니다.
- 질문 : 1주일에 며칠, 몇 시간을 근무하십니까?
- 답변 : 토요일 시간외근로 4시간을 합하여 주 6일 근무합니다. 일요일(휴일)근무는 매주 7~8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 질문 : 구청이 개선해야 할 점이나 고충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답변 : 무엇보다 인력 충원이 시급합니다. 최근 매년 몇 명씩 신규 채용을 해서 충원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해봐야 퇴직 인원을 채우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업무량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적극 반영해서 적정 인원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53명인데, 아무리 적어도 1997년 수준인 58명은 되어야 합니다.
- 질문 : 그 외 애로 및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 답변 : 재활용품 상차하는 과정에서 낙하물에 머리를 다치기도 합니다. 깨진 유리병이나 유

해물을 속이 보이지 않는 까만 봉지에 넣어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작업자들이 작업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때도 시계가 흐리고 바닥이 미끄러워 많이 위험한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근무시간도 노사 간에 협의하여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근무시간에 너무 억매이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은 시민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어서 그런 점도 적극 고려해서 함께 협의해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질문 : 환경미화원 외 상용직노조도 있어 동일 사업장에 노조가 복수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답변 : 환경미화원들은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그 외 상용직들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상용직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노조가 복수이긴 하나 그 가입대상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데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노사협의회는 소속 부서를 상대로 이루어져서 그것도 노조마다 각자 알아서 달리 이루어집니다.

7) <사례 7>

(1) 개요

- 일시 : 2013. 9. 4(수) 오전
- 장소 : 오토벨리복지센터 4층 북구기간제노동자지원센터 사무실
- 특징 : 40대 중반 남성인 전임계약직 공무원

(2) 내용

- 질문 : 지금 직업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 답변 : 내가 가진 전문성(공인노무사)을 살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공직에 왔고, 지금 하는 일이 노사의 애로나 갈등을 돕거나 해소하는 일이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제공되는 처우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돈을 보고 취업한 것은 아니나 내게 제공되는 임금 등의 처우를 내가 노무법인을 운영하거나 그 곳에 취업하여 받게 되는 보수 및 수입과 비교하면 결코 괜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요. 일은 상시적 성격을 갖는 업무인데 기간제

공무원이라는 고용형태로 일을 하니 수행하는 업무와 고용형태 사이에 부조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장 5년을 일할 수 있습니다. 5년 한도에 이르면 다시 계약을 갱신할 수는 있는데 채우는 신규자와 동일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지요.

- 질문 : 귀하의 고용이나 채우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나 규범은 무엇입니까?
- 답변 : 법은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이 있고, 하위 규정으로 안전행정부가 정하여 시행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이 있습니다. 작년엔가 법률이 개정되어 하위 규범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 이란 명칭을 ‘임기제 공무원’ 으로 변경하는 것 같은데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질문 : 귀하처럼 복구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 답변 : 계약직 공무원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전임 계약직이고, 또 하는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전임은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제 계약직도 여러 사람 있습니다. 마을기업 관련 업무에 2명,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업무에도 있고, 친환경무상급식센터에도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무법인을 개업할 수도 그 곳에 취업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채우가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닌 지방도시의 구청에 그것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한 무슨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 답변 :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유는 국가인증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했으나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경험을 쌓아야 하니까 기간제 일자리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구청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후자 쪽입니다. 공직에 종사하며 남이나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갖는다고 할까요.

- 질문 : 일을 하다보면 짜증이 나거나 속상하실 때가 종종 있을 텐데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 답변 : 가끔 정부에서 무슨 정책 같은 것을 시행할 때 그 내용이 공문서를 통해 시달되는데 특히 무슨 급부 등을 제공할 때 내용 말미에 괄호를 만들어 “계약직 공무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좀 섭섭하지요. 하는 일은 다 같이 소중한 일인데 계약직 공무원은 별도의 괄호로 취급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쓸쓸한 마음 생기기도 합니다.

- 질문 : 실무에 이용하는 계약직 공무원 '임금기준표' 가 있지 않을까요?
- 답변 : 예산부서에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가', '나', '다' 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마도 '가' 급은 5급 공무원 상당, '나' 급은 6급, '다' 급은 7급 상당의 처우를 받도록 정해져 있을 거예요.

- 질문 : 같은 계약직 공무원이어도 '전임 계약직' 과 '시간제 계약직' 은 처우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 답변 : 우선 근로시간이 다릅니다. 전임은 풀타임(주 40시간) 근로제이고, 우리 구청의 시간제는 1주 35시간 근로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제가 일을 주당 35시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를 처리해야 하니까 주어진 시간에 처리가 안 되면 남아서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지요. 그것은 전임이나 시간제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도 질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질문 : 구청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을 채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답변 : 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인력 규모는 정원 규정의 통제를 받는데, 전임은 정원에 포함이 되는 일자리이고, 시간제는 정원 외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처우 측면에서는 전임이 시간제보다 좋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임은 공무원 연금 가입과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시간제는 안 됩니다. 이런 것 까지 포함해서 판단하면 1일 근로시간이 딱 1시간 짧다는 차이 밖에 없는데 처우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 이 조사연구사업은 생활임금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구청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법제처는 그 같은 조례입법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잘 하시리라 봅니다. 그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질문 : 계약직 공무원들도 공무원노조에 가입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 답변 :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가입을 권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계약이 갱신이 되어야 계속 근무가 가능한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형성해서 목소리를 내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직사회나 일반기업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8) <사례 8>

(1) 개요

- 일시 : 2013. 9. 4(수) 오후
- 장소 : 북구청 소속부서 상담실
- 특징 : 42세 여성,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2) 내용

- 질문 :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끼리 모임이나 소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답변 : 얼굴은 서로 알아요. 모임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간담회 같은 것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서가 아니면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일상적으로 소통하기는 어려워요.
- 질문 :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말씀에 의하면 구청의 인력운영의 탄력성 같은 것을 빼 놓으면 시간제로 채용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시간제로 채용되어서 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도 못되고 같은 계약직이어도 전임과 시간제 간에 근로조건의 차이 또한 심해서 시간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 답변 : 저는 아이가 지금 5살과 6살 이에요. 저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 질문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전임은 40시간, 시간제는 35시간이어서 1일 1시간 차이 밖에 없는데 근로조건 등 처우에서는 그 비율 이상으로 차이가 날 경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답변 :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사용자 입장보다는 고용인의 입장이 우선시 되니까, 요새 감을

관계해서 말이 많잖아요. 저는 문제의식 같은 것을 많이 못 느꼈어요. 저는 근무지가 집에서 가깝고 또 1시간 일찍 퇴근 할 수 있다는 점이 저의 생활상 필요에 잘 맞습니다. 저는 전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했는데..... 전에 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여에서도 별 차이가 없어요.

- 질문 :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 답변 :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월드비전의 복지관에서 한 7년 정도 일 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 입니다. 결혼하니까 아이 키우는 문제가 우선이 되더라고요. 지금의 일자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해서 선택한 측면이 큼니다. 한 시간을 일찍 마치는 거지만 아이가 귀가할 때 집에서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질문 : 수행하는 업무는 비슷한데 처우에서 차이가 나면 대개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불만스러워 할 텐데 귀하는 다른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귀하의 말씀은 시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평균적인 입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 답변 :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임과 시간제 계약직 간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서로 서로 잘 모를 거고요. 같은 시간제라도 가, 나, 다급이 있는데 어떤 급수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처우가 다르고, 급수가 낮아도 급수를 서로 달리하고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급수가 낮아도 급여는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 질문 :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느냐 또는 어떤 예산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급여와 처우를 달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답변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처우라고 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같은 것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하는 일은 똑같거나 비슷한데 누구는 무기계약직이고, 누구는 기간제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담당하는 직원의 재량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은 같이 일하는 무기계약직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효도휴가비 같은 것은 무기계약직에게는 지급되는데 기간제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지, 뭐 내규가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 당신 그거 모르고 들어 왔나?, 알면서 지원했으면서 (뭔 불만이나), 불만이면 당신 나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기간제의 입장에서는 하는 일은 비슷한데 처우가 다르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죠. 특히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가 엄청 배출되다보니까 무기계약직과 달리 기간제 사회복지사들은 이직률이 무척 심해요. 그런 현실 때문에 본인이 그냥 받아들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일을 당하는 기간제 모두 힘들겠지요.

- 질문 : 제도적으로 계약직 공무원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 짧습니까? 재계약에 이르게 되면 신규자 처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던데 시간제도 마찬가지로 않겠지요?

- 답변 : 그런 것은 시정이 좀 되면 좋겠지요.

- 질문 : 구군별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 답변 : 동구와 저는 똑 같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데 남구와 중구는 일반 기간제 신분이거든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복지에 대한 단체장의 입장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 질문 : 기간제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그분들이 받는 임금으로 한 가정이나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기간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가구의 보조적인 소득원이고 배우자를 주된 소득원으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답변 : 맞아요. 잘은 모르지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가구 생계를 책임질 수는 없지요.

- 질문 :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내근과 외근직이 다른데 왜 외근이 내근직보다 임금이 더 높은지 아시나요?

- 답변 :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차이를 왜 만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 질문 :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 종합사회복지관 다르고 단종 다르고, 가정폭력 다르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또 다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처우가 제일 좋고, 지역아동센터는 일은 힘든데 처우는 가장 안 좋습니다.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아는데 우리 나라 현실에서 그 복지 시설 운영을 나라에서 다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 하거든요. 민간이 운영할 경우 보조금 받아서 운영비 쓰고 남는 것으로 인건비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인건비가 열악할 수 밖에 없어요. 종사자들 처우는 종사자들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수행하는 업무의 질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니까 잘 개선이 되면 좋겠지요.

- 질문 : 지금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이나 개선점 같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 답변 : 저는 잘은 모르지만, 여기(구청)에 고용자활분과가 있어요. 그 안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일자리정보센터에 일하시는 분도 있고, 사회적기업연구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요번에는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분도 위촉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활 후견기관 실무자 분도 있는데 제가 거기서 듣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소득하고 일자리 고용하고 나눠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복지 쪽이다 보니까 일자리보다는 저소득 쪽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라에서는 맨 날 무슨 일자리 양에만 차등을 하지, 질적이지 부분까지는 여력이 안 되는지 신경을 잘 못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월드비전이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았는데, 그 아동들이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이 많아요. 한 부모 가정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가정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안돼요. 일은 정말 나가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힘에도 불구하고 늘 가난한 상태로 사시고, 또 본인이 앞으로는 나는 이렇게 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는 좌절이나 절망감 같은 것이 이런 분들에게 문화처럼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그 가정을 바라 보면은 너무 안타깝워요. 가정마다 구성원의 욕구나 조건이 모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뭘 하고 싶은 꿈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학교 적응이 좀 안돼서..... 그렇지만 뭔가 동기가 있는 가정은 뭔가 조금 지원해주면 일어설 수 있을 것 같고 한테 그걸 어느 수준까지는 가고 극복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정도 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좀 그래요. 참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 질문 :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 답변 : 전세 살고 있습니다.

- 질문 : 맞벌이 부부이신데, 두 분의 소득으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 답변 : 보통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두 사람의 임금을 합치면 적은 돈은 아닌데도 명절처럼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저와 아이들 건강상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남보다 더 들어서 지출액 중 보험료 부담액이 높아요.

[별지2] 보건복지부 발표 2012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201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단위 : 천원/월)

| 직위 (호봉) | 원장 | 사무 국장 | 과장및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 | 기능직 | 관리인 | 축탁 의사 |
|------------|-------|----------|--------------|-------|-------|-------|-------|----------|
| | | | | 선임 | 직원 | | | |
| 1호봉 | 1,927 | 1,695 | 1,585 | 1,532 | 1,484 | 1,303 | 1,397 | 2,290 |
| 2호봉 | 2,010 | 1,774 | 1,639 | 1,590 | 1,529 | 1,350 | 1,443 | |
| 3호봉 | 2,096 | 1,857 | 1,696 | 1,634 | 1,576 | 1,397 | 1,489 | |
| 4호봉 | 2,185 | 1,943 | 1,757 | 1,695 | 1,624 | 1,444 | 1,535 | |
| 5호봉 | 2,273 | 2,031 | 1,839 | 1,777 | 1,671 | 1,493 | 1,581 | |
| 6호봉 | 2,374 | 2,124 | 1,924 | 1,861 | 1,772 | 1,585 | 1,673 | |
| 7호봉 | 2,472 | 2,217 | 2,011 | 1,948 | 1,815 | 1,634 | 1,723 | |
| 8호봉 | 2,572 | 2,312 | 2,099 | 2,032 | 1,874 | 1,683 | 1,770 | |
| 9호봉 | 2,673 | 2,408 | 2,185 | 2,113 | 1,929 | 1,752 | 1,839 | |
| 10호봉 | 2,773 | 2,500 | 2,269 | 2,192 | 2,002 | 1,821 | 1,908 | |
| 11호봉 | 2,870 | 2,590 | 2,349 | 2,270 | 2,072 | 1,884 | 1,969 | |
| 12호봉 | 2,946 | 2,662 | 2,414 | 2,333 | 2,130 | 1,928 | 2,012 | |
| 13호봉 | 3,019 | 2,730 | 2,476 | 2,393 | 2,186 | 1,970 | 2,053 | |
| 14호봉 | 3,087 | 2,794 | 2,534 | 2,450 | 2,240 | 2,014 | 2,095 | |
| 15호봉 | 3,152 | 2,856 | 2,590 | 2,505 | 2,291 | 2,057 | 2,134 | |
| 16호봉 | 3,213 | 2,913 | 2,644 | 2,558 | 2,341 | 2,110 | 2,187 | |
| 17호봉 | 3,271 | 2,968 | 2,695 | 2,607 | 2,390 | 2,155 | 2,230 | |
| 18호봉 | 3,325 | 3,021 | 2,744 | 2,655 | 2,435 | 2,198 | 2,270 | |
| 19호봉 | 3,377 | 3,070 | 2,790 | 2,702 | 2,480 | 2,240 | 2,313 | |
| 20호봉 | 3,425 | 3,117 | 2,833 | 2,746 | 2,522 | 2,284 | 2,354 | |
| 21호봉 | 3,471 | 3,161 | 2,875 | 2,788 | 2,562 | 2,349 | 2,416 | |
| 22호봉 | 3,514 | 3,203 | 2,915 | 2,828 | 2,601 | 2,390 | 2,459 | |
| 23호봉 | 3,555 | 3,243 | 2,953 | 2,866 | 2,638 | 2,433 | 2,498 | |
| 24호봉 | 3,594 | 3,280 | 2,989 | 2,903 | 2,673 | 2,477 | 2,539 | |
| 25호봉 | 3,630 | 3,316 | 3,023 | 2,938 | 2,706 | 2,519 | 2,582 | |
| 26호봉 | 3,664 | 3,350 | 3,056 | 2,973 | 2,737 | 2,563 | 2,623 | |
| 27호봉 | 3,695 | 3,382 | 3,084 | 3,001 | 2,763 | 2,607 | 2,664 | |
| 28호봉 | 3,722 | 3,409 | 3,110 | 3,028 | 2,788 | 2,620 | 2,676 | |
| 29호봉 | 3,748 | 3,434 | 3,135 | 3,054 | 2,813 | 2,663 | 2,718 | |
| 30호봉 | 3,773 | 3,459 | 3,159 | 3,079 | 2,836 | 2,677 | 2,729 | |

【201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단위 : 천원)

| 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
| (1) 명절휴가비 | 전 종사자 | 봉급액의 100% |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 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 (2)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 × 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 (3) 가족수당 | 전 종사자 | 정액 20 (배우자 40) |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 주 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 1/226 × 1.5 적용

※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종사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 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사회복지이용시설 중 복지관(사회, 노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사회복지직)】

(단위 : 천원)

| 직위 호봉 | 관장 | 부장 | 과장 | 선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
|----------|-------|-------|-------|-------------|-------|
| 1 | 2,271 | 2,018 | 1,793 | 1,717 | 1,554 |
| 2 | 2,312 | 2,063 | 1,821 | 1,768 | 1,588 |
| 3 | 2,358 | 2,109 | 1,868 | 1,821 | 1,637 |
| 4 | 2,408 | 2,155 | 1,916 | 1,856 | 1,689 |
| 5 | 2,445 | 2,195 | 1,964 | 1,908 | 1,740 |
| 6 | 2,510 | 2,262 | 2,012 | 1,979 | 1,807 |
| 7 | 2,584 | 2,324 | 2,103 | 2,050 | 1,871 |
| 8 | 2,689 | 2,417 | 2,195 | 2,117 | 1,932 |
| 9 | 2,794 | 2,517 | 2,285 | 2,180 | 2,010 |
| 10 | 2,899 | 2,614 | 2,372 | 2,239 | 2,065 |
| 11 | 3,000 | 2,708 | 2,456 | 2,270 | 2,116 |
| 12 | 3,080 | 2,783 | 2,524 | 2,333 | 2,130 |
| 13 | 3,156 | 2,854 | 2,588 | 2,393 | 2,186 |
| 14 | 3,227 | 2,921 | 2,650 | 2,450 | 2,240 |
| 15 | 3,295 | 2,985 | 2,708 | 2,505 | 2,291 |
| 16 | 3,359 | 3,046 | 2,764 | 2,558 | 2,341 |
| 17 | 3,419 | 3,103 | 2,817 | 2,607 | 2,390 |
| 18 | 3,477 | 3,158 | 2,868 | 2,655 | 2,435 |
| 19 | 3,530 | 3,209 | 2,916 | 2,702 | 2,480 |
| 20 | 3,581 | 3,258 | 2,962 | 2,746 | 2,522 |
| 21 | 3,629 | 3,305 | 3,006 | 2,788 | 2,562 |
| 22 | 3,674 | 3,349 | 3,047 | 2,828 | 2,601 |
| 23 | 3,717 | 3,390 | 3,087 | 2,866 | 2,638 |
| 24 | 3,757 | 3,430 | 3,125 | 2,903 | 2,673 |
| 25 | 3,795 | 3,467 | 3,161 | 2,938 | 2,706 |
| 26 | 3,831 | 3,502 | 3,195 | 2,973 | 2,737 |
| 27 | 3,863 | 3,536 | 3,224 | 3,001 | 2,763 |
| 28 | 3,892 | 3,564 | 3,251 | 3,028 | 2,788 |
| 29 | 3,918 | 3,590 | 3,277 | 3,054 | 2,813 |
| 30 | 3,944 | 3,616 | 3,302 | 3,079 | 2,836 |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중 복지관(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일반직)】

(단위 : 천원)

| 호봉 | 관장 | 사무국장 | 1급 | 2급 | 3급 | 4급 |
|----|-------|-------|-------|-------|-------|-------|
| 1 | 2,271 | 2,018 | 1,793 | 1,693 | 1,623 | 1,554 |
| 2 | 2,312 | 2,063 | 1,821 | 1,764 | 1,663 | 1,588 |
| 3 | 2,358 | 2,109 | 1,868 | 1,829 | 1,710 | 1,637 |
| 4 | 2,408 | 2,155 | 1,916 | 1,892 | 1,782 | 1,689 |
| 5 | 2,445 | 2,195 | 1,964 | 1,959 | 1,848 | 1,740 |
| 6 | 2,510 | 2,262 | 2,012 | 2,021 | 1,908 | 1,807 |
| 7 | 2,584 | 2,324 | 2,103 | 2,097 | 1,978 | 1,871 |
| 8 | 2,689 | 2,417 | 2,195 | 2,138 | 2,042 | 1,932 |
| 9 | 2,794 | 2,517 | 2,285 | 2,195 | 2,119 | 2,010 |
| 10 | 2,899 | 2,614 | 2,372 | 2,241 | 2,159 | 2,065 |
| 11 | 3,000 | 2,708 | 2,456 | 2,291 | 2,216 | 2,116 |
| 12 | 3,080 | 2,783 | 2,524 | 2,359 | 2,277 | 2,130 |
| 13 | 3,156 | 2,854 | 2,588 | 2,397 | 2,317 | 2,186 |
| 14 | 3,227 | 2,921 | 2,650 | 2,437 | 2,357 | 2,240 |
| 15 | 3,295 | 2,985 | 2,708 | 2,482 | 2,397 | 2,291 |
| 16 | 3,359 | 3,046 | 2,764 | 2,522 | 2,439 | 2,341 |
| 17 | 3,419 | 3,103 | 2,817 | 2,574 | 2,491 | 2,390 |
| 18 | 3,477 | 3,158 | 2,868 | 2,620 | 2,533 | 2,435 |
| 19 | 3,530 | 3,209 | 2,916 | 2,660 | 2,576 | 2,480 |
| 20 | 3,581 | 3,258 | 2,962 | 2,703 | 2,620 | 2,522 |
| 21 | 3,629 | 3,305 | 3,006 | 2,742 | 2,660 | 2,562 |
| 22 | 3,674 | 3,349 | 3,047 | 2,788 | 2,703 | 2,601 |
| 23 | 3,717 | 3,390 | 3,087 | 2,831 | 2,742 | 2,638 |
| 24 | 3,757 | 3,430 | 3,125 | 2,885 | 2,788 | 2,673 |
| 25 | 3,795 | 3,467 | 3,161 | 2,930 | 2,831 | 2,706 |
| 26 | 3,831 | 3,502 | 3,195 | 2,960 | 2,871 | 2,737 |
| 27 | 3,863 | 3,536 | 3,224 | 3,003 | 2,915 | 2,763 |
| 28 | 3,892 | 3,564 | 3,251 | 3,022 | 2,929 | 2,788 |
| 29 | 3,918 | 3,590 | 3,277 | 3,034 | 2,940 | 2,813 |
| 30 | 3,944 | 3,616 | 3,302 | 3,077 | 2,990 | 2,836 |

【사회복지이용시설 중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의료직)】

(단위 : 천원)

|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촉탁의사 |
|----|-------|-------|-------|-------|-------|
| 1 | 1,686 | 1,618 | 1,547 | 1,494 | 2,290 |
| 2 | 1,719 | 1,663 | 1,588 | 1,543 | |
| 3 | 1,767 | 1,710 | 1,638 | 1,581 | |
| 4 | 1,815 | 1,758 | 1,686 | 1,633 | |
| 5 | 1,861 | 1,805 | 1,731 | 1,678 | |
| 6 | 1,917 | 1,874 | 1,803 | 1,739 | |
| 7 | 2,010 | 1,940 | 1,867 | 1,808 | |
| 8 | 2,098 | 2,007 | 1,935 | 1,874 | |
| 9 | 2,181 | 2,071 | 1,996 | 1,949 | |
| 10 | 2,264 | 2,139 | 2,065 | 2,008 | |
| 11 | 2,333 | 2,207 | 2,133 | 2,078 | |
| 12 | 2,380 | 2,278 | 2,205 | 2,117 | |
| 13 | 2,417 | 2,315 | 2,242 | 2,158 | |
| 14 | 2,461 | 2,357 | 2,283 | 2,196 | |
| 15 | 2,498 | 2,397 | 2,320 | 2,238 | |
| 16 | 2,543 | 2,439 | 2,362 | 2,277 | |
| 17 | 2,593 | 2,486 | 2,398 | 2,314 | |
| 18 | 2,637 | 2,532 | 2,444 | 2,378 | |
| 19 | 2,673 | 2,570 | 2,481 | 2,424 | |
| 20 | 2,717 | 2,611 | 2,522 | 2,464 | |
| 21 | 2,758 | 2,652 | 2,563 | 2,505 | |
| 22 | 2,803 | 2,695 | 2,606 | 2,522 | |
| 23 | 2,846 | 2,737 | 2,647 | 2,564 | |
| 24 | 2,887 | 2,779 | 2,688 | 2,606 | |
| 25 | 2,935 | 2,826 | 2,736 | 2,648 | |
| 26 | 2,964 | 2,855 | 2,781 | 2,662 | |
| 27 | 3,009 | 2,900 | 2,825 | 2,705 | |
| 28 | 3,055 | 2,913 | 2,840 | 2,720 | |
| 29 | 3,103 | 2,924 | 2,852 | 2,734 | |
| 30 | 3,143 | 2,967 | 2,894 | 2,777 | |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3급 간호조무사→4급.

【사회복지이용시설 중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사무직)】

(단위 : 천원)

|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
| 1 | 1,615 | 1,577 | 1,536 | 1,494 |
| 2 | 1,649 | 1,622 | 1,577 | 1,543 |
| 3 | 1,695 | 1,668 | 1,626 | 1,581 |
| 4 | 1,743 | 1,717 | 1,671 | 1,633 |
| 5 | 1,789 | 1,763 | 1,733 | 1,678 |
| 6 | 1,847 | 1,831 | 1,784 | 1,739 |
| 7 | 1,937 | 1,899 | 1,848 | 1,808 |
| 8 | 2,024 | 1,964 | 1,917 | 1,874 |
| 9 | 2,107 | 2,027 | 1,978 | 1,949 |
| 10 | 2,187 | 2,097 | 2,047 | 2,008 |
| 11 | 2,256 | 2,163 | 2,099 | 2,078 |
| 12 | 2,302 | 2,233 | 2,163 | 2,117 |
| 13 | 2,339 | 2,270 | 2,202 | 2,158 |
| 14 | 2,384 | 2,313 | 2,243 | 2,196 |
| 15 | 2,422 | 2,354 | 2,284 | 2,238 |
| 16 | 2,467 | 2,396 | 2,319 | 2,277 |
| 17 | 2,514 | 2,443 | 2,357 | 2,314 |
| 18 | 2,559 | 2,488 | 2,402 | 2,378 |
| 19 | 2,597 | 2,525 | 2,442 | 2,424 |
| 20 | 2,641 | 2,568 | 2,484 | 2,464 |
| 21 | 2,682 | 2,608 | 2,527 | 2,505 |
| 22 | 2,726 | 2,652 | 2,567 | 2,522 |
| 23 | 2,768 | 2,693 | 2,611 | 2,564 |
| 24 | 2,811 | 2,734 | 2,653 | 2,606 |
| 25 | 2,858 | 2,781 | 2,698 | 2,648 |
| 26 | 2,888 | 2,811 | 2,744 | 2,662 |
| 27 | 2,934 | 2,855 | 2,788 | 2,705 |
| 28 | 2,977 | 2,870 | 2,802 | 2,720 |
| 29 | 3,021 | 2,882 | 2,815 | 2,734 |
| 30 | 3,065 | 2,924 | 2,855 | 2,777 |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중 복지관 (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관리직)】

(단위 : 천원)

|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고용직) |
|----|-------|-------|-------|---------|
| 1 | 1,544 | 1,475 | 1,406 | 1,335 |
| 2 | 1,578 | 1,514 | 1,451 | 1,381 |
| 3 | 1,624 | 1,563 | 1,495 | 1,423 |
| 4 | 1,671 | 1,611 | 1,544 | 1,471 |
| 5 | 1,716 | 1,660 | 1,592 | 1,520 |
| 6 | 1,777 | 1,721 | 1,652 | 1,580 |
| 7 | 1,863 | 1,785 | 1,718 | 1,646 |
| 8 | 1,952 | 1,855 | 1,784 | 1,708 |
| 9 | 2,031 | 1,926 | 1,847 | 1,773 |
| 10 | 2,110 | 1,991 | 1,924 | 1,850 |
| 11 | 2,180 | 2,064 | 1,984 | 1,908 |
| 12 | 2,228 | 2,123 | 2,050 | 1,949 |
| 13 | 2,265 | 2,158 | 2,085 | 1,987 |
| 14 | 2,309 | 2,203 | 2,130 | 2,031 |
| 15 | 2,345 | 2,244 | 2,165 | 2,066 |
| 16 | 2,389 | 2,284 | 2,207 | 2,107 |
| 17 | 2,425 | 2,323 | 2,247 | 2,149 |
| 18 | 2,470 | 2,362 | 2,289 | 2,210 |
| 19 | 2,507 | 2,407 | 2,329 | 2,252 |
| 20 | 2,551 | 2,446 | 2,365 | 2,288 |
| 21 | 2,592 | 2,486 | 2,410 | 2,332 |
| 22 | 2,636 | 2,529 | 2,453 | 2,350 |
| 23 | 2,677 | 2,571 | 2,492 | 2,392 |
| 24 | 2,718 | 2,613 | 2,536 | 2,436 |
| 25 | 2,767 | 2,656 | 2,582 | 2,480 |
| 26 | 2,813 | 2,703 | 2,625 | 2,496 |
| 27 | 2,857 | 2,746 | 2,668 | 2,538 |
| 28 | 2,901 | 2,760 | 2,683 | 2,553 |
| 29 | 2,946 | 2,774 | 2,697 | 2,569 |
| 30 | 2,990 | 2,816 | 2,740 | 2,612 |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 직종)】

| 해당직종 | 봉급적용 | 비고 |
|---------------------------|---|--------------------------------|
|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 단, 전년도 대비 타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
| 보육교사 |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

【사회복지직(사회, 노인복지관)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직책 | 선임사회복지사 | 과장 | 부장·사무국장 | 관장 |
|----|-----------|------------|------------|---------|
| 연한 | 만3(4년차)이상 | 만5년(6년차)이상 | 만7년(8년차)이상 | 해당사항 없음 |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 2)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호봉승급 시기에 준하여 1월, 4월, 7월, 10월시행.
- 3)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사회복지의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 직급 | 3급 | 2급 | 1급 |
|----|------------|------------|--------------|
| 연한 | 만5년(6년차)이상 | 만7년(8년차)이상 | 만10년(11년차)이상 |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 2)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1월, 4월, 7월, 10월에 시행함.
- 3) 3급은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 4) 본 <별표3>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 2012년 복지관 직원 수당 지급기준】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고 |
|----------|-----------------|---|--------------|--------------------------------|-----------------|
| 가족수당 | 직원중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 부양의무자와 동일주소 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수에 따라 지급 | 매월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참조 |
| 효도휴가비 | 직 원 | 지급시기마다 월봉급액의 50% | 연2회 (설날, 추석) | | |
| 시간외 근무수당 | 직 원 |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 × 1.5] | 매월 | | |